

2022 시정권고 사례집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일부 기사제목 등은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로 비식별 처리함



시정권고 전체 목록

의결번호	제2022-1호	언론사명	(주)강원도민일보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30일 03면 「민주당, 김진태 단장 고소」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사인의 성명 공표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단장(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보도의 내용이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에 불과한 사건 관계인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호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21년 12월 30일	정치면	민주당, 김진태 단장 고소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신문
제2022-3호	미디어인뉴스	2021년 12월 29일	정치/사회면	민주당, 김진태 국힘 특위위원장 검찰 고발... "조폭 허위 편지" 근거 이재명 후보 비방"	인터넷신문
제2022-4호	엔사이드	2021년 12월 29일	정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검찰 고발... '조폭 허위 편지' 근거 이재명 후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인터넷신문
제2022-5호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12월 28일	정치면	"국민의힘=조작의힘" 이재명 비난에 김진태 "예상했던 일"	인터넷신문
제2022-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29일	-	조작 의심 '조폭 편지'만 갖고 이재명 비방...김진태,檢 고발돼	인터넷신문
제2022-7호	프레스뉴스	2021년	정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국민의힘 특위위원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12월 29일		검찰 고발	
제2022-8호	ilyoseouli	2021년 12월 21일	일요서울TV면	[영상] 김진태 “이재명 조폭 뇌물설, ○○○의 자필 편지 나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호	언론사명	김영덕(더퍼블릭)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퍼블릭 2021년 12월 28일 POLITICS면 「[심층분석]이준석 성접대 의혹의 진실 게임[내막]」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2조 (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건과 무관한 당사자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의혹과 무관한 사람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의혹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혹과 전혀 무관한 이들의 성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장면을 여과 없이 캡처하여 보도한 것은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호	위키트리 (Wikitree)	2021년 12월 28일	정치면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증거’라면서 가세연이 오늘(28일) 전격 공개한 사진과 영상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16일 국회.정당면 「“김건희 일가, 양평 땅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거래…차명 의혹”」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일가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의혹 관련자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내용이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의 일환이고 이들이 이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이들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호	Auto Today (오토투데이)	2021년 12월 16일	정치/국제면	윤석열 처가, 차명 의혹 양평 병산리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	인터넷신문
제2022-13호	내외경제TV	2021년 12월 16일	정치면	윤석열 처가, 차명 의혹 양평 병산리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	인터넷신문
제2022-14호	대한뉴스 (인터넷)	2021년 12월 16일	정치면	윤석열 처가, 차명 의혹 양평 병산리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	인터넷신문
제2022-15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2021년 12월 16일	정치면	윤석열 처가, 차명 의혹 양평 병산리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	인터넷신문
제2022-16호	인터넷뉴스 신문고	2021년 12월 13일	정치면	與 “최은순-김건희, 양평 차명 부동산 관리정황 드러났다” 의혹 제기	인터넷신문
제2022-17호	국제뉴스	2021년 12월 9일	정치면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패밀리비즈니스 실제 밝혀야	뉴스통신
제2022-18호	데일리중앙	2021년 12월 9일	정치면	민주당, 김건희씨 일가 양평 공흥지구 패밀리비즈니스 실제 밝혀야	인터넷신문
제2022-19호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2021년 12월 9일	정치면	민주당 “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개발자금 조달에도 직접 관여”	인터넷신문
제2022-20호	신동아방송 (sdatv)	2021년 12월 29일	뉴스면	윤석열 국힘대선 후보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1호	한강아라 신문방송	2021년 12월 9일	서울/의정 일반뉴스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패밀러비즈니스 실체 밝혀야	인터넷신문
제2022-22호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2021년 12월 9일	정치면	민주당 “김건희, 양평 공흥지구 개발 직접 관여…의혹 당사자”	인터넷신문
제2022-23호	NSP통신	2021년 12월 29일	정치/사회	尹 처가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뉴스통신
제2022-24호	경찰신문	2021년 12월 29일	사회면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25호	골든타임즈 (goldentimes)	1월 1일	정치면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26호	국민뉴스	2021년 12월 12일	뉴스종합면	與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김건희 관여 없다 던 윤석열 측 해명은 거짓”	인터넷신문
제2022-27호	뉴스데일리	2021년 12월 29일	국회·정당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28호	메디칼타임즈	2021년 12월 29일	의료정책면	윤석열 처가 요양원 42억원 요양급여 편취 의혹 제기	인터넷신문
제2022-29호	서울경기일보	2021년 12월 29일	정치,행정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0호	의회신문	2021년 12월 30일	정치면	강득구 의원, 42억 부정요양급여 수급...윤석열 후보의 부인, 장모, 장남, 사위 등 가족회사	인터넷신문
제2022-31호	인터넷 경인매일	2021년 12월 29일	종합면	강득구의원,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2호	인터넷 경인일보	2021년 12월 29일	정치면	강득구 “윤석열 처가 회사, 요양원 운영하며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3호	인터넷 성남피플	2021년 12월 30일	종합/정치면	강득구의원,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4호	인터넷 인천일보	2021년 12월 29일	정치면	강득구 의원 “윤석열 처가 회사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강제수사해야”	인터넷신문
제2022-35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2021년 12월 29일	-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6호	뉴스경기	1월 13일	뉴스면	尹 처가의 공흥지구 시행사 ESI&D, 3년간 요양급여 42억 챙겨	인터넷신문
제2022-37호	인터넷 전라일보	2021년 12월 22일	정치면	민주당,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2-38호	열린뉴스통신	2021년 12월 22일	정치면	민주당, 윤석열 후보 장모 고발...“송파구 양평군 아파트 차명보유 후 가동기 설정”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2-39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1년 12월 13일 사회면 「씩 웃더니 6000원만 내고 달아난 ‘미용실 먹튀범’을 공개합니다 (영상)」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미용실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남성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공개된 CCTV 속 해당 남성의 초상을 캡처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남성의 초상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3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0호	디스패처뉴스	2021년 12월 11일	-	“6,000원만 있네요” 광주 미용실서 염색+커트 후 먹튀한 그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1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1년 12월 28일 정치/사회면 「이재명 아들 이동호 고대 입시 의혹 재조명 되는 학력·직업·나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이 기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상습도박, 성매매,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그가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광범위하게 공개하는가 하면, 과거 공개된 바 있는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유력 대선 후보 아들의 범죄혐의와 관련돼 있는 공적 관심사 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범죄혐의와 무관하거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게시글까지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사자가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고 과거 공개 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거론된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2호	뉴데일리 (New Daily)	2021년 12월 20일	사회면	“오피나 같까” “니들도 사먹어라” “내상 입었다”... 이재명 아들 ‘성매매’ 거둬 암시	인터넷신문
제2022-43호	디스패치뉴스	2021년 12월 16일	-	“뭐 하는 X이냐, 룸에서 일 잘하게 생겼네” 이재명 아들 추정 닉네임 ‘여성비하’ 댓글	인터넷신문
제2022-44호	조선닷컴	2021년 12월 20일	사회면	[단독]李家 아들 “돈 따서 너도 사먹어라” 성매매 암시한 글 잇달아 나와	인터넷신문
제2022-45호	뉴스타운	2021년 12월 21일	오피니언면	이재명 아들, 장제원 아들	인터넷신문
제2022-46호	더퍼블릭	2021년 12월 19일	POLITICS면	이재명 장남, 도박단행에 ‘성매매’ 논란 까지...;李家 아들, “니들도 위닝 해서 여자 사 먹어라” 일파만파	인터넷신문
제2022-47호	데일리안	2021년 12월 28일	사회면	여성 유권자들 “이재명 아들, 여자 사먹어라 후기 남기고 성매매는 안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48호	오마이뉴스 (OhmyNews)	2021년 12월 16일	-	이재명 아들의 해명 “후기 올렸지만 성매매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49호	인터넷 서울경제	2021년 12월 18일	사회 일반면	‘李家 아들 여성 비하 글’에 ...권인숙 “평범하기도 하다” 누리꾼 공분	인터넷신문
제2022-50호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12월 18일	정당면	‘X리게 생겼네’ 권인숙 “이재명 아들 글 평범” 누리꾼 공분	인터넷신문
제2022-51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1년 12월 16일	사회 일반면	이재명 장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결국 사과	인터넷신문
제2022-52호	조선비즈	2021년 12월 17일	정책면	與권인숙, 이재명 장남 ‘여성비하’에 “평범”...‘20대 모습’ 발언도	인터넷신문
제2022-53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2021년 12월 20일	-	실시간 이재명 아들 성매매 의혹 추가 공개된 댓글 내용 (+도박, 나이, 사진)	인터넷신문
제2022-54호	폴리뉴스 (polinews)	2021년 12월 17일	선거면	이재명 아들, 할머니 발인 다음날 퇴폐 업소 후기...‘성매매 안했다’ 부인	인터넷신문
제2022-55호	프레스리안 (Pressian)	2021년 12월 16일	-	이재명 아들 이번엔 ‘성매매’ 의혹, 민주당 “후기는 올렸지만 ...”	인터넷신문
제2022-56호	하핑턴포스트 코리아(The Huffingtonp ost Korea)	2021년 12월 17일	정치면	이재명 후보 아들은 할머니 발인 다음날 도박을 하고 마사지 업소까지 다녀왔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57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12월 27일 시사면 「출리설 제기한 ‘열린공감 TV’, 또 막말 논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기자회견에서 결혼 후 어렵게 가진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결혼 전 이미 불임판정을 받았으며 과거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p> <p>비록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병력(불임)이나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 등과 같은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5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8호	인터넷 굿모닝충청	2021년 12월 26일	뉴스 플러스면	김건희의 (사과쇼, 그리고 뜬금없이 꺼내든 ‘유산’ 스토리	인터넷신문
제2022-59호	인터넷뉴스 신문고	2021년 12월 26일	-	정청래 등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허위이력 인정, 수사 후 기소하라”	인터넷신문
제2022-60호	디스패치뉴스	2021년 12월 27일	-	“김건희 유산? 尹과 결혼 전부터 불임” ‘출리설’ 제기한 ‘열린공감 TV’의 막말	인터넷신문
제2022-61호	살구뉴스	2021년 12월 27일	정치/ 사회면	김건희 술집 출리설 제기한 ‘열린공감 TV’ 불임 발언에 또 막말...논란	인터넷신문
제2022-62호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12월 26일	-	“김건희 개인 사생활 언급은 동정표 때문?”	인터넷신문
제2022-63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 뉴스	2021년 12월 27일	정치면	‘출리’ 주장했던 유튜브 또 막말 “김건희, 尹과 결혼전부터...”	인터넷신문
제2022-64호	인터넷 서울경제	2021년 12월 27일	사회면	‘유산’ 고백한 김건희에 또 막말한 유튜브	인터넷신문
제2022-6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27일	-	‘출리’ 주장했던 유튜브 “김건희, 尹과 결혼전부터 불임” 또 막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6호	인터넷 한국경제	2021년 12월 27일	정치면	'줄리' 주장 유튜버 "김건희, 윤석열과 결혼 전부터..." 또 막말	인터넷신문
제2022-67호	인터넷 해럴드경제	2021년 12월 27일	-	김건희 유산 고백에... 줄리설 유포 유튜버 사생활 또 언급	인터넷신문
제2022-68호	조선닷컴	2021년 12월 26일	정치면	줄리설 유포 유튜버, 유산 고백에까지 의혹 제기... 金측 "정신나간 사람들"	인터넷신문
제2022-69호	쿠키뉴스	2021년 12월 27일	정치면	김건희 사과에... '줄리설' 유튜버, 사생활 또다시 언급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2-70호	시민경찰일보	2021년 12월 27일	일반 뉴스면	"김건희, 尹과 결혼전 이미 불임" 줄리설 유튜버 또 막말... 金측 "정신나간 사람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1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투리(Wikitree) 2021년 12월 06일 사회면 「"조동연이 찾아와 성관계 요구했다" 지금 난리 난 가세연 폭로 내용 (전문)」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인물의 혼외자 의혹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인용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설령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보도였다 하더라도, 부부 간의 성관계 등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2호	인사이트	2021년 12월 6일	찾이슈면	"조동연, 성폭행 당했다는 8월 전방부대 남편 찾아가 성관계 요구"... 가세연, 추가 폭로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73호	언론사명	파이낸셜뉴스신문(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2년 01월 06일 정치면 「與,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고발...野 "유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피고발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일가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하면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장모의 아들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피고발인의 실명을 공표한 것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7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4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1월 6일	정치면	與,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석열 장모·김선교 고발...野 "유감"	인터넷신문
제2022-75호	일요신문	1월 6일	특종/단독	민주당, 윤석열 장모·김선교 의원 고발...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인터넷신문
제2022-76호	조세일보	1월 6일	정치 사회면	민주, 양평군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 최은순, 김선교 의원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2-77호	여주저널	1월 6일	뉴스면	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의원 검찰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2-78호	인터넷 경기신문	2021년 11월 10일	뉴스면	윤석열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 실체... "단순 집사를 넘어 경제공동체?"	인터넷신문
제2022-79호	열린공감TV	2021년 11월 9일	프로젝트면	[열공TV1109] 윤석열 일가의 범죄공동체, ○○○, 수많은 기업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0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1년 12월 05일 정치/사회면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신상 공개..충격적인 집안 정체(+사진)」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1.대상보도 중 피의자의 신상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나이, 학력, 직업, 근무 중인 회사명, 언론과의 인터뷰 이력 등을 비롯해 이 여성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문자메시지)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인물이 범죄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 당사자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1호	인터넷 시사뉴스	2021년 12월 3일	사회면	40대 가장 폭행사건...가해자는 ‘최연소 ○○ 합격 경력자’	인터넷신문
제2022-82호	조세금융신문	2021년 12월 6일	-	40대 가장 폭행 만취녀, 엘리트 집안에 빅4 소속 ○○○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83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살구뉴스 2021년 12월 16일 정치/사회면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가해자 남자친구 소름돋는 재판결과.. '무죄' 이유는?」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말미에 피해자의 SNS(인스타그램) 주소를 게시, 링크를 통해 피고인 남성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84호	언론사명	중앙일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1년 12월 08일 사회면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이 밝힌 진실 “○○가 그랬어요”」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 등 보호), 제6조의2 (아동 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1.대상보도 중 진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대상보도 중 아동학대의 가해 수법이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부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데에 ○○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의 배경이나 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사건 진술인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진술인인 아동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와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5호	인터넷 이데일리	2021년 12월 8일	법조·경찰면	'8세딸 무자비한 학대·살인'...20대 친모·계부, 2심도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86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2021년 12월 9일	뉴스면	○○ 죽음 목격한 ○○ ○○의 진술...엄마 거짓말 뒤집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87호	YTN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이슈인사이드] 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중형	방송
제2022-88호	경기매일	2021년 12월 10일	11면	○○ 죽음 잊지않은 ○○ ○○...학대부모 심판 도왔다	지역일간지
제2022-89호	뉴스스 (NEWSIS)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 죽음 잊지않은 ○○ ○○...학대부모 심판 도왔다	뉴스통신
제2022-90호	동아닷컴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 죽음 목격한 ○○ ○○의 진술...부모의 거짓 주장 들통나	인터넷신문
제2022-91호	살구뉴스	2021년 12월 9일	정치/ 사회면	어린 딸 학대·살해한 부부, '재판 결과'를 뒤집은.. '○○의 결정적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92호	아시아경제 닷컴	2021년 12월 8일	사회면	"끓이고 입에 대소변"...'8살 ○○ 학대·살인' 부부, 2심서도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93호	아이뉴스24 (inews24)	2021년 12월 9일	사건 사고면	딸에 '대소변' 먹인 엄마...○○ ○○는 기억하고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94호	인사이트	2021년 12월 9일	정치/ 사회면	학대당하다 죽은 여동생 목격한 ○○ ○○, 법정서 엄마 '거짓말' 뒤집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95호	인터넷 경기매일	2021년 12월 9일	뉴스면	동생 죽음 잊지않은 ○○ ○○...학대부모 심판 도왔다	인터넷신문
제2022-96호	인터넷 국민일보	2021년 12월 9일	시사면	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 ○○ ○○ ○○ 는 다 봤다	인터넷신문
제2022-97호	인터넷 매일신문	2021년 12월 9일	-	○○ ○○가 심판 도왔다...8살 딸에 인분 먹이는 등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98호	인터넷 세계일보	2021년 12월 10일	사회면	8세딸 학대·살인한 20대 부부...○○ 숨진날 구체적으로 기억했던 ○○ ○○ 진술이 '유죄 근거'	인터넷신문
제2022-99호	인터넷 여성신문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8살 딸 상습학대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100호	한국뉴스 투데이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8살 딸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1호	투데이플러스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2심도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102호	미디어데일	2021년 12월 9일	사회면	○○ 죽음 잊지않은 ○○ ○○...학대부모 심판 도왔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3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1년 12월 05일 정치사회면 「“여경전용 난로?”...군필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진 한장」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이 기사는 야외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여경전용 난로’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고 여성 경찰만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반응을 캡처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했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누리꾼의 여러 반응 중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댓글을 캡처 형식으로 부각하여 게재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4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1년 12월 21일 「‘승무원 룩북’ 女, 고등학생에게 이메일로 안내한 ‘음란 영상’ 판매 내용 (영상)」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른바 ‘승무원 룩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속옷 차림으로 항공사 유니폼을 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가 고등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판매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메일의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5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1년 12월 27일 「“유부남이었어?”…상사 무릎 올라타 ‘19금 댄스’ 춘 美 신입 여경[영상]」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미국 뉴욕의 한 신입 여경이 연말 파티에서 선정적인 춤을 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사이트 2021년 12월 23일 핫이슈면 「다른 남자 차 타는 여친 보고 촉 발동해 ‘드론’으로 쫓아간 남친이 목격한 장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성행위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07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1년 12월 06일 「주말동안 SNS 난리났던 건대 '야외방앗간' 사태 (+사진, 후기)」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행위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남녀가 한 식당 계단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 하면서, 해당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해당 사진의 경우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남녀 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8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1년 12월 28일 뉴스면 「“샤브샤브에서 콘돔 나왔다” 중국식당 발각...이물질 정체는」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1.대상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대상보도 중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는 도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발견된 이물질(콘돔)을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사 제목에 해당 이물질의 명칭을 그대로 적시하는 등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9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21년 12월 24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건강지킴이 뜬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0호	한국일보	2021년 12월 24일	B03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건강지킴이 뜬다	중앙일간지
제2022-111호	인터넷 국정일보	1월 6일	-	[경기] 2015년 김포시 ○○○ ○○을 개원한 계기...○○○원장..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건강지킴이 뜬다	인터넷신문
제2022-112호	Watcherdaily	2021년 12월 30일	뉴스면	○○○○○○○○, 호남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3호	아이뉴스24 (inews24)	2021년 12월 30일	라이프면	○○○○○○○○, 호남지역 보건복지부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4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021년 12월 30일	라이프면	○○○○○○○○, 호남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5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30일	-	○○○○○○○○, 호남 첫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6호	인터넷 천지일보	2021년 12월 30일	사회면	○○○○○○○○, 호남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7호	인터넷 한익신문	2021년 12월 30일	뉴스면	○○○○○○○○, 호남지역 최초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18호	인터넷 후생신보	2021년 12월 31일	병·의원면	○○○○○○○○,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9호	헬스경향	2021년 12월 30일	뉴스면	○○○○○○○○○, 호남 최초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	인터넷신문
제2022-120호	뉴데일리	2021년 12월 16일	충북면	‘○○○○○○○’ ○○○ 원장, 충북대병원 발전후원금 1천만원 기부	인터넷신문
제2022-121호	아이팜뉴스	2021년 12월 16일	의사/ 의학면	충북대병원, ○○○○○○○○ ○○○ 원장 후원금 1000만원 기부	인터넷신문
제2022-122호	인터넷 병원신문	2021년 12월 17일	뉴스면	충북대병원, 발전후원금 기부 받아	인터넷신문
제2022-123호	인터넷 의계신문	2021년 12월 16일	-	○○○ 원장, 충북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천만원 기부	인터넷신문
제2022-124호	인터넷 충북일보	2021년 12월 16일	사회면	○○○○○○○○○ ○○○ 원장, 충북대병원에 1천만 원 기부	인터넷신문
제2022-125호	충북일보	2021년 12월 17일	7면	지역 의료 든든한 버팀목 되길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2-126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오편 디스커스 2021년 12월 03일 정치사회면 「국가 기관에서 터진 성비위 논란, “여자가 입 크면 거기도 커” 발언 일파만파」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가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발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발언을 게재한 것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 언행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제목에 까지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27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자유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자유일보 2022년 01월 13일 사람면 「[단독] 인터뷰 내내 “이재명은 희대의 악마...이재명은 희대의 악마”」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책을 출판한 저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다루며 이 사건과 관계된 자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보도의 내용이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3자에 해당하는 사인(私人)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2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8호	투데이플러스	2021년 12월 28일	오피니언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29호	언론사명	백은종(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2022년 01월 03일 사회면 「“김건희·양재택 유럽여행 간 사실 입수” 열공TV “부인 할러면 ‘강력한 법적조치’ 하라”」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결혼 전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했고,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녀의 첫 번째 남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혼인신고 없이 2~3개월가량 살다 이혼했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남성과 결혼 및 이혼했다는 증언을 공개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1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30호	국민뉴스	1월 19일	뉴스종합면	김건희 출입국 관리 기록 사라진 이유 수사해야!	인터넷신문
제2022-131호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1월 3일	사회면	“김건희씨와 과거 양재택씨와 관계가 어떠했기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32호	언론사명	김영덕(더퍼블릭)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퍼블릭 2022년 01월 21일 POLITICS면 「건진법사에 윤석열 연관 짓는 김의겸…강용석 “건진, 문재인과 오래된 관계”」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신원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선 정국에 불거진 ‘무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던 건진법사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연관 짓는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된 관계라는 반박을 보도 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딸의 신원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된 논란에 관한 것으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항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공적 영역에 참여한 바 없는 사인(私人)의 신원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33호	언론사명	조세일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조세일보 2022년 01월 25일 정치면 「“건진법사, 코바나콘텐츠 ‘고문’ 명함” 제보… 김건희와 관계 추가 공개」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선 정국에 불거진 ‘무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던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과거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참석한 해우(혜우)스님의 초상을 공표하였다.</p> <p>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건진법사의 경우와 달리, 해우(혜우)스님의 경우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해당 전시회에 참석해 축원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그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거나 그의 활동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34호	경인매일	1월 25일	4면	‘건진 법사-김건희’ 오랜 교분…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지역일간지
제2022-135호	데일리안	1월 23일	포토면	김의겸,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건진법사 사진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136호	미디어 리퍼블릭	1월 26일	뉴스면	열린공감TV, “김건희와 건진법사 관계없다”는 거짓말	인터넷신문
제2022-137호	미디어인뉴스	1월 25일	공정사회면	열린공감TV, 건진법사 김건희 회사 고문 명함 공개…“10년 넘게 오래된 영적 관계” 추정	인터넷신문
제2022-138호	브레이크뉴스 (breaknews)	1월 23일	정치면	김의겸 의원 ‘건진 법사-김건희’ 오랜 교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인터넷신문
제2022-139호	인터넷 세계타임즈	1월 23일	정치면	[세계타임즈TV]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건진 법사-김건희’ 오랜 교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관련 기자회견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40호	인터넷 한국경제	1월 24일	정치면	[단독] 박영선 “무속인 참석 경위 모른다는 김건희 해명은 거짓”	인터넷신문
제2022-141호	주간현대	1월 24일	정치면	김건희-건진법사 오랜 교분 사진·영상 나왔다!	인터넷신문
제2022-142호	창업일보	1월 23일	이슈면	김의겸, “김건희, 건진법사와 최소 7년 전 잘 아는 사이였다”	인터넷신문
제2022-143호	여성경제신문	1월 27일	팩트& 탐사면	[단독] 尹 무속 논란 확산? ‘김건희 행사 참석’ 승려 또 나왔다	인터넷신문
제2022-144호	UP뉴스통신	1월 27일	정치면	[단독] “尹 멘토’ 무정스님, 탄허스님 밑에서 허드렛일하며 정·관계 인맥 쌓았다”	뉴스통신
제2022-145호	살구뉴스	1월 17일	정치/사회면	윤석열 친분 무속인 ‘건진법사’ 누구길래? 충격적인 과거 밝혀졌다	인터넷신문
제2022-146호	오마이뉴스 (OhmyNews)	1월 27일	정치면	정치 윤석열 무속 핵심 심도사... “지금 제주 골프장에 있다”	인터넷신문
제2022-147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1월 27일	사회면	[단독] ”윤석열 부부 맺어준 스님 정체는 눈썹도사님...제주도 칩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48호	언론사명	(주)더팩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팩트 2022년 01월 26일 정치면 「박수영 “이재명 후보 장남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NS에 올린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고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사적인 사항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49호	글로벌 경제신문 (GETNEWS)	1월 26일	경제·정책면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 “특혜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150호	매경닷컴	1월 26일	정치면	野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 “가짜뉴스”	인터넷신문
제2022-151호	법률방송뉴스	1월 26일	뉴스면	‘불법도박’ 이재명 장남, 이번엔 ‘군병원 특혜입원’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2-152호	연합뉴스	1월 26일	-	野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 “가짜뉴스”	뉴스통신
제2022-153호	이투데이	1월 26일	정치면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의혹...李 “가짜뉴스” · 野 “인사명령도 없이 어찌 입원”	인터넷신문
제2022-154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월 26일	정치면	박수영 “이재명 장남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측 “군익관 결정”	인터넷신문
제2022-155호	인터넷 서울경제	1월 27일	정치면	‘일병’이 ‘상병’으로 복귀?...李 아들, 군복무 중 ‘특혜입원’ 의혹	인터넷신문
제2022-156호	인터넷 세계일보	1월 26일	정치면	野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 “가짜뉴스”	인터넷신문
제2022-157호	인터넷 이데일리	1월 28일	정치면	이재명 캠프, ‘장남 특혜입원 의혹’ 전면 부인...법적 대응 나서	인터넷신문
제2022-158호	쿠키뉴스	1월 26일	정치면	野 “李 장남, 군 복무 중 ‘아빠찬스’”... 與 “가짜뉴스”	인터넷신문
제2022-159호	포커스경제	1월 26일	뉴스면	이재명 후보 장남, 군 복무 중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인터넷신문
제2022-160호	한국 NGO신문	1월 26일	정치면	野 “이재명 장남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李 “가짜뉴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61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1월 05일 정치면 「“멤짱 연애” “빵땡이” “대선까지…” 이재명 아들 여친 인스타, 싹 털렸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그의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던 게시물 다수를 공표하였다.</p> <p>비록 공직 후보자 가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공적 관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혹과 무관한 남녀 간의 교제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방송장면을 여과 없이 캡처하여 보도한 것은 당사자들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6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62호	머니그라운드	1월 6일	이슈면	“아버님 감사해요” 이재명 아들 여자친구의 인스타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63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2년 01월 03일 조선경제면 「○○○○○○○○ “직원이 1880억 횡령” 고소…그가 파주 수퍼개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국내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소속 직원의 횡령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가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인물과 동일인일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관련 보고서 사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성명을 노출하였다.</p> <p>비록 성명이 공개된 주식 매수자를 횡령사건 피의자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해당 인물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164호	언론사명	헬스오엠디팩트(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헬스오 2022년 01월 14일 칼럼면 「호랑이처럼 냉혹한 임인년 1월의 풍경 ‘행한 마음 의지할 데 없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내 한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 직원의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6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65호	뉴스핌통신	1월 10일	증권·금융면	[분석+] ‘○○○ 횡령’ 직원, 현금세탁 노렸나...매매패턴 분석해보니	뉴스통신
제2022-166호	살구뉴스	1월 11일	정치/사회면	○○○○○○○ 횡령사건 미스터리 ○○○ 정체...최규옥 대표가 공범?(+금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67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2022년 01월 16일 사회면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두 돌이 지난 여아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 모양 사진을 공표하였다. 해당 손 모양이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손 모양을 부각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6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68호	e머니에스 (e money S)	1월 15일	-	“남편 친구, 두 돌 된 딸에게 ‘버닝썬’ 언급...손가락으로 성행위 암시까지”	인터넷신문
제2022-169호	뉴스1코리아	1월 15일	사회면	“남편 친구, 두 돌 된 딸에게 ‘버닝썬’ 언급...손가락으로 성행위 암시까지”	뉴스통신
제2022-170호	디스패치뉴스	1월 15일	ALL면	“남편 친구, 두 돌 된 딸에게 ‘버닝썬’ 언급...손가락으로 성행위 암시까지”	인터넷신문
제2022-171호	인사이트	1월 15일	핫이슈면	카톡서 친구 두살 딸 ‘OO버닝썬’이라 이름 언급하며 손가락 성희롱하는 공무원들	인터넷신문
제2022-17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월 15일	사회면	“남편 친구, 두 돌 된 딸에게 ‘버닝썬’ 언급...손가락으로 성행위 암시까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73호	언론사명	김영덕(더퍼블릭)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퍼블릭 2022년 01월 02일 POLITICS면 「충격! “하, 맛있겠다” ‘여성 비하 또 터졌다’이재명 아들, ‘대선 후보 기간인 12월 13일까지 글 썼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댓글의 내용을 공표하였다. 비록 대선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캡처 형식을 통해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보도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7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74호	인사이트	1월 1일	핫이슈면	에스파 카리나 영상 보고 “한번만 ㅇㅇ 싶다” 댓글 남긴 이재명 아들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7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01월 12일 정치/사회면 「강남 클럽 귀 절단 여성이 인스타에 올린 현재 근황..사건의 진실은?(+CCTV)」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귀 절단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절단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낸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76호	언론사명	경기연합신문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2년 01월 10일 사회면 「[영상] 강아지 목줄 들어 빙빙 돌리며 수차례 폭행...충격적인 학대법」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목줄을 들어 올려 강아지를 돌리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과거 발생했던 유사 사건을 추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해당 영상은 동물 학대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낸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77호	언론사명	(주)경향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경향 2022년 01월 14일 생활면 「파주 ○○○○○, 3월 파주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7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78호	경기신문	1월 14일	09면	파주 첫 민간종합병원 '○○○○○' 확장 개원	지역일간지
제2022-179호	뉴스핌통신	1월 13일	전국면	파주시 첫 민간종합병원 3월 개원...19개 과목·250병상	뉴스통신
제2022-180호	라포르시안	1월 14일	의약계·병원면	파주 ○○○○○, 3월 종합병원급으로 확장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81호	메디파나뉴스	1월 13일	-	○○○○○,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인터넷신문
제2022-182호	메디팜헬스	1월 13일	의료·병원면	파주 ○○○○○, '민간종합병원' 승격...확장 신축 개원 눈앞	인터넷신문
제2022-183호	보건뉴스	1월 13일	-	○○○○○,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인터넷신문
제2022-184호	시니어오늘	1월 15일	수도권면	파주 ○○○○○, 3월 민간종합병원 승격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85호	아이팜뉴스	1월 13일	뉴스면	파주 ○○○○○, 3월 2일 파주 첫 민간 종합병원으로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86호	아크로팬 (ACROFAN)	1월 13일	-	파주 ○○○○○, 오는 3월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인터넷신문
제2022-187호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3일	지역면	○○○○○,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으로 재탄생	인터넷신문
제2022-188호	인터넷 병원신문	1월 13일	뉴스면	파주 ○○○○○, 종합병원 승격...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89호	인터넷 의계신문	1월 14일	병원·의원면	파주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0호	청년 의사	1월 13일	뉴스면	○○○○○, 파주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으로 새출발	인터넷신문
제2022-191호	티에이치이 dailynews	1월 13일	사회면	파주 ○○○○○,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2호	팜뉴스	1월 13일	보건·정책면	파주 ○○○○○, 3월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3호	페어뉴스	1월 13일	종합면	파주 ○○○○○, 오는 3월 파주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인터넷신문
제2022-194호	핀포인트뉴스	1월 13일	제약·보건면	파주 ○○○○○, 3월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5호	헬스비즈	1월 13일	건강면	파주 ○○○○○ 3월 민간 종합병원으로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6호	헬스앤마켓 리포터스	1월 13일	-	파주 ○○○○○, 오는 3월 파주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97호	인천일보	1월 14일	09면	파주지역 최초 민간 종합병원 3월 활짝	지역일간지
제2022-198호	인터넷 인천일보	1월 13일	사회면	파주지역 최초 민간 종합병원 3월 활짝	인터넷신문
제2022-199호	뉴스1코리아	1월 13일	지방면	파주 ○○○○○, 3월 민간종합병원 승격 신축 개원	뉴스통신
제2022-200호	인터넷 기호일보	1월 14일	지역면	파주 ○○○○○, 3월 2일 민간 종합병원 정식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201호	인터넷 후생일보	1월 13일	병·의원면	파주 ○○○○○, 오는 3월 '민간종합병원' 승격, 확장 신축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202호	경인방송 정말뉴스	1월 4일	사회면	○○○○○, 노안백내장 전용 진료공간 확장 운영	인터넷신문
제2022-203호	인터넷 국민일보	1월 4일	-	○○○타워○○ 7층 ○○○○○ 노안백내장센터 확장	인터넷신문
제2022-204호	인터넷 기호일보	1월 7일	사람과 사람면	○○○○○, 노안백내장 전용 진료공간 확장	인터넷신문
제2022-205호	인터넷 중부일보	1월 5일	사람들면	인천 ○○○○○ 노안백내장 전용 진료공간 확장,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초점	인터넷신문
제2022-206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1월 7일	라이프면	○○○○, 마곡나루역 앞 ○○○○○○○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207호	인터넷 후생신보	1월 3일	병·의원면	○○○○, ○○○○○○○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208호	언론사명	(주)일간경북신문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일간경북신문 2022년 01월 13일 06면 「벌써 3번째...‘이재명 의혹’ 제보자 또 자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1. 향후 보도 시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향후 보도 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제보자가 자살을 했다는 취지의 제목을 게재 하였다. 이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자 부검을 실시한 예정이라는 본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09호	인터넷 일간경북신문	1월 12일	정치면	벌써 3번째...‘이재명 의혹’ 제보자 또 자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10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01월 26일 연예면 「송지아 짝퉁 논란에 활동 중단→아빠 직업 의혹까지 생긴 이유는?»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한 유튜버가 ‘가품 구매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부친의 직업까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부친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방송 출연 등 스스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해당 유튜버와 달리 부친의 경우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딸의 SNS에 그의 초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11호	경기연합신문	1월 26일	포도·영상면	송지아 아빠 직업 논란까지 확산...“그의 아버지 치과의사 아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12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내외경제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내외경제TV 2022년 02월 08일 생활·문화면 「“정말 실망했다” 안현수 메달 획득에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비난 폭주..왜?»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자,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안현수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그의 아내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인물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아내 역시 방송 출연과 쇼핑물 운영 등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기사에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녀의 초상까지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1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13호	한국미디어 뉴스통신	2월 15일	뉴스통신면	‘빅토르안’ 귀화 당시 아내 ‘우나리’의 국적이 궁금해?	인터넷신문
제2022-214호	K trendy NEWS	2월 19일	뉴스면	빅토르 안, 계약만료...아내 ‘♥ 우나리’, 안현수 비난 받아도 ‘中 마스코트’ 빙둔둔 자랑	인터넷신문
제2022-215호	오에스이엔 (OSEN)	2월 19일	연예면	‘빅토르안 아내’ 우나리, 안현수 비난 받아도 ‘中 마스코트’ 빙둔둔 자랑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216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2년 02월 20일 정치면 「[단독]“김건희 전시회, 무속인이 축사” 김의겸 회견은 거짓이었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 및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주관한 전시회 개막식에 무속인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무속인의 성명과 초상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대선 정국에 불거진 ‘무속 논란’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여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소가죽 굿’을 집행했다거나 대선후보 배우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무속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거나 그의 활동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해당 인물이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2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17호	광주in	2월 17일	교육·인권면	김의겸 “김건희, 소가죽 굿판 핵심인물과 직접 연관”.. ‘무속논란 추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218호	국민뉴스	2월 17일	뉴스종합면	김의겸 “김건희, 소가죽 굿판 핵심인물과 직접 연관”.. ‘무속논란 추가 전격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219호	뉴데일리 (New Daily)	2월 20일	정치면	“김건희 주관 전시회서 무속인 축사했다는 김의겸 주장은 거짓”	인터넷신문
제2022-220호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2월 16일	정치면	김의겸 “김건희, 소가죽 굿판 핵심인물과 직접 연관”.. ‘무속논란 추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221호	법률닷컴	2월 16일	-	김의겸 “김건희, 소가죽 굿판 핵심인물과 직접 연관”.. ‘무속논란 추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222호	시사타파TV	2월 17일	정치면	김의겸 “김건희, 소가죽 굿판주관 핵심 직접연관”.. “르 코르뷔지에전” 축사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223호	열린뉴스	2월 18일	정치면	대선판 흔드는 윤석열 김건희 무속관련 의혹...사진, 영상 속속 드러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24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월 16일	-	與김의겸 “소가죽 굿’ 무속인 코바나 행사 축사”尹측 “축사자 전부 외국인…과담 앵무새”	인터넷신문
제2022-225호	인터넷 아주경제	2월 16일	정치면	‘엽기굿판’ 공방 지속...김의겸 “무속인, 코바나컨텐츠 행사서 축사”...野 “사실무근”	인터넷신문
제2022-226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2월 16일	2022 대선면	김의겸 “소가죽 행사 실행자 코바나행사 축사” 尹측 “축사 안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227호	조세일보	2월 17일	뉴스면	이두아·전재수, ‘엽기굿판·오살의식’ 논쟁... 진실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제2022-228호	시사발전소	1월 25일	시사이슈면	김건희, 건진법사의 수양딸? 밝혀지는 두 사람의 특수관계	인터넷신문
제2022-229호	충북세계 타임즈	2월 15일	국정/ 국방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건진법사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굿판 동참!	인터넷신문
제2022-230호	팩트TV	2월 15일	-	[영상] 김의겸 “건진법사 소가죽 굿판에 ‘윤석열·김건희’ 이름 확인…국힘 또 발뺌해보라”	인터넷신문
제2022-231호	인터넷 세계타임즈	2월 15일	국정/ 국방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건진법사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굿판 동참!	인터넷신문
제2022-232호	인터넷 전라일보	2월 15일	정치면	김의겸 의원, “엽기굿판에 윤석열 부부 연등” 주장...근거제시 파문	인터넷신문
제2022-233호	인터넷브리징 경제신문	2월 15일	뉴스면	김의겸 “윤석열·김건희, 건진법사 주관 소 가죽 벗긴 굿판 연루… 무속인 비선실세 안돼”	인터넷신문
제2022-234호	평화나무	2월 15일	로고시안면	소가죽 벗기던 굿판서 확인된 ‘윤석열·김건희 연등’	인터넷신문
제2022-235호	조세일보	2월 15일	뉴스면	윤석열·김건희,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엽기 굿판’에 연등(燈) 확인	인터넷신문
제2022-236호	브레이크뉴스 (break news)	2월 15일	정치면	김의겸 의원 “잔인한 굿판, 김건희-윤석열-건진법사-이현동-윤해관 등 총망라”	인터넷신문
제2022-237호	인터넷뉴스 신문고	2월 15일	정치면	김의겸 “소가죽 벗긴 건진법사 무속행사, 윤석열 김건희 등 연루 확인”	인터넷신문
제2022-238호	주간현대	2월 16일	Special Reports면	“소가죽 벗기는 엽기 굿판 윤석열·김건희 직접 연루”	인터넷신문
제2022-239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2월 15일	정치/ 정책면	“김의겸 ”윤석열·김건희, 건진법사 ‘엽기 굿판’에 연루” 주장	인터넷신문
제2022-240호	열린공감TV	2월 12일	프로젝트면	0212 김건희의 무속종족. 조남욱의 카지노 욕망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241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굿모닝충청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굿모닝충청 2022년 02월 02일 뉴스플러스면 「최은순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김건희의 거짓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개인 정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가 동업자와 맺은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하면서, 약정서 원본과 위조본을 기사에 첨부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동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자료를 기사에 첨부하는 것이 의혹 제기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전체를 여과 없이 그대로 공표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24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42호	국민뉴스	2월 4일	뉴스종합면	김건희의 1억원 거짓말..최은순 “참, 순진.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나?”	인터넷신문
제2022-243호	열린공감TV	1월 30일	프로젝트면	[열공0130]김건희 “내가 검찰권력이다”, “맥주 한잔 하자”(…술 못 먹는다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44호	언론사명	(주)머니투데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the 300 2022년 02월 14일 「'李실내흡연' 8년전 사진이었다…與 “尹구뚝발 민폐 몰타기, 저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 속 일반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대선후보의 흡연 사실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식별 가능한 사인(私人)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24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45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2월 14일	뉴스면	'이재명 실내흡연' 사진이...野, '윤석열 구둣발' 논란에 맞붙	인터넷신문
제2022-246호	내외경제TV	2월 15일	정치면	기차에서 발 올려놓은 尹 VS 식당에서 담배 피는 李...네거티브전 점점 치열해져	인터넷신문
제2022-247호	노컷뉴스	2월 15일	정치면	'尹 구둣발'에 '李 실내흡연' 맞붙...줄리·생태당까지 재소환[이슈시개]	인터넷신문
제2022-248호	뉴스플러스	2월 16일	정치·행정면	여, 윤석열 열차 구둣발 공세에 야, 이재명 실내 흡연 반격	인터넷신문
제2022-249호	뉴스핍통신	2월 15일	정치면	[이슈+] 윤석열 '구둣발' vs 이재명 '흡연'... 與野, '비매너' 네거티브 공방	뉴스통신
제2022-250호	더퍼블릭	2월 15일	정치면	실내흡연 금지법 계도기간에 담배 핀 이재명...與 "위법 아니다"野 "계도기간이라도 법 지켜야"	인터넷신문
제2022-251호	데일리안	2월 15일	정치면	이재명, '실내 흡연 논란'에 국민의힘 "경위·위법 여부 밝혀야"	인터넷신문
제2022-252호	디스패치뉴스	2월 14일	SNSFeed면	윤석열 '구둣발' 논란에 국힘 "이재명, 식당서 흡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붙	인터넷신문
제2022-253호	매경닷컴	2월 14일	정치면	국힘 "이재명, 식당서 실내흡연"...與 "8년전엔 법위반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2-254호	부산닷컴	2월 14일	-	이번엔 '이재명 음식점 실내 흡연' 사진...맞붙 놓은 野	인터넷신문
제2022-255호	아시아 경제닷컴	2월 16일	정치면	尹 구둣발 vs 李 실내흡연...때아닌 '공중도덕 공방'에 커지는 유권자 실망감	인터넷신문
제2022-256호	아이뉴스24 (inews24)	2월 14일	정치면	국힘 "이재명 식당서 실내 흡연"...與 "당시엔 위반 행위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2-257호	에브리뉴스	2월 14일	정치면	"앞좌석 구둣발 올려" vs "실내흡연" 與-野네거티브 대결	인터넷신문
제2022-258호	연합뉴스	2월 14일	최신기사면	국힘 "이재명, 식당서 실내흡연"...與 "8년전엔 법위반 아냐"	뉴스통신
제2022-259호	이투데이	2월 15일	정치면	'이재명 실내흡연' 사진에...민주당 "8년 전에 법 위반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2-260호	인사이트	2월 15일	정치·사회면	이재명 실내 흡연 사진에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61호	인터넷 강원일보	2월 14일	정치면	국민의 힘 “이재명, 식당서 실내흡연”...민주당 “2014년 당시는 법 위반 아냐”	인터넷신문
제2022-262호	인터넷 경향신문	2월 14일	정치면	‘윤석열 쪽뽀’ 공격에 이번엔 ‘이재명 실내흡연’ 역공...대선 선거운동 ‘D-1 매너공방전’	인터넷신문
제2022-263호	인터넷 국민일보	2월 14일	시사면	국힘, 尹 ‘구똥발’ 역공...“이재명 식당 흡연, 말려도 피워”	인터넷신문
제2022-264호	인터넷 국제신문	2월 14일	-	‘尹 구두’ 논란 국민의힘 ‘李 흡연’으로 맞붙...연일 난타전	인터넷신문
제2022-265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월 14일	정치면	국힘 ‘李 식당 흡연사진’ 역공에 ...與 “尹 ‘쪽발열차’ 감추려 8년 전 일로 몰타기”	인터넷신문
제2022-266호	인터넷 매일신문	2월 14일	-	민주당 “8년 전 식당 흡연으로 윤석열 구똥발 몰타기? 엄중대응”	인터넷신문
제2022-267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 뉴스	2월 15일	정치면	“맞담배 피우는 격의없는 자리였다” ‘식당 흡연’ 이재명 민주당의 설명	인터넷신문
제2022-268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15일	정치면	尹 ‘쪽뽀’ 논란에 8년 전 李 식당 흡연사진 소환한 국민의힘...與 “쪽발열차 몰타기?”	인터넷신문
제2022-269호	인터넷 천지일보	2월 14일	정치면	與 윤석열 발 사진 공세... 野 이재명 ‘음식점 흡연’ 사진으로 역공	인터넷신문
제2022-270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월 15일	정치면	“맞담배 피우는 격의없는 자리였다” ‘식당 흡연’ 이재명 민주당의 설명	인터넷신문
제2022-271호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5일	-	윤석열 ‘쪽뽀’ 사진 못매에... 이재명 ‘식당 흡연’ 사진 꺼낸 국민의힘	인터넷신문
제2022-272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월 14일	-	與, ‘李실내 흡연’ 논란에 “당시 법률위반 아냐...저열한 네거티브”	인터넷신문
제2022-273호	일간제주	2월 14일	정치면	국힘 “李 음식점 흡연 경위 밝혀야” 민주 “당시 법 위반 아냐”(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274호	조선비즈	2월 14일	정책면	이재명, 식당서 실내흡연 논란...與 “2014년엔 돼” 野 “위법 맞는다”	인터넷신문
제2022-275호	쿠키뉴스	2월 14일	정치면	구똥발에 실내흡연 논란까지...매너는 대통령을 만들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76호	언론사명	(주)이원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폴리뉴스(polinews) 2022년 01월 26일 정치면 「이재명 아들, 군복무 중 성남 국군수도병원 '특혜입원' 논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NS에 올린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고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사적인 사항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7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77호	내외경제TV	1월 26일	정치면	박수영 의원 "이재명 후보 장남, 군 복무 중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78호	언론사명	길봉진(경기포커스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포커스신문 2022년 02월 16일 정치/행정면 「배소현 씨는 공무원일까 공노비였을까?」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 관련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의전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결혼식 사진을 공표하였다. 비록 대선후보 배우자에 제기된 의혹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해당 공무원이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성명 공개를 넘어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무관한 사적 영역(결혼식)에서의 모습이 담긴 당사자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279호	언론사명	길봉진(경기포커스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경기포커스신문 2022년 02월 20일 정치/행정면 「“옆집 부부의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의 전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사인의 초상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의 ‘옆집 캠프’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자로 거론된 인물의 실명은 표시하지 않으면서도 초상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인물이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280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세계타임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충북세계타임즈 2022년 02월 04일 전국의회면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이재명/최대호의 특혜교차채용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사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력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안양시장과 친인척 특혜 교차채용 관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기자회견문을 보도하면서, 친인척으로 거론된 사람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대선후보 검증과 채용비리 관련 의혹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거론된 인물들이 이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28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81호	수도권타임즈	2월 6일	지역정가면	이재명/최대호의 특혜 교차 채용 기자회견	인터넷신문
제2022-282호	인터넷 세계타임즈	2월 4일	전국의회면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이재명/최대호의 특혜교차채용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283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2월 15일 사회면 「특정 신체부위 주무르며… 알바 첫날 여친 성추행한 막창집, 바로 이곳입니다 (사진)」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 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들의 나이와 성명 일부를 공개한 제보자의 SNS를 공표하였다. 비록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 도, 사인(私人)인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식당 상호 및 전경사진에 더해 여과 없이 공표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8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84호	디스패치뉴스	2월 15일	Issue면	'성추행 논란' ○○ 막창집 부정장 해명글에 피해자 남친이 공개한 증거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285호	살구뉴스	2월 17일	정치/ 사회면	○○동 ○○ 막창 사건의 전말.. 신상 알려지자 충격적인 영상 공개됐다(+사진)	인터넷신문
제2022-286호	뉴스1코리아	2월 14일	사회면	"여친이 ○○ 막창집서 직원들에 성추행당했다..전부 한통속" 폭로글 공분	뉴스통신
제2022-287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월 14일	사회면	"여친이 ○○ 막창집서 직원들에 성추행당했다..전부 한통속" 폭로글 공분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288호	언론사명	(주)한려투데이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려투데이 2022년 02월 10일 사회면 「[독점] '두 얼굴의 원장님' 제자 폭행치사 후 자살 위장, 징역 8년 확정」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 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상세히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통영의 한 댄스학원 원장이 폭행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묘사하였다. 비록 위 기사의 보도목적이 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해도,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289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2월 11일 사회면 「대소변 먹고 찬물 샤워까지...8살 딸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확정」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등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진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데에 ○○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의 배경이나 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사건 진술인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진술인인 아동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289호와 범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290호	e머니에스 (e money S)	2월 11일	-	대소변 먹이며 3년 학대도 모자라 8살 딸 살해한 부부 오늘 대법 선고	인터넷신문
제2022-291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2월 11일	뉴스면	8세 딸 대소변 먹고 굶겨죽인 친모·계부, 징역 30년형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2호	STN SPORTS	2월 11일	경제면	8세딸 대소변 먹인 '엽기 부부'...둘다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3호	공공뉴스	2월 11일	사회면	굶기고 대소변 먹고..8살 딸 죽게한 '엽기 부부'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294호	노컷뉴스	2월 11일	사회면	8살 딸 잔혹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징역 30년형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5호	뉴스스 (NEWSIS)	2월 11일	사회면	8세딸 대소변 먹인 '엽기 부부'...둘다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6호	동아닷컴	2월 11일	사회면	대소변 먹고 찬물 샤워까지..8살 딸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7호	아시아 경제닷컴	2월 11일	사회면	"굶기고 입에 대소변"... '8살 ○○ 학대·살인'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8호	아시아투데이 ASIA TODAY 닷컴	2월 11일	사회면	8살 딸 대소변 먹고 찬물샤워... '학대 살인'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299호	인사이트	2월 11일	정치·사회면	대소변 실수한 8살 딸에게 인분 먹여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인터넷신문
제2022-300호	인터넷 경향신문	2월 11일	사회면	8살 딸에 대소변 먹고 굶겨 사망케 한 '인면수심' 부모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301호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1일	사회면	대법,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대소변 먹이는 '엽기 행각'도	인터넷신문
제2022-302호	인터넷 세계일보	2월 11일	사회면	8세딸 대소변 먹인 '엽기 부부'...둘다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303호	인터넷 중앙일보	2월 11일	사회면	8살딸 대소변 먹고 학대살인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304호	인터넷 한겨레	2월 11일	사회면	8세 딸 대소변 먹고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제2022-305호	인터넷 한국경제	2월 11일	사회면	8세 딸 입에 대소변...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306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2월 17일 Issue면 「“남편 수면제 먹고 자. 안들켜”...유부녀에게 스폰 받는다는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게재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면서 불륜 및 성관계를 암시하는 남녀 간의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공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07호	언론사명	뉴데일리(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데일리(New Daily) 2022년 02월 11일 사회면 「[단독] KBS 기자 2명, 한 달 새 잇따라 ‘극단적 선택’ 사망」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를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KBS기자 2명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입사 연도, 기수, 근무부서, 인사사고 내역, 특종보도 이력, 사내결혼 여부 등을 공개하였다. 이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으로, 고인의 인격 및 유가족의 사생활 등을 고려할 때 자살자의 신원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08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1월 28일 정치·사회면 「1등급→3등급 떨어진 수험생, '성적 비관' 극단적 선택」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드러난 일부 사실로 자살 동기를 단정하고, 특히 이를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겐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2-3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09호	아시아경제 닷컴	1월 28일	사회면	'성적 비관' 수험생 또 극단적 선택... "사회적 지원 체계 필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310호	언론사명	(주)씨비에스아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노컷뉴스 2022년 02월 15일 사회면 「[탐정 손수호] "고양이 불태워 인증샷, 그놈 실마리 찾았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30초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고양이가 불에 타는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그대로 게재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3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11호	디스패치뉴스	2월 15일	-	고양이 산채로 불태우고 인정한 '그놈' "살마리 찾았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312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2월 18일 핫이슈면 「살아있는 햄스터 십자가에 묶어 고문한 뒤 "실험했다"며 인증 사진 올린 디시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햄스터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햄스터를 고문하는 과정과 해당 사진을 게재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동물을 고문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과 해당 학대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낸 것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13호	언론사명	(주)매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일보 2022년 02월 14일 경제면 「○○○○○○○○○○○○, ○○○○○○ 위례점 14일 오픈」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 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3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14호	메디컬투데이	2월 14일	의료면	○○○○○○○○○○○,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15호	메디파나뉴스	2월 14일	전체기사면	○○○○○○○○○○○,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16호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닷컴	2월 14일	사회면	○○○○○○○○○○○,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17호	보건뉴스	2월 14일	-	○○○○○○○○○○○,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18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월 25일	라이프면	○○○○○○○○○○○, 경기도 첫 지점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19호	헬스비즈	2월 14일	건강면	○○○○○○○○○○○, 경기도 첫 네트워크 지점 ○○○○○○ 위례점 오픈	인터넷신문
제2022-320호	누리일보	2월 3일	경제산업면	지나치기 쉬운 목통증, 악화되면 목디스크로 발병	인터넷신문
제2022-321호	충남도민일보	2월 3일	전국뉴스면	지나치기 쉬운 목통증, 악화되면 목디스크로 발병	지역일간지
제2022-322호	경북도민일보	2월 10일	지역08면	경주 보문단지 ○○○○○○ 글로벌 관광지의 건강 지키미	지역일간지
제2022-323호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2월 9일	지역뉴스면	경주 보문단지 ○○○○○○, 글로벌 관광지의 건강 지키미	인터넷신문
제2022-324호	대구신문	2월 10일	지역09면	세계적 휴양지 보문단지에 '환우 동반자'	지역일간지
제2022-325호	인터넷 대구신문	2월 9일	경북면	세계적 휴양지 보문단지에 '환우 동반자'	인터넷신문
제2022-326호	코리아투데이 뉴스	2월 9일	사회/ 문화면	[병원] ○○○○○○(원장 ○○○), 경주 보문단지 개원... 관광객과 시민 건강 지키미 봉사	인터넷신문
제2022-327호	뉴스핌통신	2월 18일	전국면	양산 ○○○○○○, 성장기 자녀 '아동발달센터' 개소	인터넷신문
제2022-328호	세계뉴스통신	2월 18일	사회면	양산 ○○○○○○ 부설 '아동발달센터' 개소	인터넷신문
제2022-329호	인터넷부산 제일경제신문	2월 18일	뉴스면	○○○○○○○, 성장기 자녀 '아동발달센터' 개소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30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2년 02월 07일 이슈면 「추자현 남편, 불륜 의혹 그후 “다리 부러뜨린다” 폭언 충격」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의 제목에서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불륜 의혹이 있었던 유명 연예인의 남편에 대해 중국의 한 누리꾼이 과격한 댓글을 남겼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남편을 해당 발언의 주체로 오인케하는 제목을 게재하였다. 이는 누리꾼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본문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31호	언론사명	한겨레신문(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겨레 2022년 02월 27일 사회면 「“무거운 짐 내려 놓으시길”…광주 붕괴사고 눈물의 영결식」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망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들의 장례식을 보도하면서 일부 사망자의 초상 및 사망자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망자의 초상과 성명을 식별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은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32호	언론사명	(주)경향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2022년 03월 17일 사회면 「전북 김제 주택서 화재·장애인 3명 등 4명 참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사적사항이 상세히 공표된 부분을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도로명 주소가 포함된 주택 전경사진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가 사망자 중 한 사람과 사실혼 관계이고, 사망한 다른 3명은 장애로 인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내용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사건을 알리고 피해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공익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전경사진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도로명 주소가 드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과 무관한 사적 사항(사실혼 관계,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장애의 구체적인 종류, 장애로 인한 지원금 수급 세부내역)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333호	언론사명	(주)더팩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팩트 2022년 02월 23일 정치면 「[대선 이슈] 김문기 자 “이재명, 골프 친父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여당 대선후보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사망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한 야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 속 일반인의 초상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대선 정국에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여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사인(私人)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34호	언론사명	(주)메이박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파이낸스투데이 2022년 03월 15일 핫! 유튜브면 「[성제준 TV] 여가수 논란 드디어 터졌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가수가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 보도하면서, 여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녀의 부친이 수행비서로 활동했다는 점 등을 특혜의 근거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수 부친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인물(가수의 부친)이 과거 공개석상에 등장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35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살구뉴스 2022년 02월 28일 정치/사회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얼굴 알려지자..집안까지 재조명」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계기로 과거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재조명하여 보도하면서, 가해자들의 성명과 초상, 나이는 물론 부친의 신상정보를 공표하였다. 비록 가해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우연한 계기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된 바 없는 가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336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3월 23일 Issue면 「“○○○ 딸도 있었다”…극단적 선택 시도한 10대 래퍼 실명 공개 (영상)」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오피스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래퍼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보도하면서, 특정 가수 및 그와 열애 중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함께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가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열애 상대로 지목된 여성 또한 방송 출연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은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왜곡 내지 침해 발생 시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37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3월 23일	연예면	“극단적 선택 시도한 ‘쇼미’ 래퍼는 ○○○…‘○○○ 딸’도 함께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338호	sportschos un.com	3월 23일	연예면	“‘○○○ 딸’ ○○○♥○○○=번개탄 피워 극단적 시도한 10대 래퍼”	인터넷신문
제2022-339호	살구뉴스	3월 23일	정치/사회면	고등래퍼 출신 번개탄 극단적 선택한 래퍼는 ○○○였다..이유는?	인터넷신문
제2022-340호	스포츠 투데이M	3월 23일	연예면	“○○○, 번개탄 피워 극단적 시도…○○○ 딸 ○○○가 화재 막아”	인터넷신문
제2022-341호	스포티비뉴스	3월 23일	TV·연예면	“극단적 선택 시도 ‘쇼미’ 래퍼=○○○…○○○ 딸 ○○○도 있었다”(‘연예뒤통령’)	인터넷신문
제2022-342호	인사이트	3월 23일	엔터테인먼트면	“극단적 선택 시도한 10대 래퍼...유명가수 딸도함께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343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3월 23일	-	이진호, “○○○=‘고등래퍼’ 극단선택 래퍼…‘○○○ 딸’ ○○○도 있었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44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03월 21일 연예면 「‘애로부부’ 폭로된 축구선수가 ○○○? 와이프 근황·상간녀 정체까지 화제」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의 실제 당사자로 한 축구선수를 지목하여 보도 하면서, 그의 성명과 초상, 배우자의 초상 등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축구선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과거 음반을 내면서 표지에 본인과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논란에 불과한 일부의 주장 등을 근거로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표한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왜곡 내지 침해 발생시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345호	언론사명	(주)뉴스시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2년 02월 23일 문화면 「“백윤식과 첫날밤 잊지 못해”…30살 연하 前연인 책 출간」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한 유명 배우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유명 배우와의 만남과 이별 과정에 대한 에세이를 출간한다고 보도하면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배우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관계 묘사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46호	STN SPORTS	2월 23일	연예면	성생활 폭로...백윤식, 30세 연하 前연인 법적대응	인터넷신문
제2022-347호	마이데일리	2월 23일	-	"백윤식과 임신 준비하다 결별"...30살 연하 前여친, 개인사 담은 에세이집 출간	인터넷신문
제2022-348호	매일한국	2월 23일	크리에이터면	"백윤식과 첫날밤 잊지 못해"...30살 연하 前연인 책 출간	인터넷신문
제2022-349호	스포탈코리아	2월 23일	연예면	"결혼 전 임신 계획"...백윤식 30세 연하 前연인, 책 출간→"법적 조치 검토" 갈등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350호	오에스이엔 (OSEN)	2월 23일	연예면	"결혼 전 임신 계획"...백윤식 30세 연하 前연인, 책 출간→"법적 조치 검토" 갈등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351호	인터넷 문화일보	2월 23일	문화면	"시험관 임신 계획"...백윤식, 30세연하 前연인 책출간 법적조치	인터넷신문
제2022-352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2월 24일	연예면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두고 갈등 "법적대응vs문제없다"	인터넷신문
제2022-353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월 23일	문화면	"시험관 임신 계획"...백윤식, 30세연하 前연인 책출간 법적조치(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354호	인터넷 한국경제	2월 23일	-	적나라한 성생활 폭로...前 여친의 책 팔이에 끌려나온 76세 백윤식 [TEN스타필드]	인터넷신문
제2022-355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2월 23일	문화일반면	"백윤식과 임신준비 중 결별"...30세 연하 前연인 에세이 출간	인터넷신문
제2022-356호	조선닷컴	2월 23일	연예면	"결혼 전 임신 계획"...백윤식 30세 연하 前연인, 책 출간→"법적 조치 검토" 갈등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357호	창업일보	2월 23일	뉴스면	백윤식 공식입장!	인터넷신문
제2022-358호	코리아이글 뉴스	2월 23일	연예/ 문화면	백윤식, "시험관 임신 준비"...30살 연하 前연인 책출간 법적조치	인터넷신문
제2022-359호	텐아시아	2월 24일	뮤직면	적나라한 성생활 폭로...前 여친의 책 팔이에 끌려나온 76세 백윤식 [TEN스타필드]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60호	언론사명	(주)슬기로운생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직설 2022년 03월 17일 정치·사회면 「[직설영상] ‘머리에 피 줄줄’ 지하철서 60대 남성 폭행한 20대 만취 여성」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지하철 차량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가해자가 구속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가해자의 초상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공표돼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한편, 사인(私人)인 피해자의 초상 역시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격권 역시 침해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6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61호	경기연합신문	3월 25일	사회면	경찰에 ‘뺨’ 있다더니 ‘주거불명+도주우려’로 구속된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인터넷신문
제2022-362호	데일리안	3월 17일	사회면	“나 경찰 뺨 있어”...만취해 휴대폰으로 아버지뺨 남성 폭행한 여성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363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3월 02일 지방면 「[사건의 재구성] 어린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그놈…뒤늦은 눈물」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 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p> <p>비록 위 기사의 보도 목적이 아동 학대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6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64호	로톡뉴스	3월 7일	이슈면	“내 애 가졌으니 내 아내”라던 의붓딸 12년 성폭행 남성, 돌연 “딸 행복을 빈다”	인터넷신문
제2022-365호	조선닷컴	3월 5일	사회면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라던 새 아빠… 법정선 “딸 행복 빈다”	인터넷신문
제2022-366호	부산닷컴	3월 5일	-	14세 딸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라던 의붓아빠…이번달 항소심	인터넷신문
제2022-367호	인사이트	3월 5일	핫이슈면	14살 때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 의붓딸 12년동안 성폭행한 새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368호	인터넷 국민일보	3월 5일	-	어린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그놈, 눈물의 선처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2-369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월 5일	사회면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 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새 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370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3월 5일	사회면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새 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371호	인터넷 이데일리	3월 5일	사회일반면	“넌 내 아내” 악마 같은 새아빠 성폭행… 딸에게 집은 자옥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372호	인터넷 중앙일보	3월 5일	사회면	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37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5일	사회일반면	“넌 내 아내” 12년 성폭행한 의붓父...“25년형 지나치다” 항소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74호	언론사명	(주)뉴스시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2년 03월 10일 수도권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 ○○ ○ 신고로 40대 가장 입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 등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폭행 사건의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이를 목격한 ○○의 신고로 남편이 체포됐다고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신고자인 아동의 성장과정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7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75호	경기매일	3월 11일	인물11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 ○○ ○ 신고로 40대 가장 입건	지역일간지
제2022-376호	인터넷 경기매일	3월 10일	뉴스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 ○○ ○ 신고로 40대 가장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2-377호	경인일보	3월 11일	사회05면	부부싸움중 아내 때려 ‘긴급체포’ ○○ ○의 신고로 경찰 분리조치	지역일간지
제2022-378호	인터넷 경인일보	3월 11일	사회면	부부싸움중 아내 때려 ‘긴급체포’... ○○ ○의 신고로 경찰 분리조치	인터넷신문
제2022-379호	뉴스1코리아	3월 10일	지방면	“아빠가 엄마를”...아내 폭행한 40대, ○○, ○○ ○이 112신고	뉴스통신
제2022-380호	남동뉴스	3월 10일	뉴스면	“아빠가 엄마를”...아내 폭행한 40대, ○○, ○○ ○이 112신고	인터넷신문
제2022-381호	동아닷컴	3월 10일	사회면	9살·10살 두딸 앞서 아내 폭행 40대 검거...○이 112신고	인터넷신문
제2022-382호	마이테일리	3월 10일	-	○○ ○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가장...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83호	인터넷 기호일보	3월 11일	사회면	인천 미추홀경찰서, 말다툼 끝에 아내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인터넷신문
제2022-384호	인터넷 서울신문	3월 10일	사회면	아내 폭행 40대 아빠 ... ○○ ○들 신고로 체포돼	인터넷신문
제2022-385호	인터넷 시사뉴스	3월 10일	사회면	부부싸움 중 ○○○○의 신고로 40대 아버지 가정폭력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2-386호	인터넷 시사종합뉴스	3월 10일	사회면	[경찰] “엄마 아빠가 싸워요” ○○, ○○ ○ 신고... 40대 가장 입건	인터넷신문
제2022-387호	인터넷 영종뉴스	3월 11일	시사면	“아빠가 엄마를”...아내 폭행한 40대, ○○, ○○ ○○이 112신고	인터넷신문
제2022-388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10일	사회일반면	“아빠 엄마가 싸워요” ○○, ○○ ○들이 112신고...‘아내 폭행’ 40대 체포	인터넷신문
제2022-389호	투데이플러스	3월 11일	뉴스면	말다툼 도중 아내 폭행한 남편, ○○ ○들 신고로 체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390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03월 16일 정치/사회면 「○○ ○○ 성폭행 무고 피해 주장 남성 결국 극단적 선택...사건의 전말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내용과 자살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 중 성폭행 논란과 관련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한 대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인 해당 학생의 성명과 재학중이었던 대학 및 학과, 학회장 활동 이력 등을 공표하 고 자살 동기를 드러내 보도하였다. 이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화하기 어려운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폭행 논란과 관련되어 있는 상대 학생의 신상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 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 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391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3월 21일 Issue면 「“토막 내서 구워 먹었다” 포항 폐양어장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포항 폐양어장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는가 하면,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p> <p>비록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했다 하더라도, 비식별 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잔인한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관련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392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동광지티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골든타임즈(goldentimes) 2022년 03월 03일 사회면 「파주 ○○○○, 2일 신축 확장 개원…4월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였다.</p> <p>이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과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이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39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393호	GPN뉴스	3월 2일	뉴스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394호	경기북부 탐뉴스	3월 2일	북부뉴스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4월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뒤	인터넷신문
제2022-395호	뉴스21통신	3월 3일	지역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뉴스통신
제2022-396호	뉴스에이	3월 4일	생활·건강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4월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뒤	인터넷신문
제2022-397호	미디어타임즈	3월 2일	생활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398호	보건뉴스	3월 3일	-	종합병원 승격 앞둔 파주 000000,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399호	비욘드포스트 (BeyondPost)	3월 2일	-	파주 000000 신축 확장, 2일 개원한다	인터넷신문
제2022-400호	수도일보	3월 3일	종합04면	파주 000000, 2일 신축확장 이전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401호	인사이드케이블	3월 8일	로컬뉴스면	(파주)000000 개원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초읽기	인터넷신문
제2022-402호	중앙신문	3월 3일	종합 02면	파주 000000, '신축 건물'로 이전	지역일간지
제2022-403호	인터넷 중앙신문	3월 2일	지역종합면	파주 000000 '신축 건물'로 이전...다음달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인터넷신문
제2022-404호	인터넷 매일일보	3월 2일	경제면	파주 000000, 신축 확장 개원...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뒤	인터넷신문
제2022-405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3월 2일	사회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4월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뒤	인터넷신문
제2022-406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3월 2일	로컬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407호	저널25방송	3월 2일	사회면	파주 000000, 2일 신축 확장 개원 4월 지역 최초 민간종합병원 승격 앞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408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3월 29일 지방면 「[사건의 재구성] “못배운 우리 20대에 굶어죽어”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찔렀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 중 범죄 방법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현장인 해당 주택의 옥상 내부 사진을 게재하고 범죄 수법을 묘사하였다. 비록 위 기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특정 범죄사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 공간인 옥상 내부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또한 위 기사 중 포악함과 잔인함이 느껴지는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일반 독자로 하여금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무감각 내지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40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09호	인터넷 이데일리	4월 12일	사회일반면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엄마는 “잘 돌볼게요”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2-410호	디스패치뉴스	3월 29일	-	[사건의 재구성] “못배운 우리 20대에 굶어죽어”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찔렀다	인터넷신문
제2022-411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12일	사회면	“잔소리 지겨워”...흥기로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항소 기각	인터넷신문
제2022-412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 뉴스	5월 12일	사회면	“잔소리 지겨워”...흥기로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항소 기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13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리서치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2년 04월 16일 뉴스통신면 「박수홍 사망시 친형부부에게...몰래 가입한 사망보험금 10억원 실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형수가 연예인 명의의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한 의혹이 있다는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형수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과거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14호	살구뉴스	4월 22일	연예면	박수홍 친형, 형수 충격적인 만행 밝혀졌다..황령에 악플까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15호	언론사명	(주)뉴스엔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엔 2022년 04월 08일 연예면 「“도박 파문 후 4년만 복귀” 슈, 임효성과 또 이혼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자녀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방송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남편과의 이혼설이 불거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녀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녀 또한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더욱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1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16호	엣스타일 (atstar1)	4월 9일	ENTERTAIN MENT면	“수년 째 별거” 슈, 남편 임효성 이혼설 직접 밝히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17호	언론사명	(주)전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전라일보 2022년 03월 27일 사회면 「국립대 총학생회장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에 논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성명과 초상을 공표하고, 게시글 캡처화면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초상 또한 공표하였다. 비록 위 기사가 국립대 총학생회장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논란을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학교명, 해당 인물의 성명과 초상, 제3자인 학생들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서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418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국제드림항공여행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중국동포신문사 2022년 03월 18일 동포사회면 「(영상속보) 중국동포 애 엄마에 .. 조선족이지 당장 꺼져! 집단 인종차별 중국동포들 분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 및 음성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벌어진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영상 속 인물들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다. 비록 위 기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의 초상과 음성을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서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 및 음성의 공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419호	언론사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2022년 03월 24일 엔터테인먼트면 「“폴란드 호텔에 있다는 건 가짜뉴스”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제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전직 군 장교출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근황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해당 인물을 목격했다며 게시한 댓글 내용을 캡처를 통해 인용하는 과정에서 글 게시자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댓글이 유튜브 상으로 이미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댓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거론하는 부정적 취지의 기사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댓글 게시자의 성명을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20호	위키트리 (Wikitree)	3월 22일	엔터면	“호텔에서 꼬박꼬박...” 우크라이나 간다던 이근에 대한 ‘충격 체보’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21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4월 19일 사회면 「사퇴 뿐 아니라 조사를...정치권·의대교수까지 정호영 전방위 압박」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병무청 진단서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그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고, 해당 의혹의 제기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를 공적 인물이라 하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22호	수원신문	4월 19일	사회면	“사퇴 뿐 아니라 조사를”...정치권·의대교수까지 정호영 전방위 압박	인터넷신문
제2022-423호	OBS경인TV	4월 21일	정치면	윤 당선인, 다음 달 21일 바이든과 정상회담 할 듯	방송
제2022-424호	e머니에스 (e money S)	4월 19일	-	“사퇴 뿐 아니라 조사를”...정치권·의대교수까지 정호영 전방위 압박	인터넷신문
제2022-42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19일	사회면	“사퇴 뿐 아니라 조사를”...정치권·의대교수까지 정호영 전방위 압박	인터넷신문
제2022-426호	평화나무	4월 22일	로그시안면	사세행, 정호영 후보자 직권남용 고발	인터넷신문
제2022-427호	살구뉴스	4월 21일	정치/ 사회면	정호영 아빠 찬스 논란 생김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 경북대 특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28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2년 04월 04일 「“5년 연애+상견례 했는데 바람”...스트리머 ○○○, ○○○○ 사생활 폭로」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남성BJ(방송자키)와 교제한 바 있는 한 여성BJ(방송자키)에 대해 보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교제 과정과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임신 후 유산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여성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공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적 영역의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2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29호	더데이즈	4월 5일	엔터면	BJ 0000 000 나이 인스타 전남친의 폭로 현재 배우선수 000 열애 무슨 상황?	인터넷신문
제2022-430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4월 7일	-	“다른 스트리머랑 하룻밤..” 실시간 충격 사생활 폭로된 유명 여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31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4월 08일 사회면 「“이은혜 혼전임신 첫 결혼, 친정모가 그 아이 키워”…동네 이웃 증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계곡 살인 사건’의 여성 피의자가 과거 살았던 동네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증언을 인용, 이 여성이 처음 결혼한 남자와 이혼하고 그때 낳은 아이를 그녀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보도 당시 공개수배 상태였다 하더라도, 혼전 임신 및 출산 사실 등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피의자의 과거사를 상세히 공개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이나 범인 검거 등의 공익적 목적이란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3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32호	동아닷컴	4월 8일	사회면	“이은혜 혼전임신 첫 결혼, 친정모가 그 아이 키워”…동네 이웃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33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9일	사회면	“이은혜 혼전임신 첫 결혼…친정엄마가 아이 키워”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34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8일	사회면	“이은혜 첫 결혼 ‘혼전임신’ 낳은 아이있다”…증언 나왔다	인터넷신문
제2022-435호	인터넷 이데일리	4월 8일	사회일반면	“이은혜, 혼전임신 첫 결혼…친정 모가 아이 키워” 이웃 증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36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4월 8일	뉴스면	“이은혜 혼전임신 첫 결혼, 친정모가 아이 키워” 이웃주민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37호	국제뉴스	4월 9일	사회면	‘계곡 살인’ 이은혜,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 모친이 키워”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38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4월 8일	-	“이은혜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22-439호	인터넷 팝콘뉴스	4월 8일	#공동체면	[MZ세대 핫키워드] 베풀며 살겠다던 소녀는 어쩌다 악녀가 됐나	인터넷신문
제2022-440호	인터넷 서울경제	4월 10일	사회면	“이은혜가 낳은 아이 모가 키우고 있어” 이웃 주민들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1호	이투데이	4월 10일	사회면	“이은혜가 낳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어” 이웃 주민들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2호	인터넷 해럴드경제	4월 9일	사회일반면	“이은혜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친정엄마가 키워”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3호	뉴스스(NEWS SIS)	4월 8일	사회면	“이은혜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이씨 엄마가 키워” 이웃 주민들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4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4월 8일	-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혜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이씨 엄마가 키워” 이웃 주민들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5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8일	사회면	“이은혜 아이 있어, 친정 엄마가 키울 것” 과거 이웃의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6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4월 9일	사회면	‘가평계곡 익사사건’ 이은혜 동네이웃 증언 “중학생 때부터 성매매”	인터넷신문
제2022-447호	e머니에스 (e money S)	4월 8일	-	“이은혜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엄마가 키운다” ...이웃주민 증언	인터넷신문
제2022-448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8일	사회면	“이은혜 첫 결혼서 낳은 아이, 이씨 엄마가 키워” 이웃 주민들 증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49호	언론사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2022년 04월 15일 뉴스&이슈면 「난 너의 주인님이야」 “사랑하고 행복하자” 가평계곡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가 서로에게 쓴 엽서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계곡 살인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과거 살았던 동네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증언을 인용, 이 여성이 처음 결혼한 남자와 이혼하고 그때 낳은 아이를 그녀의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보도 당시 공개수배 상태였다 하더라도, 혼전 임신 및 출산 사실 등 범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의 과거사를 상세히 공개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이나 범인 검거 등의 공익적 목적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44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50호	e머니에스 (e money S)	4월 15일	-	“안녕 웬수야, 난 너의 주인님”...‘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연애편지	인터넷신문
제2022-451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4월 15일	뉴스면	“333일 뒤 어떻게 지낼까?”...1년전 이은해·조현수가 나는 편지	인터넷신문
제2022-452호	K trendy NEWS	4월 15일	NEWS면	‘완전범죄의 꿈’ 이은해·조현수, 연애 편지 공개...경찰,검거팀 인원↑	인터넷신문
제2022-453호	SBS Biz	4월 15일	경제면	[핫이슈 키워드] 윤-안 전격 회동·한동훈 불꽃 청문회 예고·정호영 ‘아빠 찬스’	방송
제2022-454호	경기연합신문	4월 15일	사회면	이은해·조현수가 1년전에 남긴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난 너의 주인님”	인터넷신문
제2022-455호	뉴스1코리아	4월 15일	사회면	[뉴스1 PICK]이은해·조현수, 도주 전 나는 편지엔 “난 너의 주인님”	뉴스통신
제2022-456호	데일리안	4월 15일	사회면	“난 너의 주인님”...불륜 중이던 이은해·조현수의 연애편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57호	동아닷컴	4월 15일	사회면	이은혜-조현수, 서로에게 쓴 엽서엔 “번치 않고 사랑하고 행복하자”	인터넷신문
제2022-458호	디스패치뉴스	4월 15일	ALL면	'계곡살인' 후 여행간 이은혜·조현수 쓴 엽서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2-459호	마이데일리	4월 15일	-	'계곡 살인' 공개수배, 이은혜·조현수 1년 전 쓴 자필편지 보니...	인터넷신문
제2022-460호	살구뉴스	4월 15일	정치/ 사회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혜♥조현수, 소름돋는 '편지' 내용 “고맙다.. 행복하자..”	인터넷신문
제2022-461호	아이뉴스24 (inews24)	4월 15일	사회면	이은혜·조현수가 서로에게 쓴 연애편지...‘꽝낭꽝낭’	인터넷신문
제2022-462호	위키트리 (Wiktree)	4월 22일	사회면	“하고 싶다” “안 한 지 100만년” 이은혜와 조현수는 소름 끼칠 정도로 끈적했다(사진)	인터넷신문
제2022-463호	인사이트	4월 15일	정치· 사회면	“사랑하고 행복하자”...이은혜·조현수 집 우편함서 발견된 서로에게 쓴 '연애 편지'	인터넷신문
제2022-464호	인터넷 국민일보	4월 15일	-	“평범하게 살길” “사랑해”...이은혜·조현수 서로 쓴 엽서	인터넷신문
제2022-465호	인터넷 내외일보	4월 15일	뉴스면	이은혜, 조현수와 주고받은 '연애편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466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5일	사회면	이은혜, 남편 죽자 조현수에 “함께해줘 고마워”	인터넷신문
제2022-467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15일	사회면	내연남에게 다정했던 이은혜, 조현수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손편지	인터넷신문
제2022-468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4월 15일	-	사람 죽여놓고 러브레터? 이은혜 조현수 “333일 뒤에도 사랑해” 엽서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469호	인터넷 시사저널	4월 15일	사회면	남편 사망했는데...“행복하자” 미래 그렸던 이은혜와 조현수	인터넷신문
제2022-470호	인터넷 이데일리	4월 15일	사회면	“안녕 웬수야^^” 333일 만에 전달된 이은혜·조현수 연애편지엔	인터넷신문
제2022-471호	인터넷 중앙일보	4월 15일	사회면	“333일뒤 살아있다면”...이은혜, 조현수에 '너의주인' 쓴 엽서엔	인터넷신문
제2022-472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4월 15일	사회면	“안녕 웬수야^^ 난 너의 주인님이야”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낸 엽서보니	인터넷신문
제2022-473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15일	사회면	“안녕 웬수야^^ 난 너의 주인님이야” 이은혜가 조현수에게 보낸 엽서보니	인터넷신문
제2022-474호	인터넷 한국경제	4월 15일	사회면	“난 너의 주인님” “사랑하자”...이은혜·조현수가 쓴 엽서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75호	인터넷 한국일보	5월 2일	-	“윤석열, BTS RM 자필로 본 성격은...” 글씨 탐구하는 변호사	인터넷신문
제2022-47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5일	사회일반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연애편지 “네 딸이 아빠라 해주려나”	인터넷신문
제2022-477호	조선닷컴	4월 15일	사회면	이은해·조현수, 도주 전 보낸 엽서엔 “주인님” “시종님”	인터넷신문
제2022-478호	조이뉴스24 (joynews24)	4월 15일	연예면	[퇴근길이슈] 아이유 칸·박효신 분쟁·장용준 항소·이은해 연애편지	인터넷신문
제2022-479호	채널A	4월 15일		“시종님” “주인님”...이은해·조현수 서로에게 엽서	방송
제2022-480호	투데이 광주전남	4월 16일	뉴스면	‘범죄동맹 커플’ 이은해·조현수, 체포될 때도 ‘함께’ 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481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4월 15일		“나는 너의 주인..” 이은해 조현수 집에서 발견된 엽서 (+원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482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4월 17일 엔터면 「“돌XX냐? 가능하냐?” 불륜 의혹 사진 풀린 ‘징맨’ 아내, 대분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가 배우자의 외도 의혹을 공개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정황이 담긴 배우자와 제3자 간 카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표하였다. 비록 보도 이전에 이미 해당 트레이너가 SNS에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의 동의 없이 개인 간 통신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를 인용 보도한 기사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4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483호	e머니에스 (e money S)	4월 16일	-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저격... "공개 수배, 연락 달라"	인터넷신문
제2022-484호	sportschos un.com	4월 17일	연예면	"애 둘 키우며 바람 가능?" 황철순 아내, 외도 의혹에 "XXX" 발끈+가족사진 공개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485호	TV Daily (티브이데일리)	4월 16일	-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정황 폭로 "일반인 만나고 싶어"	인터넷신문
제2022-486호	국제뉴스	4월 15일	연예면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의심 카톡 공개 "공개수배한다"	인터넷신문
제2022-487호	나우뉴스	4월 16일	스포츠· 연예면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아내 외도 담긴 카톡 폭로 파문	인터넷신문
제2022-488호	뉴스1코리아	4월 16일	연예면	"일반인 만나고 싶다"...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의심 카톡 폭로	뉴스통신
제2022-489호	데일리스포츠 월드	4월 16일	연예면	'징맨' 황철순, 아내 저격 카톡 공개 "공개 수배, 연락달라"	인터넷신문
제2022-490호	디스패치뉴스	4월 15일	Issue면	"나 남자 소개 좀..." '징맨' 황철순이 찾고 있다는 아내 메시지 속 상대男	인터넷신문
제2022-491호	마이데일리	4월 17일	-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공개 저격→"XX냐? 헛소리 그만해" 반박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492호	머니그라운드	4월 18일	라이프면	'징맨' 황철순이 아내 외도 의심하며 공개했다가 삭제한 '카톡 내용'	인터넷신문
제2022-493호	살구뉴스	4월 16일	연예면	황철순 와이프 지연아 불륜 폭로..충격적인 카톡 내용 공개됐다(+사진)	인터넷신문
제2022-494호	오에스이엔 (OSEN)	4월 17일	연예면	"남자 소개해줘"..황철순, 아내 외도 정황 폭로→♥지연아 "돌아이나?" 반박[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495호	인사이트	4월 15일	엔터테인먼트 면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정황 담긴 '카톡' 메시지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496호	인터넷 금강일보	4월 17일	문화면	황철순 아내 외도 재조명..사실일까?	인터넷신문
제2022-497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4월 18일	-	'코빅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포착→공개저격...논란 일파만파	인터넷신문
제2022-498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4월 15일	엔터면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의심? "와이프랑 카톡, 공개 수배한다"	인터넷신문
제2022-499호	인터넷 한스경제	4월 17일	문화면	황철순, 아내 외도 의혹 저격... 아내, "애 둘 키우면서 바람 불가능" 반박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00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5일	연예/오락면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정황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2-501호	조선닷컴	4월 18일	연예면	"일반인 소개해줘"... 황철순 아내, 외도 의혹 일축 "오해 없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502호	조선비즈	4월 16일	연예면	"일반인 만나고 싶다"...'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의심 카톡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2-503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4월 17일	-	'징맨' 황철순, 아내 외도 폭로→지연아 "헛소리 그만" 반박	인터넷신문
제2022-504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4월 15일	NEWS PICK면	실시간 터진 황철순 와이프 '불륜' 충격적인 폭로 (+카톡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505호	한국미디어 뉴스통신	4월 15일	NC면	폭행파장 '징맨 황철순' 바람피려는 아내의 카톡대화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506호	헤럴드POP	4월 17일	방송면	[POP초점]"돌XX나? 헛소리 그만" 황철순 아내, 외도 의심 폭로에 정면 반박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07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4월 10일 Issue면 「"유명 가수에 마약 판매..." '가평 살인' 이은해 공범의 정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의 초상 및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인물의 초상과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운 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표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0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08호	경기연합신문	4월 4일	사회면	이은해·조현수 4개월 도피생활 '완벽' 지속 가능성은?	인터넷신문
제2022-509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3월 30일	-	'그알'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실시간 탈린 과거 방송 장면	인터넷신문
제2022-510호	살구뉴스	4월 22일	정치/ 사회면	'계곡 살인'이은해, 소름돋는 과거 정리(신상·집안·성형·불륜)...처벌 수위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11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3월 29일 Issue면 「“손깍지 끼더니 XX 만졌다” 숨진 공군 女 중사가 가해자에 당한 일(영상)」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공개됐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재연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상태를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12호	인사이트	3월 27일	엔터테인먼트면	“손깍지 꺼 OO 만지게 해”...어제자 '그알'에 나온故이예람 중사의 끔찍했던 성추행 피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13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3월 27일 핫이슈면 「“중랑경찰서가 여경만 승진시켜”...블라인드에 올라와 확산되고 있는 한탄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서울 중랑경찰서의 승진 체계가 여성 경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담긴 글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캡처하여 인용하였다. 설령 위 기사가 경찰 승진 체계를 비판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었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게시글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514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4월 18일 NEWSPICK면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할 때 좋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선호하는 성적 취향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하는가 하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51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4월 03일 핫이슈면 「“생일이니까 마음껏 즐겨”...여친이 불러준 여성들 섹시 댄스에 표정관리 실패한 남성 (영상)」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만의 인기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여성 2명을 불러 댄스파티를 열어줬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516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3월 15일 핫이슈면 「‘노출 룩북’ 조회 수 폭발하자 옷 입은 상태에서 속옷 벗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영상)」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유튜버가 ‘룩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속옷을 벗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과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517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웨어(postshare) 2022년 04월 20일 NEWSPICK면 「예전에 이은해랑 하룻밤 보냈던 남자들이 밝힌 내용들 (+공통점)」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와 과거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남성들이 등장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518호	언론사명	(주)문화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문화일보 2022년 04월 13일 사회면 「발령 석달차' ○○군 女공무원, 아파트 7층서 떨어져 중상」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하면서 자살미수자의 나이, 임용시기, 임용 당시 직렬, ○○군청 발령시기 및 근무 부서 등을 드러내 보도하였다. 이는 자살미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으로, 자살미수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1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19호	인터넷 동양일보	4월 7일	사회면	○○군 여성 공무원 아파트서 투신	인터넷신문
제2022-520호	인터넷 일간투데이	4월 8일	로컬면	충남 ○○군 30대 공무원 ... 아파트서 '투신'	인터넷신문
제2022-521호	뉴스채널1	4월 8일	사회면	○○군 30대 공무원 ... 아파트서 '투신'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522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22년 04월 12일 「서울남부지검서 6년 만에 또 초임검사 투신… 검찰, 진상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소속 현직 검사가 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보도하면서, 성(姓)과 나이, 근무 부서, 담당 업무, 출신 학교, 변호사 시험 합격 시기, 군복무 이력 등을 공개하였다.</p> <p>이는 자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것으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52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23호	한국일보	4월 13일	10면	서울남부지검서 6년 만에 초임검사 또 극단 선택… 검찰, 진상조사 착수	중앙일간지
제2022-524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12일	사회면	서울남부지검 청사서 검사 투신 사망(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52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12일	사회면	서울남부지검 청사서 초임 검사 투신 사망..檢, 진상조사 착수(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526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4월 12일	사회면	서울남부지검 청사서 초임 검사 투신 사망..檢, 진상조사 착수(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527호	인사이트	4월 16일	정치·사회면	지검 청사서 극단적 선택한 30살 초임 검사가 '나에게 보내기'로 남긴 마지막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2-528호	더팩트	4월 12일	사회면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숨진 채 발견…진상조사(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529호	대한일보	4월 12일	사회·문화면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극단적 선택...청사 10층서 투신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530호	포쓰저널 (4th journal)	4월 13일	사회면	서울남부지검에 무슨 일이..신참 검사 또 사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31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22년 04월 19일 사회면 「“동탄 고양이 살해범.. ‘동물판 N번방’ 행동대장이었다”」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동탄 지역 고양이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대당한 고양이의 모습을 게재하였다. 비록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대당한 고양이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3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32호	살구뉴스	4월 20일	동물뉴스면	동탄 고양이 학대범 신상 밝혀지자 충격적인 정체 밝혀졌다...청원 등장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33호	언론사명	(주)서울경제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2022년 04월 01일 사회면 「○○○○○○○○, 의정부시 금오동에 7번째 지점 열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34호	글로벌경제신문(GETNEWS)	4월 1일	사회·문화면	의정부 ○○○○○○○○, 경기 북부 지역 1일 개원..전국 총 7개 지점	인터넷신문
제2022-535호	매경닷컴	4월 1일	IT·과학면	의정부 ○○○○○○○○, 의정부시 금오동에 1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36호	인터넷금강일보	4월 3일	지역면	○○○○○○○○, 1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7번째 지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37호	인터넷스포츠경향	4월 1일	라이프면	의정부 ○○○○○○○○,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시 금오동에 1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38호	인터넷내외신문	4월 19일	오피니언면	○○○○○○○○ 개원, 부·울·경 지역의 족부 중점 정형외과로 자리매김할 것	인터넷신문
제2022-539호	스포츠동아	4월 11일	13면	[건강 올레길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임플란트와 잇몸치료 중점 진료” ○○○○○○○○○○ 신규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40호	인터넷스포츠동아	4월 16일	-	○○○○○○○○○○○ 개원, 임플란트 및 잇몸치료 중점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2-541호	인터넷의학신문	4월 15일	의원·병원면	부천 ○○○○○○○○ 개원 19주년 맞아	인터넷신문
제2022-542호	대한급식신문	4월 15일	건강&라이프면	개원 19주년 맞은 ○○○○○○○○, 관절·척추 중점 병원으로 도약	인터넷신문
제2022-543호	스포츠동아	4월 13일	13면	[건강 올레길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척추관절 전문 ○○○○○○○○○○ 개원 ‘과잉진료 없는 환자 맞춤 치료 제공할 것’	중앙일간지
제2022-544호	인터넷스포츠동아	4월 10일	-	○○○○○○○○○○○ 7일 개원 “과잉진료 없는 맞춤 치료 제공할 것”	인터넷신문
제2022-545호	인터넷광주드림	3월 25일	뉴스면	○○○○○○○○○ 300병상 규모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46호	뉴코리아저널	3월 25일	지역뉴스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 10년의 준비 끝에 300병상 규모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547호	인터넷뉴제주일보	3월 14일	경제면	○○○○ “과격하진 진료 환경·의료의 질 향상 최선”	인터넷신문
제2022-548호	대한일보	4월 30일	로컬뉴스면	○○○○○○○○○ 개원...질높은 의료 서비스 ‘청신호’	인터넷신문
제2022-549호	인디포커스	5월 1일	사회면	파주시, ○○○○○○○○ 개원, 의료 서비스 항상 기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50호	언론사명	중앙일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2년 04월 06일 사회면 「“○ ○ ○○…○○○ ○ ○○”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폭력적인 말을 인용, 기사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기사의 취지가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5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51호	뉴스시스 (NEWSIS)	4월 7일	연예면	“○○○ ○ ○○ 관계” 딸 초중고 6년간 성폭행한 아빠	뉴스통신
제2022-552호	인터넷 세계일보	4월 7일	사회면	“○ ○ ○○, ○ ○○ ○○○” 초등학교 딸 6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553호	인터넷 서울경제	4월 7일	사회면	“○ ○ ○○” ○ ○○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2-554호	인터넷 이데일리	4월 7일	사회일반면	“○ ○ ○○, ○ ○○”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의 끔찍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2-555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7일	사회일반면	“○○○ ○○○ ○○, 쉬는주 없음” 어린 딸 6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556호	인터넷 서울신문	4월 7일	사회면	“○○○ ○ ○○”...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의붓아빠	인터넷신문
제2022-557호	데일리안	4월 7일	사회면	“○○○ ○ ○○...○ ○ ○○” 초5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가 보낸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2-558호	디스패치뉴스	4월 4일	Issue면	“○ ○○, 쉬는 주 없음”...6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완벽한 아빠’의 문자	인터넷신문
제2022-559호	아이뉴스24 (inews24)	4월 7일	사회면	“○ ○○...○○○ ○ ○○” 딸 성폭행한 아빠가 보낸 카톡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560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내외경제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내외경제TV 2022년 05월 18일 생활·문화면 「김새론, 음주운전 논란에 엄마 나이까지 '재조명' 동승자는 누구?」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모친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모친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이 과거 방송에서 자신의 모친을 언급하며 초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그녀의 모친을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예인 자녀의 음주운전 논란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56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61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5월 20일	-	“집 나올 때마다..” 현재 재조명 중인 김새론 엄마 예능 발언	인터넷신문
제2022-562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5월 20일	-	김새론, 어린 나이에 데뷔→'음주운전'...엄마에 관심 쏠리는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2-563호	인터넷 천지일보	5월 22일	연예면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누구?...엄마 나이 '깜짝'	인터넷신문
제2022-564호	살구뉴스	5월 20일	연예면	김새론 엄마 누구길래..음주운전 논란에 연세대 루머, 직업·나이 재조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65호	언론사명	(주)엑스포츠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데일리스마트경제 2022년 05월 17일 연예·스포츠면 「조민아, 남편 폭력 암시 후 “꼭꼭 참은 아픔, 아들 지키려 이겨내”」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자녀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이후 아들과의 근황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녀 또한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계된 보도는 이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5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66호	sportschosun.com	5월 16일	연예면	조민아, 가정폭력 의심 되는 충격 상황 “목덜미 잡아 던져, 매일이 지옥”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2-567호	국제뉴스	5월 17일	연예면	조민아 가정폭력 암시글 이후 인스타 근황 “행복만 하자”	인터넷신문
제2022-568호	내외경제TV	5월 16일	생활·문화면	“매일이 지옥같아”...쥬얼리 조민아, 의미심장 글에 누리꾼 “무슨 일?”	인터넷신문
제2022-569호	뉴스1코리아	5월 17일	연예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꼭꼭 참아왔던 아픔, 아들 지켜줄 것”	뉴스통신
제2022-570호	뉴시스 (NEWSIS)	5월 16일	연예면	조민아, 가정폭력 의심 상황...“매일이 지옥 같아”(종합)	뉴스통신
제2022-571호	데일리스포츠월드	6월 7일	연예면	조민아, 남편과 파경 암시...“갑자기 가장이 됐다”	인터넷신문
제2022-572호	동아닷컴	5월 17일	연예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꼭꼭 참아왔던 아픔, 아들 지켜줄 것”	인터넷신문
제2022-573호	매일안전신문	5월 17일	종합뉴스면	조민아, 혹시 가정폭력 당한건가...“매일이 지옥”	인터넷신문
제2022-574호	서울뉴스통신	5월 17일	포토면	조민아 “살려줘”... 도대체 무슨 일	뉴스통신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75호	셀럽미디어	5월 16일	연예면	조민아, 남편에게 폭력 당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119·경찰 왔다”	인터넷신문
제2022-576호	스타뉴스 (star news)	5월 16일	엔터테인먼트면	조민아, ‘가정폭력 피해’ 이때부터? “남편 잘하자” 글 재조명[★NEWSing]	인터넷신문
제2022-577호	엑스포츠뉴스	5월 21일	국내연예면	“엄마가 해결해볼게” 조민아, ‘가정 폭력 암시’ 후 전한 육아 근황	인터넷신문
제2022-578호	이투데이	5월 16일	문화·라이프면	“매일이 지옥” 조민아, 가정폭력 의심 정황	인터넷신문
제2022-579호	인사이트	5월 16일	엔터테인먼트면	조민아, 가정폭력 피해 호소…“매일이 지옥같아, 살려줘”	인터넷신문
제2022-580호	인터넷 스포츠서울	5월 16일	연예면	조민아, 불화설 이어 가정폭력? “목덜미 잡아 집어던져, 매일이 지옥”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581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6월 2일	엔터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아이와 나의 안전과 행복에 집중할 것”	인터넷신문
제2022-582호	인터넷 한국경제	6월 7일	-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갑자기 가장 됐다”…결국 남편과 갈라서나 [TEN★]	인터넷신문
제2022-58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16일	생활/문화면	“매일이 지옥, 나 좀 살려줘”…‘쥬얼리’ 조민아 가정폭력 암시글	인터넷신문
제2022-584호	일간시사 매거진	5월 16일	엔터테인먼트면	조민아, 가정폭력 당했다 “목덜미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	인터넷신문
제2022-585호	일요신문	5월 16일	연예면	쥬얼리 조민아, 가정폭력 호소 “과호흡 쇼크로 119…매일이 지옥같아”	인터넷신문
제2022-586호	전북투데이	5월 17일	뉴스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꼭꼭 참아왔던 아픔, 아들 지켜줄 것”	인터넷신문
제2022-587호	조선닷컴	5월 16일	사회면	“매일 지옥, 살려줘” 조민아 폭력 암시글 올린날, 119 신고 현황엔…	인터넷신문
제2022-588호	조선비즈	5월 17일	연예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꼭꼭 참아왔던 아픔, 아들 지켜줄 것”	인터넷신문
제2022-589호	키즈맘	5월 16일	전체뉴스면	조민아, 가정폭력 있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정신 잃어”	인터넷신문
제2022-590호	텐아시아	6월 7일	드라마·예능면	‘가정폭력 암시’ 조민아 “갑자기 가장 됐다”…결국 남편과 갈라서나 [TEN★]	인터넷신문
제2022-591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5월 18일	-	“행복만 하자” 쥬얼리 출신 조민아, 가정폭력 피해 암시 후 근황	인터넷신문
제2022-592호	티비리포트	5월 16일	-	조민아, 가정폭력 당했다… “목덜미 잡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전문]	인터넷신문
제2022-593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5월 16일	NEWS PICK면	실시간 가정 폭, 행 논란 터져 난리 난 유명 연예인 (+인스타 댓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594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리서치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2년 04월 23일 NC면 「김수미아들, 서효림남편’ ‘정명호’ 화상돈 횡령혐의로 경찰수사」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자녀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의 배우자가 과거 방송에 출연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범죄 혐의 보도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그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계된 보도는 이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59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595호	sportschosun.com	5월 23일	연예면	‘남편피소’ 서효림, 폭풍성장한 딸 행동에 흐뭇.. ‘시모 김수미’는 얼마나 예블까	인터넷신문
제2022-596호	뉴스엔	5월 13일	-	서효림, 남편 횡령 혐의 피소 중 딸과 부산 여행 “오토도 타고 행복해”	인터넷신문
제2022-597호	데일리스포츠월드	4월 23일	연예면	‘김수미 아들’ 정명호, 화상돈으로 대북株 매입...횡령 혐의 피소	인터넷신문
제2022-598호	스타뉴스(star news)	5월 13일	엔터테인먼트면	서효림, 남편 횡령 피소 중 딸과 여행 “너와 함께라 행복해” [스타N★]	인터넷신문
제2022-599호	스타인뉴스	4월 23일	스타, 요즘면	김수미 아들 정명호, 화상돈 횡령 혐의 피소...화상돈으로 주식 매입	인터넷신문
제2022-600호	스포티비뉴스	5월 6일	TV·연예면	‘남편 횡령 피소’ 서효림, 시모 김수미 닮은 딸과 꽃밭 나들이	인터넷신문
제2022-601호	위키트리(Wikitree)	4월 23일	엔터면	김수미 아들이자 서효림 남편인 정명호.. ‘이 혐의’로 피소됐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02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14일	연예면	'남편 피소' 서효림, 명품 톰브라운 휘감고 딸과 여행... 밝은 근황 '눈길'	인터넷신문
제2022-603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4월 23일	연예면	'김수미·서효림♥' 정명호, 황령협의 피소	인터넷신문
제2022-604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5월 13일	엔터면	'남편 황령 피소' 서효림, 딸과 부산 여행... '임신' 전해빈 동반 '눈길'	인터넷신문
제2022-605호	인터넷 한국경제	5월 13일	-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황령 협의' 남편 없어도 잘사네 [TEN★]	인터넷신문
제2022-606호	일간지 매거진	4월 23일	엔터테인먼트면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 화산돈 황령협의 피소... 대북 관련주 등 매수	인터넷신문
제2022-607호	조선닷컴	5월 13일	연예면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남편 피소에도 딸과 력셔리 요트 여행 "수척해 보여"	인터넷신문
제2022-608호	텐아시아	5월 13일	연예가 화제면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황령 협의' 남편 없어도 잘사네 [TEN★]	인터넷신문
제2022-609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5월 13일	-	"정말 행복했다" 서효림, 남편 정명호 황령 협의에도 딸과 여행	인터넷신문
제2022-610호	헤럴드POP	5월 6일	방송면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남편 피소 후 밝은 근황 "700일 축하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11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오픈디스커스 2022년 05월 11일 Net.이슈면 「래퍼A, 몰카 찍어 공유...정준영과 다른 게 뭐냐」 던밀스 아내 충격 폭로」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아내가 SNS를 통해 '특정 가수가 몰카를 찍어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폭로자인 당사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의 배우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보도 당시 당사자의 SNS가 전체공개 상태였다 하더라도 폭로 이후 당사자 측에서 SNS를 통해 언론에 초상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12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5월 17일	NEWS PICK면	“뱃사공 반격 카드는..” 실시간 난리 난 이하늘 발언 수준 (+SNS)	인터넷신문
제2022-613호	한국미디어 뉴스통신	5월 12일	NC면	논란의 래퍼A 찾기, 단서나오는데 돌연 ‘던밀스아내’ SNS비공개 전환	인터넷신문
제2022-614호	K trendy NEWS	5월 11일	뉴스면	“래퍼A, 몰카 공유... 정준영과 다른 게 뭐지?” 던밀스 아내 폭로, 래퍼 A 이후 행동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15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5월 19일 정치면 「욕하는 시민 vs ‘킹 받은’ 이재명, 말싸움 붙은 영상…급속 확산 중」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과 후보자가 말싸움이 붙은 영상이 확산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해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 남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영상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어 이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에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남성의 초상을 그대로 드러 내지 않고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616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굿모닝충청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굿모닝충청 2022년 05월 06일 오피니언면 「《김두일의 브런치》 ○○○ ○○ ○의 '이상한 행적' (feat. 오세훈)」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법무부장관 자녀의 이른바 '스펙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민상을 받은 점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녀의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증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61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17호	e머니에스 (e money S)	5월 9일	-	우종학, 한동훈 딸 의혹에 "조국 딸보다 열배 이상 심각"	인터넷신문
제2022-618호	JTBC	5월 10일	16:40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한동훈 청문회 "개콘"?...손혜원 "바보 민주당, 또 당해"	방송
제2022-619호	K trendy NEWS	5월 8일	뉴스면	[you미디어] 한겨레,대필작가와 인터뷰... LA 엄마들 백악관 청원	인터넷신문
제2022-620호	국민뉴스	5월 8일	뉴스종합면	"○○○○의 이상한 행적..오세훈이 해명하라"	인터넷신문
제2022-621호	뉴스톱	5월 6일	팩트체크면	[팩트체크] 한동훈 딸은 정말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았나	인터넷신문
제2022-622호	매일노동뉴스	5월 9일	-	한동훈 딸 '○○○'와 ILO 협약의 상관관계	인터넷신문
제2022-623호	살구뉴스	5월 9일	정치/사회면	서울대 교수 충격 폭로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열배 이상 심각"	인터넷신문
제2022-624호	위키트리 (Wikitree)	5월 9일	정치면	폭발한 서울대 교수 "한동훈 딸 문제, 조국 딸 문제보다 10배는 심각" (feat. 이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25호	인터넷 브릿지 경제신문	5월 9일	뉴스면	조국 “한동훈의 뱀처럼 교묘한 해명… 언론은 반문 안해”	인터넷신문
제2022-626호	인터넷 파이낸스 투데이	5월 5일	뉴스일반면	한동훈에 대한 허위선동에 좌파인사와 언론, SNS등 총동원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2-627호	인터넷뉴스 신문고	5월 9일	사회면	서울대 우종학 교수, 한동훈 딸 논문대필에 “누가 피해자인가?” 맹공	인터넷신문
제2022-628호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10일	경제면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한동훈 딸 국가부채 논문 분석	인터넷신문
제2022-629호	조세일보	5월 9일	정치사회면	서울대 우종학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열배 이상 심각”	인터넷신문
제2022-630호	폴리뉴스 (polinews)	5월 9일	정치면	[청문회] 한동훈 '자녀 스펙' 의혹에 “수준높은 것들 아냐…입시에 사용할 계획 없다”	인터넷신문
제2022-631호	프레스리안 (Pressian)	5월 6일	-	'윤석열 정부'의 위선적 이중성, '공무원 고용세습'은 괜찮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32호	언론사명	(주)코리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텐아시아 2022년 05월 08일 드라마·예능면 「[TEN피플] 최지우, 불륜→파경 소식까지 터졌다…남편 향한 관심에 때어진 몸살」 제하 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사생활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여배우가 맡은 드라마 속 배역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녀의 배우자가 유흥업소 출신이고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방송 내용을 인용하였다. 비록 해당 여배우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녀의 배우자 또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과거 행적 내지 외도 관련 기사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기사는 사인인 여배우 배우자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63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33호	인터넷 한국경제	5월 8일	-	[TEN피플] 최지우, 불륜→파경 소식까지 터졌다...남편 향한 관심에 때아닌 몸살	인터넷신문
제2022-634호	살구뉴스	5월 9일	연예면	최지우, 불륜→파경 이혼·소식까지 터졌다... 남편 향한 관심에 몸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35호	언론사명	(주)새전북신문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새전북신문 2022년 05월 12일 10면 「이은혜 사건이 알려주는 것」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당사자의 사생활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소위 '계곡 살인 사건'의 여성 피고인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에 대해 다루면서, 이 피고인이 19세 때 혼전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를 기르지 않았고 한꺼번에 세 명의 남자와 동거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칼럼 성격을 띠는 기사의 특성상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 및 평가 부분은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로 언급한 내용 중 혼전임신 및 출산, 동거 사실 등 당사자의 내밀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6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36호	인터넷 새전북신문	5월 11일	-	[온누리]이은혜 사건이 알려주는 것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37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리서치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2년 05월 12일 NC면 「대한민국에서 벌레 죽이듯 사람 죽이는 '중국인'...중국에서 마약사범 사형」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을 이유로 편견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서울 구로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벌레 죽이듯 사람 죽이는 '중국인' 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거나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인용하였다. 비록 해당 살인 사건의 실제 범인이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내지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그가 중국 국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고, 네티즌들의 반응 중 중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위주로 선별, 게재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638호	언론사명	(주)데일리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데일리안 2022년 05월 21일 세계면 「"문란한 성생활이 원인?"...男끼리 성관계한 후, 치명적인 전염병 걸렸다」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 후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발병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실제로 동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내지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동성 간의 성관계 내지 성생활은 그 자체로 문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63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39호	매경닷컴	5월 20일	국제면	“문란한 성생활, 치명률 최대 10%”...유럽 공포에 빠뜨린 이 병의 정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40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4월 27일 「“바리칸으로 음모 밀고 식고문까지”...해병대 연평부대 가혹행위 전말」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는 가학적인 범행 수법이 필요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해당 내용이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해당 범행 수법 공개로 인한 모방의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4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41호	한국뉴스 투데이	4월 25일	SOCIAL 면	해병대 또 가혹행위...연평부대서 성고문·식고문·구타 발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42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5월 15일 지방면 「[사건의 재구성] “마조히스트여서 때렸다”…대학서 만난 남친 살인한 20대」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범행 수법이 필요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대학생이 연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일부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4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43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16일	뉴스면	“마조히스트였다”…남친 고문·살인한 부산 여대생, ‘10년 감형’	인터넷신문
제2022-644호	데일리안	5월 27일	사회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 가스라이팅·흉기 살해 ‘여대생’…왜 ‘특수상해’ 무죄?	인터넷신문
제2022-645호	디스패치뉴스	5월 17일	-	남친 고문·폭행해 사망하게 한 여대생이 ‘10년’ 감형 받은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2-646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17일	사회면	“남친은 마조히스트”…고문→살해한 여대생이 ‘10년 감형’ 받은 이유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647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포스트웨어(postshare) 2022년 05월 06일 NEWSPICK면 「“여사친이 저한테 임신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덧글)」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네티즌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성과 관련된 표현이 담긴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648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2년 05월 04일 사회면 「죽어서도 저주”……○○FC 유소년 선수,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유소년 축구팀 소속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팀 코치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공론화됐을 당시 소속팀 입장문에 자살자의 성명이 공표됐다 하더라도, 이후 유족의 실명 비공개 요청으로 소속팀이 이를 반영한 수정 입장문을 재발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뒤에 작성된 위 기사는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여 자살자의 실명을 공표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4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49호	스포츠 투데이M	5월 4일	스포츠면	○○FC 유스 코치, 소속 선수 극단적 선택 관련 참고인 조사	인터넷신문
제2022-650호	살구뉴스	5월 4일	정치/ 사회면	○○ FC 유소년 사망.. 충격적인 유서 내용(+국민청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51호	조선닷컴	5월 4일	스포츠타면	OOFC, 키포에 앞서 묵념	인터넷신문
제2022-652호	오에스이엔 (OSEN)	5월 4일	스포츠타면	OOFC, 키포에 앞서 묵념	인터넷신문
제2022-653호	인터넷 국정일보	5월 5일	지역면	OOFC, OOFC.. 키포에 앞서 묵념..양팀을 포함 경기장에 있는 모두 짧은 시간 묵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54호	언론사명	이데일리(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이데일리 2022년 05월 20일 사회일반면 「(영상)“안 비켜?” 울산의 조폭 추종 세력…행인 집단폭행」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울산에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 행인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비록 해당 영상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비식별 처리를 미흡하게 하여 영상 속 가학적인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5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55호	KBS	5월 19일	09:50『930뉴스(울산)』프로그램	울산 도심서 집단폭행…경찰, 조폭 추종세력 5명 검거	방송
제2022-656호	뉴스시스 (NEWSIS)	5월 18일	지방면	“왜 안 비켜” 행인들 집단폭행…조폭 추종세력 5명 검거	뉴스통신
제2022-657호	데일리안	5월 19일	사회면	어깨 부딪치고 “길 비켜라”, 시비 붙자 집단 폭행…조폭 흉내 5명 검거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658호	부산닷컴	5월 18일	-	[영상] 울산 도심 한복판서 무자비한 집단폭행…조폭 추종세력 등 5명 검거	인터넷신문
제2022-659호	인사이트	5월 18일	핫이슈면	울산 도심 한복판서 시민 집단폭행…경찰, 폭력조직 추종세력 5명 검거 (영상)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60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19일	사회면	[영상] 쓰러진 행인 머리 짓밟고 발길질...울산 조폭 '추종' 일당 만행	인터넷신문
제2022-661호	조선닷컴	5월 19일	사회면	쓰러진 행인 머리 짓밟고 발로 차고... 울산 집단폭행 5명 잡고보니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62호	언론사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유한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허핑턴포스트코리아(The Huffingtonpost Korea) 2022년 05월 03일 뉴스&이슈면 「만지는 거 빼고 다했다」 “몸매 X된다 X발” 에스파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고등학교 의 사과문」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공연을 위해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걸그룹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여과 없이 공표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 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6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63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5월 19일	-	'에스파 성.희.롱' 논란 파문 ○○고 학생 오늘 맞이한 레전드 결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64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5월 13일 사회면 「'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중국인 남성 구속기로」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독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서울 구로구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공표해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665호	언론사명	(주)강원도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27일 지역면 「'건강 선물해 건강한 원주 만들기 앞장」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66호	강원도민일보	4월 27일	21면	“건강 선물해 건강한 원주 만들기 앞장”	지역일간지
제2022-667호	경남도민신문	4월 25일	12면	창원 ○○○○○○ 암환자 간담회 실시	지역일간지
제2022-668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4월 24일	뉴스면	창원 ○○○○○○ 암환자 간담회 실시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669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 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5월 17일 사회면 「“곤지암 저수지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소름 끼친 사연」 제하의 보도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곤지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여성 시체를 발견했다는 표현으로 본문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6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70호	디스패치뉴스	5월 17일	-	“곤지암 저수지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소름 끼친 사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71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22년 06월 10일 「대구 방화범, 법원 옆에 혼자 살며 소송만 매달렸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구 범무빌딩 방화사건 용의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가 사망 전 거주했던 집의 내부 모습을 촬영하여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방화 용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행의 동기나 그가 처해 있던 주변 사정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거주 공간의 내부를 촬영하여 게재한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인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7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72호	연합뉴스	6월 10일	최신 기사면	방화범 천씨, 월세 20만원 살면서 6억8천만원 아파트시행사 투자	뉴스통신
제2022-673호	매경닷컴	6월 10일	-	방화범 천씨, 월세 20만원 살면서 6억8천만원 아파트시행사 투자	인터넷신문
제2022-674호	인터넷 대구신문	6월 12일	사회면	대구 법무빌딩 방화범, 소송 위해 거쳐 마련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75호	언론사명	(주)뉴스시스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2년 06월 04일 수도권면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일부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7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76호	e머니에스 (e money S)	6월 4일	-	유튜브서 “참교육하는 법” 검색 후…전여친 잔혹 살해한 인천 20대 男	인터넷신문
제2022-677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6월 4일	이슈면	‘살려줘’ 애원하는 전 여친 10시간 고문·살해한 20대…‘복수하는 법’ 찾아봤다	인터넷신문
제2022-678호	뉴스1코리아	6월 4일	사회면	유튜브서 “참교육하는 법” 검색 후…전여친 잔혹 살해한 인천 20대 男	뉴스통신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79호	데일리안	6월 4일	사회면	'전 여친 참교육 하는법' 검색 후 잔혹 살해 저지른 20대男	인터넷신문
제2022-680호	디스패치뉴스	6월 2일	-	인천서 전 남친에게 흥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20대...유족 "도와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22-681호	마이데일리	6월 5일	-	"살려줘"... 애원하는 전 여친 10시간 동안 50차례 찔러 고문·살해한 20대	인터넷신문
제2022-682호	인터넷 국민일보	6월 4일	시사면	전 여친 살인 20대, 유튜브에 '참교육하는 법' 검색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683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4일	사회면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2-684호	평범한 미디어	6월 5일	일반면	전여친 칼로 '50번' 찔러 살해한 남성... "가해자가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인터넷신문
제2022-685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6월 4일	-	"참교육하는 법"까지 검색...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자 측이 탄원서 작성을 호소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686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6월 12일 라이프면 「불법 주차에 '문자' 보냈더니... "경찰이 가스총 쏠 때까지 할 것" 황당 협박」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불법 주차 차량 주인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링크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 원문을 노출한 것은 그 사실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욕설 등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687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6월 13일 TV면 「성룡도 붙났다...中 식당서 남성 7명이 여성 집단 구타, 이유는?」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부 여성 손님들에 대한 한 무리 남성들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재하였다. 비록 해당 영상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데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비식별 처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688호	언론사명	(주)한경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경제 2022년 05월 25일 IT·과학면 「○○○○○○○○○ 개원 “서부산권역 척추건강 책임지겠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6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89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5월 25일	-	○○○○○○○, 서부산 지역에 병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690호	MTN(엠티엔)	5월 25일	증권면	○○○○○○○○○ 개원... 7개 진료과·60병상 규모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691호	REAL FOODS	5월 25일	Play면	○○○○○○○○○, 서부산 하단동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692호	글로벌경제신문 (GETNEWS)	5월 25일	사회·문화면	○○○○○○○○○, 서부산 하단동에 5월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693호	농업경제신문	5월 25일	경제면	○○○○○○○○○, 25일 개원...7개 진료과 60병상 규모	인터넷신문
제2022-694호	뉴스1코리아	5월 25일	산업면	○○○○○○○○○ 개원...“서부산 지역 척추건강 책임진다”	뉴스통신
제2022-695호	뉴시스 (NEWSIS)	5월 25일	사회면	○○○○○○○○○ 25일 개원...“서부산 척추건강 책임”	뉴스통신
제2022-696호	로이슈	5월 25일	산업면	○○○○○○○○○, 서부산에 25일 개원...“서부산 척추 건강 책임질 것”	인터넷신문
제2022-697호	매경닷컴	5월 25일	IT 과학면	○○○○○○○○○, 서부산 하단동에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698호	매경헬스	5월 25일	뉴스면	부산 사하구 ○○○○○○ 개원 “한·양방 협진 의료 시행”	인터넷신문
제2022-699호	백세시대	5월 26일	건강·생활면	자생의료재단, 서부산 권역에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0호	브라보마이 라이프	5월 25일	헬스면	○○○○○○○○○, 서부산 하단동서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701호	인터넷 금융경제신문	5월 25일	생활면	○○○○○○○○○, 서부산 하단동에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2호	인터넷 내일신문	5월 25일	사회면	○○○○○○○○○, 서부산 하단동에 5월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3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5월 25일	소비자 생활면	○○의료재단, 부산 사하구에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4호	인터넷 로컬 (LOCAL) 세계	5월 25일	라이프면	○○○○○○○○○, 서부산 하단동에 5월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5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 뉴스	5월 25일	-	60병상 규모 ○○○○○○ 개원,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706호	인터넷 서울경제	5월 26일	사회면	○○○○○○○○○, 서부산 하단동에 개원...7개 진료과·60병상 규모	인터넷신문
제2022-707호	인터넷 세계일보	5월 25일	문화면	○○○○○○○, 부산 서부지역에도 들어선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08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5월 25일	-	서부산 지역의 척추 건강,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09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5월 25일	-	○○○○○○○○, 서부산 하단동에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0호	인터넷 시민일보	5월 25일	경제면	○○○○○○○○, 서부산 하단동에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1호	인터넷 이코노미리뷰	5월 25일	바이오면	○○○○○○○○, 서부산 하단동서 개원·척추관절 치료 선도	인터넷신문
제2022-71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5월 25일	-	60병상 규모 ○○○○○○ 개원,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713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25일	종합면	○○○○○○○○, 서부산 하단동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4호	인터넷 후생신보	5월 25일	-	○○○○○○ 서부산 진출·25일 진료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715호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5월 26일	-	○○○○○○○○, 25일 서부산 하단동에 '등지'	인터넷신문
제2022-716호	직설	5월 27일	제약· 바이오면	○○○○○○○○, 서부산 하단동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7호	헬스인뉴스	5월 25일	보건· 의료면	○○○○○○○○, 서부산 하단동에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8호	헬스조선	5월 25일	-	[의료계 소식] ○○○○○○○○, 서부산 하단동에 5월 25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719호	e글로벌 이코노믹	6월 2일	유통 경제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20호	글로벌경제신문 (GETNEWS)	6월 2일	사회· 문화면	○○○○○○○○, 서울 동남권 비수술 척추치료 책임진다	인터넷신문
제2022-721호	농업경제신문	6월 2일	경제면	○○○○○○○○,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22호	뉴스1코리아	6월 2일	산업면	○○○○○○○○,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뉴스통신
제2022-723호	뉴시스 (NEWSIS)	6월 2일	사회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뉴스통신
제2022-724호	로이슈	6월 2일	법조 · 사회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25호	메디컬월드 뉴스	6월 2일	메디컬 뉴스면	[6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 ○○○, ○○○○, ○○○○○, ○○○○○○○○ 등 소식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26호	아시아경제 닷컴	6월 2일	사회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27호	인터넷 금융경제신문	6월 2일	생활면	“서울 동남권 비수술 척추치료, ○○이 책임진다”	인터넷신문
제2022-728호	인터넷 로컬(LOCAL) 세계	6월 2일	경제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29호	인터넷 문화일보	6월 2일	사회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0호	인터넷 부산파이낸셜 뉴스	6월 2일	-	○○○○○○○○○, 가든파이브로 확장이전 진료 개시	인터넷신문
제2022-731호	인터넷 서울경제	6월 2일	사회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2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6월 2일	-	“서울 동남권 비수술 척추치료 메카로”...○○○○○○○○○,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3호	인터넷 스포츠동아	6월 9일	-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뉴스통신
제2022-734호	인터넷 아주경제	6월 2일	-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5호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6월 2일	바이오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6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2일	-	○○○○○○○○○, 가든파이브로 확장이전 진료 개시	인터넷신문
제2022-737호	전자신문 인터넷	6월 2일	전국면	○○○○○○○○○,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확장 이전	인터넷신문
제2022-738호	메디파나뉴스	5월 25일	전체기사면	“우리아이 언제크나요?” ○○○○, 성장클리닉 운영	인터넷신문
제2022-739호	사이언스엠디	5월 24일	병원/의료면	○○○○, 성장클리닉 운영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740호	동아일보	5월 26일	D01면	서울 유일의 이비인후과병원... 원스톱 진료로 환자 편의 높였다	인터넷신문
제2022-741호	동아닷컴	5월 26일	IT/ 의학면	서울 유일의 이비인후과병원... 원스톱 진료로 환자 편의 높였다	인터넷신문
제2022-742호	비즈니스	5월 26일	-	서울 유일의 이비인후과병원... 원스톱 진료로 환자 편의 높였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43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6월 10일 정치·사회면 「파이프·돌멩이 들고 정상 운행 차량 위협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사의 제목에서 거론하고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p> <p>비록 위 기사의 본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며 현재의 파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기사의 제목에서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744호	언론사명	(주)매일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22년 07월 08일 정치면 「개딸들 공격에…졸지에 ‘아동 성추행범’ 된 박지현 “법적 조치, 용서없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아이에게 입으로 과자를 전달하는 영상을 두고 자신을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동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추행’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인(私人)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아동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p> <p>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74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45호	대전일보닷컴	7월 8일	뉴스면	“과자 뽀빠, 아동 성추행” 개딸 공격에... 박지현 “폭력적 팬덤, 용서 못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46호	언론사명	(주)소셜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위키트리(Wikitree) 2022년 07월 11일 엔터면 「너무너무 충격적이다...지연수와 3시간 통화 후 드러난 ‘진실’ (영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자녀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방송인 지연수 씨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에 관하여 거짓의혹을 제기한 유명 유튜버의 주장을 인용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인물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가 이른바 ‘거짓말 의혹’을 검증하는 목적의 보도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4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47호	스타뉴스 (star news)	7월 11일	엔터테인먼트 면	지연수, ‘자본주의학교’ 거짓 방송? “사실무근..폭로자와 맞고소 中”[공식]	인터넷신문
제2022-748호	스포츠Q	7월 12일	엔터테인먼트 면	“맞고소 상태?” 지연수, 거짓방송 의혹 뒤길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49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7월 18일 「'극단적 선택..' 현재 난리 난 던밀스 부부, 뱃사공 충격 사태 (+인스타)」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아내가 SNS를 통해 '특정 가수가 몰카를 찍어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이후 악플 피해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폭로 당시 당사자의 SNS가 전체공개 상태였고 배우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고, 폭로 이후 당사자 측에서 SNS를 통해 언론에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750호	언론사명	(주)금강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금강일보 2022년 07월 12일 사회면 「가양역 실종 사건, 가족 2차 피해 호소」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서울 지하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한 수배 전단 속 가족의 전화번호로 감당하기 힘든 장난이 이어져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전화번호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실종 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위 기사 역시 번호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7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51호	시선뉴스	7월 10일	인포그래픽면	한 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키워드]	인터넷신문
제2022-752호	오픈디스커스	7월 9일	전체면	“남친 있냐” “언니가 범인이죠?”...가양역 실종 가족, 악성 문자 피해 호소	인터넷신문
제2022-753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10일	-	사라졌는데 가출인?..실종자 매년 증가해도 수사도 못하는 경찰	인터넷신문
제2022-754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9일	-	애먼 여종업원 목숨까지 뺏어...2천명분 마약, 어디서 왔나[사사건건]	인터넷신문
제2022-755호	인터넷 천지일보	7월 12일	사회면	가양역 실종 20대 女 행방 ‘오리무중’... 가족 악성문자에 ‘고통’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56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경기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경기일보 2022년 07월 06일 정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원 빈소 찾아 조문」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인 망자의 사적 사항이 상세히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직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나이, 소속 부서, 사인(○○○)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이는 사인(私人)인 망자의 신상 정보 및 병력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5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57호	경기일보	7월 7일	종합02면	김동연 경기지사, 북부청사 직원 빈소 조문	지역일간지
제2022-758호	인터넷 경기일보	7월 6일	정치면	경기도 공직자 마지막길 함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터넷신문
제2022-759호	경인일보	7월 7일	종합03면	道공직자 마지막길 함께한 김지사	지역일간지

의결번호	제2022-760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인천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인천일보 2022년 07월 11일 사회면 「인천 석남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여성 사망」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사건 현장인 해당 주택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사적인 거주 공간인 주택 내부 모습 사진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761호	언론사명	(주)미디어인그램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오피디스커스 2022년 07월 07일 정치사회면 「“피해자, 사실 악질이었다”...안동 20대 칼부림 사건 CCTV ‘시골’」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잔인한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삽입하여 당시 상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비식별조치가 불충분하여 폭력과정에서 사망자의 선혈이 표출되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을 삽입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6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62호	더데이즈	7월 7일	정치사회면	안동 칼부림 영상 첨부 충격적인 사실 + 옴팔	인터넷신문
제2022-763호	살구뉴스	7월 7일	정치/사회면	안동 칼부림 사건 충격적인 진실..CCTV 영상에 '신상·인스타' 확산(+원본)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764호	언론사명	(주)광주일보사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광주일보 2022년 07월 06일 06면 「경찰 7명 있었는데 진압은커녕 112 신고」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화살총을 이용해 파출소를 습격했다가 검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인 ‘화살총’의 구조, 구입 및 개조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범행도구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구입 방법 및 가격, 발사 방식,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6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65호	인터넷 광주일보	7월 5일	사회면	[사건 인사이트] ‘화살총’ 든 20대 습격에 병 들린 여수 봉산파출소	인터넷신문
제2022-766호	광주매일신문	7월 6일	사회 06면	파출소서 화살총 쏜 20대…“은행 털려고”	지역일간지
제2022-767호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7월 5일	사회면	파출소서 화살총 쏜 20대…“은행 털려고”	인터넷신문
제2022-768호	마이데일리	7월 6일	-	파출소에서 화살총 쏜 복면 20대… “은행 털기 전 모의 범행”	인터넷신문
제2022-769호	매경닷컴	7월 5일	사회면	“은행 털려고”...파출소서 화살총 쏜 20대, 범행 수법도 대담	인터넷신문
제2022-770호	아시아 경제닷컴	7월 7일	사회면	은행 털기 위해 시험 삼아 파출소에 화살총 쏘고 달아난 20대 검찰 송치	인터넷신문
제2022-771호	연합뉴스	7월 5일	-	“은행 털려고”...파출소서 화살총 쏜 20대, 범행 수법도 대담	뉴스통신
제2022-772호	인사이트	7월 6일	-	“은행 털기 전 연습이었다”...파출소서 화살총 쏘 범인이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22-773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5일	-	“은행털기 전 연습” 파출소 ‘화살총’ 괴한 황당 답변	인터넷신문
제2022-774호	인터넷 서울경제	7월 6일	사회면	“은행 털기 전 시험삼아”...한밤중 파출소에 화살총 쏜 황당이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75호	인터넷 서울신문	7월 5일	사회면	파출소서 화살총 쏜 20대 '은행 털려고' 사전 테스트	인터넷신문
제2022-776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5일	사회면	"은행털기 전 시험삼아 쏘다"...파출소 화살총 습격사건 전말	인터넷신문
제2022-777호	조선닷컴	7월 5일	사회면	파출소에서 화살총 쏜 복면 20대... "은행 털기 전 모의 범행"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778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7월 20일 SNSPICK면 「"니들 마누라가.." 실시간 난리 난 동탄 헬스 트레이너 폭로 글 내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경기도 동탄 지역의 한 헬스 트레이너가 기혼 여성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779호	언론사명	(주)서울신문사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대상보도	서울신문 2022년 07월 20일 9면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女하사 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속 부대(중대), 계급, 나이, 임관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7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780호	e머니에스 (e money S)	7월 19일	정치/ 사회면	'고 이예람 중사' 소속 부대에서 여군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81호	OM뉴스 (옴부즈맨뉴스)	7월 19일	뉴스면	故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공군20전투비행단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82호	경기연합신문	7월 19일	사회면	故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21세 여간부 또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83호	금강일보	7월 20일	사회06면	故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에서 또...	지역일간지
제2022-784호	인터넷 금강일보	7월 19일	사회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충격 여전한데...	인터넷신문
제2022-785호	뉴스1코리아	7월 20일	정치면	공군 20비행단, 연이은 '사고'... 폐쇄적 부서관 문화 때문?	뉴스통신
제2022-786호	더퍼블릭	7월 20일	SOCIETY면	공군 20비행단, 또 여군 사망 사건... "성추행 연관이면 부대해체 수준 대책 필요"	인터넷신문
제2022-787호	라이브엔	7월 19일	-	공군 부대 여군 사망 군 당국 수사 착수	인터넷신문
제2022-788호	문화일보	7월 19일	사회10면	故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여군 또 숨진채 발견	중앙일간지
제2022-789호	인터넷 문화일보	7월 19일	-	故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여군 또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0호	부산닷컴	7월 19일	종합면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부대에서 또 여성 간부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1호	인터넷 강원일보	7월 19일	사회면	성추행 당한 뒤 숨진 故이예람 중사 부대에서 여군 하사 또 숨진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2호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9일	-	고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에서 여군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3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20일	정치면	공군 20비행단, 잇단 '극단적 사고'... 부서관 특유의 군기·문화 원인일까	인터넷신문
제2022-794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7월 20일	정치면	공군 20비행단, 잇단 '극단적 사고'... 부서관 특유의 군기·문화 원인일까	인터넷신문
제2022-795호	중도일보	7월 19일	사회06면	공군부대에서 또 여군 숨진채 발견	지역일간지
제2022-796호	지디넷코리아	7월 19일	-	故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7호	충청뉴스라인	7월 19일	뉴스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숨진 채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798호	쿠키뉴스	7월 19일	정치면	故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확인 중"	인터넷신문
제2022-799호	한국농업신문	7월 19일	-	공군 부대 여군 사망 21살 하사, 유서는 찾지 못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00호	언론사명	(주)뉴스데일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데일리 2022년 06월 29일 사회면 「“체험학습 간다더니” 조유나양 가족 추정 시신 3구 발견..마지막 행적 29일 만에 실종 승용차 인양」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인 망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과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계층에 해당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였다. 설령 해당 사실이 과거부터 이들이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살자의 개인적 사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망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0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01호	데일리매거진	7월 1일	Satirical cartoon면	[데일리-경제만평] 조유나양 가족 경제적 어려움,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무게 실려	인터넷신문
제2022-802호	데일리안	6월 29일	사회면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조양 부모 ‘루나 코인’ 검색	인터넷신문
제2022-803호	매경닷컴	6월 29일	사회면	“체험학습 간다더니” 조유나양 가족 추정 시신 3구 발견(종합2보)	인터넷신문
제2022-804호	부산닷컴	6월 30일	-	[속보] 숨진 조유나 양 가족 1차 부검결과 ‘사인 불명’	인터넷신문
제2022-805호	세계일보	6월 30일	-	조양 부모, 1억대 금융 채무... 포털서 ‘추락’ ‘물때’도 검색	중앙일간지
제2022-806호	인터넷 세계일보	6월 30일	사회면	조양 부모, 1억대 금융 채무... 포털서 ‘추락’ ‘물때’도 검색	인터넷신문
제2022-807호	스카이데일리닷컴(skydaily)	6월 30일	사회면	‘조유나양 가족 사건’에 박지현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나”	인터넷신문
제2022-808호	연합뉴스	6월 30일	최신기사면	조유나양 가족 시신은 찾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	뉴스통신
제2022-809호	인터넷 강원일보	6월 30일	사회면	조유나양 가족 부검 결과 ‘사인 불명’...차량 기어봉 위치·안전벨트 상태 의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10호	인터넷 서울신문	6월 29일	사회면	끝내 주검으로 조유나양 엄마 시신 확인...‘수면제’ 검색, 차량서 시신 3구 발견(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811호	인터넷 시사저널	6월 30일	사회면	조유나양 일가족 ‘사인 불명’...“익사 가능성 배제 못해”	인터넷신문
제2022-812호	인터넷 이데일리	6월 30일	사회일반면	“물때” “수심” “추락”...유나양父, 실종 전까지 검색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813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6월 29일	사회면	조유나 양 일가족 추정 시신 발견...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인터넷신문
제2022-81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6월 30일	사회일반면	1년간 무직, ‘루나’ 투자 실패...유나양 가족의 풀리지 않은 의문점	인터넷신문
제2022-815호	일요신문	7월 4일	사회70면	코인 수면제 그리고 변속기 ‘p’	주간지
제2022-816호	일요신문	7월 1일	사회면	‘정황’만으로 단정하기엔...조유나 양 일가족 사망 미스터리	인터넷신문
제2022-817호	전남매일	6월 30일	07면	‘일가족 변사체로’ 비극... ‘루나 코인’ 투자 실패 때문?	인터넷신문
제2022-818호	한국NGO신문	6월 30일	인권· 교육면	조유나 양 끝내 사망...시민사회, “자녀 생명 부모가 강제로 빼앗을 권리 없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19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중앙일간지
대상보도	한국일보 2022년 07월 14일 10면 「“물이 찼다”... 시속 35km로 바다 돌진 유나양 가족 3명 시신서 수면제 검출」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위 기사는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자살 실행 당시의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1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20호	경기연합신문	7월 13일	사회면	블랙박스에 담긴 조유나양 가족의 안타까운 마지막 대화..	인터넷신문
제2022-821호	인사이트	7월 14일	-	“이제 물이 찼다”...블랙박스에 남은 조유나양 부모의 마지막 대화	인터넷신문
제2022-822호	인터넷 시사뉴스	7월 13일	사회면	조유나양 가족 차량 블랙박스 분석...“이제 물이 찼다” 대화 이후 바다로 돌진	인터넷신문
제2022-823호	인터넷 아주경제	7월 13일	-	완도 실종 일가족 부검서 수면제 검출... 극단적 선택에 무게	인터넷신문
제2022-824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14일	사회면	조유나양 일가족 바닷속으로 차 몰기 전 마지막 말 “이제 물 찼다”	인터넷신문
제2022-825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7월 14일	사회면	조유나양 일가족 바닷속으로 차 몰기 전 마지막 말 “이제 물 찼다”	인터넷신문
제2022-826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14일	-	조유나 양 가족차량 블랙박스 복원...“이제 물 찼다” 극단선택	인터넷신문
제2022-827호	조선일보	7월 14일	사회12면	“이제 물 찼다” 유나양 부모 마지막 대화	중앙일간지
제2022-828호	조선닷컴	7월 14일	사회면	“이제 물 찼다” 유나양 부모 마지막 대화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29호	언론사명	(주)더팩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팩트 2022년 06월 29일 전국면 「[속보] 루나코인 비극...‘완도 실종’ 유나양 아버지 아우디서 3명 발견」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가상화폐인 루나 코인 투자 실패를 자살의 동기로 단정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겐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30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6월 29일	금융· 증권면	‘루나가 뭐길래’...일가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아	인터넷신문
제2022-831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6월 29일	뉴스& 이슈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유나양 부모는 마지막 날까지 ‘루나 코인’을 검색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32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22년 07월 11일 정치·사회·글로벌면 「“눈깔 뽑고 XX통 보게” “이재명 해코지만 해봐라”...비명계 향한 문자폭탄」제하의 기 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국회의원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보도하면 서, 해당 표현을 여과 없이 공표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 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3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33호	동아닷컴	7월 11일	정치면	“이재명 해코지하면 XX통 보겠다”...野 의원이 공개한 ‘문자 폭격’	인터넷신문
제2022-834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7월 11일	-	“이재명 해코지해봐라 눈깔 뽑고 XX통 보개버려”...민주당 의원 “참기 어려워”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35호	언론사명	(주)매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일보 2022년 07월 20일 전국면 「남양주 ○○○○○○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성장”」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3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36호	인터넷 뉴스신문고	6월 5일	사회면	○○○○○○, 수원 365일 찾아오는 서비스 시작	인터넷신문
제2022-837호	인터넷 베이비뉴스	6월 29일	뉴스면	○○○○○○○○ 인천 부평 개원..관절·척추 진료 제공	인터넷신문
제2022-838호	인터넷 베이비뉴스	6월 23일	뉴스면	○○○○○○, 인천부평점 개원...“다각도 한·양방 통합진료 전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39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2년 07월 15일 사회면 「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인하대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39호와 범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4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7월 15일	뉴스면	○○대서 나체로 피 흘리며 발견된 20대 여성...병원 옮겼지만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41호	경인방송 정말뉴스	7월 15일	사회면	○○대서 옷벗겨진채 발견된 20대 여대생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42호	국제뉴스	7월 15일	사회면	인천 ○○대서 나체로 피 흘리며 쓰러진 여성 사망...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43호	남동뉴스	7월 15일	뉴스면	○○대서 옷 벗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숨져 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44호	내외경제TV	7월 15일	사회면	○○대서 여학생 사망...나체로 피흘린 채 발견, 경찰 "범죄 의심"	인터넷신문
제2022-845호	뉴데일리 (New Daily)	7월 15일	사회면	○○대 20대 女 나체상태로 사망... 경찰 유력 용의자 조사 중	인터넷신문
제2022-846호	뉴스1코리아	7월 15일	지방면	○○대에서 나체로 피흘리며 발견된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종합)	뉴스통신
제2022-847호	뉴스인미디어 (뉴스인)	7월 15일	사회면	○○대 20대 여대생 나체 상태로 사망...경찰, 타살 정황 '20대 용의자' 추적 중	인터넷신문
제2022-848호	뉴스핌통신	7월 15일	전국면	○○대서 여대생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병원서 숨져	뉴스통신
제2022-849호	뉴스시스 (NEWSIS)	7월 15일	수도권면	○○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뉴스통신
제2022-850호	데일리안	7월 15일	사회면	○○대서 나체로 피 흘린 채 숨진 20대 여성...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51호	디스패치뉴스	7월 15일	-	○○대에서 나체로 피흘리며 발견된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52호	라이브엔	7월 15일	-	○○대 여대생 사망 알몸으로 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853호	살구뉴스	7월 15일	뉴스면	○○대 알몸으로 숨진 여학생..한 남학생에게 너무 끔찍한 일 당했다(+신상)	뉴스통신
제2022-854호	서울뉴스통신	7월 15일	사회면	○○대 "나체로 발견된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 착수	뉴스통신
제2022-855호	아시아 뉴스통신	7월 15일	-	○○대에서 새벽 나체로 발견된 20대 여성 끝내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56호	인사이트	7월 15일	-	○○대서 나체로 피흘린 채 쓰러진 20대 여성 발견...병원서 사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57호	인천신문	7월 15일	뉴스면	○○대서 여대생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병원서 숨져	인터넷신문
제2022-858호	인터넷 문화일보	7월 15일	사회면	캠퍼스에서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병원서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59호	인터넷 시사저널	7월 15일	사회면	새벽 캠퍼서서 무슨 일이...○○대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60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15일	사회일반면	나체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대생 사망...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61호	인터넷 주택건설신문	7월 15일	사회면	○○대서 여대생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경찰 수사	인터넷신문
제2022-862호	인터넷 천지일보	7월 15일	사회면	○○대서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된 여대생 끝내 숨져	인터넷신문
제2022-863호	직설	7월 15일	정치·사회면	○○대 캠퍼서서 20대 여성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된 후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864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7월 15일	-	[속보] ○○대 나체로 피 흘리며 발견된 여학생 사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6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6월 22일 핫이슈면 「“○ ○ ○ ○ 성관계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소름 끼치는 문자」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인용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86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66호	뉴스1코리아	6월 22일	지방면	“○○○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뉴스통신
제2022-867호	디스패치뉴스	6월 22일	-	“○○○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인터넷신문
제2022-868호	전북투데이	6월 22일	뉴스면	“○○○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69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6월 27일 엔터테인먼트면 「여성들과 식사 자리서 ‘질질 싸네’ 발언한 빠니보틀에게 “역겹다” 상욕하는 여초 회원들 (영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유튜버가 여성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86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70호	디스패치뉴스	6월 28일	-	“질질 싸네” 저급한 발언으로 논란 중인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인터넷신문
제2022-871호	위키트리 (Wikitree)	6월 29일	엔터면	“질질 싸네...” 여자 앞에서 튀어나온 ‘빠니보틀’ 발언, 갑론을박 벌어졌다	인터넷신문
제2022-872호	인터넷 서울신문	6월 28일	문화·건강면	“질질 싸네” 빠니보틀 발언 왜 논란... “선 넘었다” vs “과한 비판” [네티즌]	인터넷신문
제2022-873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6월 28일	-	“질질 싸네 아주”...유튜버 빠니보틀, 성희롱 발언 논란	인터넷신문
제2022-874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6월 27일	-	“질질 싸네..” 현재 난리난 곽튜브 빠니보틀 여캠 합방 논란 내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75호	언론사명	(주)일요시사	매체구분	주간지
대상보도	일요시사 2022년 07월 03일 사회43면 「4개월 딸 얼굴에 접촉제 부린 엄마」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30대 여성이 지인의 딸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행 대상이 마치 범인의 친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 본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표현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876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6월 15일 엔터면 「40대 여배우 ○○○ 이태원 피습 누구 30대 연하남편 살인미수 혐의」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 제목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른바 '40대 여배우 피습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 여배우의 성명과 초상을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언급하며 피해자로 지목하는가 하면, 자료화면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미성년자인 광고 모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기사 본문 말미에서 해당 배우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긴 하였으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877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7월 26일 이슈면 「“○○ ○○ ○○이라니...” 대구 여교사 남편이 제자와 외도 의심한 까닭」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 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소재지 등 관련 정보, 성별, 나이, 근로계약 유형(기간제), 담당교과 등 각각을 조합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공표하고 병원 내원 당시 진단받은 질병명을 공개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적조작 의혹까지 제기 되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인(私人)인 사건 당사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질병명을 공개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87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78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7월 26일	뉴스면	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모델' 들락... '성적 조작' 의혹도	인터넷신문
제2022-879호	국제뉴스	7월 26일	사회면	[속보]○○○○○○ 화두, 고등학생 제자와 기간제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	인터넷신문
제2022-880호	뉴스인사이드	7월 26일	사회면	대구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밝혀진 결정적인 이유...○○○○ ○○로 응급실 행	인터넷신문
제2022-881호	라이브엔	7월 28일	-	○○○○○○ 어떤 질환인가? 대구 여교사와 남고생 부적절 사건 관련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2-882호	살구뉴스	7월 26일	뉴스면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폭로.. '학교·신상' 확산 되자 인스타 비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883호	서울와이어	7월 26일	정치/ 사회면	이번엔 고교 여교사가 제자 성적조작·성관계 의혹... 대구 발각	인터넷신문
제2022-884호	인터넷 공감신문	7월 26일	이슈앤 속보면	'○○○○ ○○' 무엇? 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85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7월 27일	-	○○○○○○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들통	인터넷신문
제2022-886호	인터넷 금강일보	7월 26일	사회면	○○○○○○ 뉘길래?	인터넷신문
제2022-887호	인터넷 데일리한국	7월 27일	정치·사회· 글로벌면	○○○○○○, 어떤 병이길래?...“대구 여교사 이슈”	인터넷신문
제2022-888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7월 26일	사회면	대구 여교사, ‘○○○○○○’에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인터넷신문
제2022-889호	인터넷 충청매일	7월 27일	-	○○○○○○ 병원 입원한 아내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남편 사연	인터넷신문
제2022-890호	일간 시사매거진	7월 27일	뉴스면	대구 여교사, ○○○○○○은 어떤병? 원인·증상 주목	인터넷신문
제2022-891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7월 29일	-	실시간 대구 여교사 남고생 관계 맺을 때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유출 (+신상, 실물, 카톡)	인터넷신문
제2022-892호	한국농업신문	7월 27일	라이프면	○○○○○○ 의사로부터 아내 병명 듣고 불륜 의심 경찰 신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893호	언론사명	(주)일간경북신문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일간경북신문 2022년 08월 01일 09면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사인(私人)의 초상 공표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지지체의 가정방문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낙상 상황의 노인을 발견해 구조했 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조 당시 촬영 사진 속 노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인이 지지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조 대상자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인 (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89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6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894호	인터넷 일간경북신문	7월 31일	사회면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인터넷신문
제2022-895호	경상매일신문	8월 1일	지역11면	의성 봉양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귀감'	지역일간지
제2022-896호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7월 29일	-	의성 봉양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귀감'	인터넷신문
제2022-897호	내외경제TV	7월 29일	전국면	의성군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밀착 보건복지서비스로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다.	인터넷신문
제2022-898호	인터넷 대구경북일보	7월 30일	지방면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밀착 보건복지서비스로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다.	인터넷신문
제2022-899호	위클리서울	7월 29일	사회면	의성군,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밀착 보건복지서비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00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8월 12일 SNSPICK면 「실시간 SNS 폭파 시킨 강남역 10대 40대 개싸움 사태 (+현장 사진)」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벌어진 두 남성 간 몸싸움 현장을 촬영, 묘사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인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폭력사건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비식별조치로 인해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초상이 공개된 것은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901호	언론사명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서울뉴스통신 2022년 08월 09일 사회면 「8일 밤 대치동 학원가 물에 잠겼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가 물에 잠겼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침수로 물 속에 갇힌 한 아동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동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0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02호	새수원신문	8월 9일	포커스면	수도권 물폭탄...정전, 누수 등 사고와 피해↑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03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07월 27일 연예면 「김새론 음주 논란에 “집안 수준 보니 그럴줄 알았다” 엄마 인성 재조명」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그녀의 모친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모친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과거 방송에서 모친을 언급하며 초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그녀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904호	언론사명	국민일보(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2년 07월 29일 시사면 「시험지 빼돌린 광주 고교생…“서울대 꿈꾸던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0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05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7월 29일	사회면	“시험지 빼낸 광주 고교생은 ○○○○…재시험 볼 수 있단 얘기도”	인터넷신문
제2022-906호	광주드림	8월 1일	04면	○○○ 학생들 '커닝 학교 낙인' 힘들어	지역일간지
제2022-907호	인터넷 광주드림	8월 1일	뉴스면	○○○ 학생들 '커닝 학교 낙인' 힘들어	인터넷신문
제2022-908호	노컷뉴스	7월 29일	사회면	○○○ 학생 “기상천외 시험지 유출, 범인은 ○○○○”	인터넷신문
제2022-909호	뉴스1코리아	7월 29일	지방면	“전교 20등 하던 친구가 1등을 해서 소문” ○○○학생 증언	뉴스통신
제2022-910호	뉴스토마토	8월 1일	19면	'성적 지상주의'가 부른 시험지 해킹	중앙일간지
제2022-911호	인터넷 뉴스토마토	7월 29일	사회면	○○○ 학생 “시험지 해킹 2명, 전교 최상위권 모범생”	인터넷신문
제2022-912호	뉴시스(NEW SIS)	7월 29일	사회면	“교사노트북 해킹 고교생, ○○○○ ○○ 1주만에 범행”	인터넷신문
제2022-913호	더팩트	7월 29일	전국면	“왜 갑자기 캡처가 되지?...시험 앞서 학생들에 “컴퓨터 이상하다”	인터넷신문
제2022-914호	동아닷컴	7월 29일	사회면	광주 시험지 유출 고교생, ○○○○이었다 “○○ 일주일만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15호	디스패치뉴스	7월 29일	-	“성적 좋은 모범생인데..” ○○○ 시험지 유출 사건 범인은 ‘○○ ○○’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916호	매경닷컴	7월 29일	사회면	“기상천외 시험지 유출 고교생, 범인은 ○○○○”	인터넷신문
제2022-917호	무등일보	8월 1일	07면	광주 ○○○ 시험지 유출범 ‘○○○○’	인터넷신문
제2022-918호	인터넷 무등일보	7월 29일	사회면	광주 ○○○ 커닝 사건…알고 보니 ‘○○○○’	인터넷신문
제2022-919호	부산닷컴	7월 29일	종합면	광주 ○○○ 시험지 유출범은 전교 회장… 공범은 ‘억울하다’며 울기도	인터넷신문
제2022-920호	위키트리 (Wikitree)	7월 29일	사회면	“시험지 빼낸 광주 ○○○ 학생… 알고 보니 서울대 지망하는 ○○ ○○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921호	인사이트	7월 29일	-	답안지 빼돌린 광주 ○○○ 학생, 알고 보니 ○○○○ 선거 당선자	인터넷신문
제2022-922호	인터넷 서울경제	7월 29일	사회면	광주 ‘시험답안 유출’ 학생…서울대 꿈꾸던 ○○○○	인터넷신문
제2022-923호	인터넷 세계일보	7월 29일	사회면	초유의 시험지 해킹 유출 사건… 범인은 ‘서울대 컴공’ 꿈꾼 고2 ○○○○	인터넷신문
제2022-924호	인터넷 시사저널	7월 29일	사회면	“해킹 시험지 유출 고교생, 서울대 컴공과 목표하던 ○○○○”	인터넷신문
제2022-925호	인터넷 이데일리	7월 29일	-	한밤 학교 벽 탄 ○○○○…서울대 가려 ‘이 짓’ 까지 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926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9일	사회면	“시험지 유출한 ○○○ 학생, 최근 ○○○○ ○○된 모범생”	인터넷신문
제2022-927호	인터넷 한국경제	7월 29일	사회면	시험지 빼돌린 고등학생, 서울대 진학하려 했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928호	인터넷 한국일보	7월 29일	-	‘서울대 컴공’ 진학 꿈꾼 ○○○○, 해킹해 시험지 유출하다니…	인터넷신문
제2022-929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31일	사회일반면	해킹해 시험지 빼낸 광주 고교생, ○○○○이었다…“서울대 컴공이 목표”	인터넷신문
제2022-930호	조선닷컴	7월 29일	사회면	“해킹으로 시험지 유출한 광주 고교생, 서울대 꿈꾸던 ○○○○”	인터넷신문
제2022-931호	한국면세뉴스	7월 29일	핫뉴스면	○○○ 학생 “시험 답안 유출한 친구들은 모범생…억울하다면서 울더라”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932호	언론사명	(주)강원도민일보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강원도민일보 2022년 08월 08일 종합08면 「‘○○○ ○○’ 수개월간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 ○○)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등 대중에게 알려진 바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3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33호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8월 15일	사회면	‘○○○ ○○’ 성폭행 가해자 1심 불복하자 검찰도 “형 가법다”며 항소	인터넷신문
제2022-934호	노컷뉴스	8월 8일	전국면	‘○○○ ○○’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35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2년 08월 24일 사회면 「“텅빈 집엔 도시가스 ‘연락 달라’ 쪽지만”... ‘수원 세모녀’ 자택 가보니」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 현장인 자택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망자가 앓고 있던 병명(○○○)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위 기사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인 거주 공간인 주택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하고 망자가 앓고 있던 병명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936호	언론사명	(주)세계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세계일보 2022년 07월 25일 사회면 「남편 도박 빚에 극단적 선택…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자살의 동기로 단정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p> <p>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9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37호	경기연합신문	7월 25일	사회면	도박 빚에 극단적 선택…40대 부부와 6살 아들 숨진 채 발견됐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38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패스트뷰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머니그라운드 2022년 08월 24일 라이프면 「“오디션 1등 출신” 스타였는데 빚 2억 때문에 결국 이런 선택 했습니다」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대만의 인기 배우 겸 가수가 빌딩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자살의 동기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p> <p>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939호	언론사명	아이앤비넷(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노트펫 2022년 08월 19일 종합면 「'100일도 안된 강아지를...' 눈알 튀어나오게 하고 갈비뼈 4개 부러뜨린 커피」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서울 도봉구에서 벌어진 강아지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대당한 강아지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940호	언론사명	(주)동아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동아닷컴 2022년 08월 13일 사회면 「'퍽' '퍽'...평택역서 강아지 내던지며 학대한 남성 (영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대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4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41호	국제뉴스	8월 15일	사회면	[영상] 평택역 강아지 학대, 충격적인 지하철만행 모습	인터넷신문
제2022-942호	디스패치뉴스	8월 13일	-	포메 든 가방 바닥에 힘껏 '패대기' 난동...평택역 강아지 학대男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943호	인사이트	8월 12일	-	평택역서 포메라니안 담긴 가방 안내판에 패대기치며 '학대'한 남성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944호	인터넷매일신문	8월 13일	-	3kg 강아지 수차례 바닥에 패대기... '내 개인데 무슨 상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45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2년 07월 27일 국제일반면 「기내식서 뱀 머리 추정 물질이...승무원 식사 도중 발견」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외국의 한 항공기 기내식에서 뱀 머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충분한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4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46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7월 28일	-	“기내식 절반 넘게 먹었는데”...‘뱀 머리’ 이물질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2-947호	경기연합신문	7월 28일	사회면	기내식 절반이나 먹었는데 ‘뱀 머리’ 나온 충격적 사연	인터넷신문
제2022-948호	뉴스1코리아	7월 28일	국제면	“이미 반이나 먹었는데”...기내식에서 나온 ‘뱀 머리’ 기겁	뉴스통신
제2022-949호	데일리안	7월 28일	세계면	“이미 절반 먹었는데 기내식서 뱀 머리가?”...승무원이 조식 먹다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950호	디스패치뉴스	7월 28일	-	“이미 반이나 먹었는데”...기내식에서 나온 ‘뱀 머리’ 기겁	인터넷신문
제2022-951호	인사이트	7월 28일	-	기내식에서 잘린 ‘뱀 머리’가...식사 도중 발견한 승무원 기겁	인터넷신문
제2022-95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28일	국제면	기내식 먹는데 뱀 머리가 그 속에..승무원이 조식먹다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953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7월 28일	국제면	기내식 먹는데 뱀 머리가 그 속에..승무원이 조식먹다 발견	인터넷신문
제2022-954호	인터넷 서울경제	7월 28일	국제면	기내식서 나온 ‘뱀 머리’ 추정물질...밥 먹다 기겁한 ‘사연’	인터넷신문
제2022-955호	인터넷 서울신문	7월 27일	국제면	기내식 절반 먹었는데...‘뱀 머리’ 추정 물질 발견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56호	인터넷 중앙일보	7월 27일	국제면	기내식 반 넘게 먹었는데...뱀 머리 추정 초록 물체에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2-957호	전자신문 인터넷	7월 28일	국제면	기내식서 나온 '뱀 머리'...항공사 조식 먹다 '헉'	인터넷신문
제2022-958호	조선닷컴	7월 27일	국제면	기내식 먹다 기겁, 절반 먹었는데 '뱀 머리' 추정 물질이...	인터넷신문
제2022-959호	지디넷코리아	7월 28일	-	기내식에서 '뱀 머리' 나와... "반이나 먹었는데" 충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60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7월 26일 라이프면 「폭염 더위 식히려 아이스 홍차 원샷 했다가 1000ml 피 토하며 응급실 달려온 남성 (영상)」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국에서 무더위를 식히려고 열린 음료를 급하게 마신 남성이 피를 토하고 쇼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남성이 피를 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961호	언론사명	(주)매일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22년 07월 27일 사회면 「[○○○○○○] 양·한방협진으로 대구 시민에게 광명을」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6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62호	오륙도n신문	7월 26일	뉴스면	여성 암환자 최적화 요양병원으로 '우뚱'	인터넷신문
제2022-963호	경기동부신문	7월 20일	사회면	남양주 ○○○○○○, 안과 최초 지역거점 의료기관 성장	인터넷신문
제2022-964호	매일신문	7월 27일	39면(보건/의료)	절개 부위 최소화 척추치료 기술 선도	지역일간지
제2022-965호	인터넷 매일신문	7월 29일	사회면	[○○○○○] 척추 전문 대구 ○○○○○ '미래형 척추 수술 개발' 박차	인터넷신문
제2022-966호	매일신문	7월 27일	26면(보건/의료)	진료과 8개·전문의 40명 최대규모	지역일간지
제2022-967호	인터넷 매일신문	7월 27일	사회면	[○○○○] 진료과 8개·전문의 40명...대학병원 제외 지역 최대 규모	인터넷신문
제2022-968호	매일신문	7월 27일	26면(보건/의료)	치매·노인 우울증 '맞춤형 치료' 제공	지역일간지
제2022-969호	인터넷 매일신문	7월 27일	사회면	[○○○○○○] 사랑과 신뢰로 환자와 함께 걷는 건강한 병원	인터넷신문
제2022-970호	기업정책 정보신문	8월 2일	기타면	○○○○ ○○○대표원장, ○○○○ 라이브세미나 성료	인터넷신문
제2022-971호	인터넷 파주타임스	6월 3일	기획면	환자 개개인 맞춤 서비스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지원 - ○○○○○치과병원	인터넷신문
제2022-972호	데일리메디	8월 15일	의원/병원면	○○○○○, 부천점 개원...공휴일도 진료	인터넷신문
제2022-973호	e시사 우리신문	8월 12일	단체/ 탐방면	[탐방] '어르신 섬기'는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974호	스카이데일리닷컴(skyledaily)	7월 25일	사회면	"건강한 일상과 밝은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75호	언론사명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 보도	디스패치뉴스 2022년 07월 30일 이슈면 「심리학자 교수가 뽑은 올해 최악의 사건...“넌 딸이 아니라 여자야”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 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976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9월 13일 엔터면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 100억대 횡령 혐의 비참한 결말 + 공범 누구」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친형이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형수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인물이 과거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977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9월 15일 경제면 「권도형 부인 누구 긴급하게 신변보호 요청하면서 화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암호화폐 가치 폭락 사태와 관련, 해당 암호화폐 개발자의 부인 신상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이미 상당기간 암호화폐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해당 개발자와 달리, 부인의 경우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공적 인물이라 볼 여지도 없으며, 남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초상권자로서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978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2년 08월 29일 「'이혼 소송' 조민아, 너무 마른 근황...아들과 합쳐도 49kg」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근황을 인용 보도하면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녀 또한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97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79호	sportschosun.com	9월 2일	연예면	조민아, '이혼 소송 중' 30kg대까지 빠져 '뼈만 앙상'...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인터넷신문
제2022-980호	스포티비뉴스	8월 20일	TV·연예면	'이혼 소송' 조민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뇌하수체 종양 전조증상으로 검사"	인터넷신문
제2022-981호	조선닷컴	9월 26일	연예면	'이혼 소송 중' 조민아, 구 데리고 애뒀 "가족 데이트"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982호	언론사명	(주)헤럴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헤럴드POP 2022년 09월 12일 방송면 「'이혼 절차' 최정윤, 붕어빵 딸과 단둘이 여행..당찬 싱글맘」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근황을 인용 보도하면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임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녀 또한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8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83호	sportschosun.com	8월 22일	연예면	'이혼 절차' 최정윤, 딸 손편지+그림에 감동...알고보니 주인공은 '남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84호	언론사명	(주)국제뉴스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국제뉴스 2022년 09월 02일 사회면 「광주 오포읍 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주택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사적 공간인 주택의 내부 세간살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8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85호	FPN	9월 5일	사건·사고면	경기 광주시 주택 화재… 인명피해 없어	인터넷신문
제2022-986호	뉴스핌통신	9월 1일	전국면	경기 광주 한 주택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과수대 재감식 예정	뉴스통신

의결번호	제2022-987호	언론사명	유석윤(국민문화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국민문화신문 2022년 08월 31일 뉴스면 「장호원에서 부탄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일어난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보도하면서, 구조 대상인 노인의 초상, 성명, 나이, 지병(치매)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구조 당시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조 대상인 당사자의 초상 등 신상 정보를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과도하게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988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9월 20일 핫이슈면 「“학교에 휴대폰 놓고 사라진 광주 여중생을 애타게 찾습니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여중생의 실종사건을 전하며 국내 실종사건 추이 전반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가양역 인근 실종자 가족이 실종 당시 배포한 수배 전단 속 가족의 전화번호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전화번호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에 의해 최초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가족이 언론을 통한 전화번호 공표 철회 의사를 SNS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밝혔고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이를 그대로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88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89호	내외경제TV	9월 27일	사회면	'가양역 실종 여성 000' 벌써 93일 지났다...올해 실종자만 8만명	인터넷신문
제2022-990호	더 드라이브	9월 27일	이슈면	'가양역 000' 실종 93일 지났다...아직 수사 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991호	언론사명	(주)스포츠조선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sportschosun.com 2022년 09월 12일 연예면 「“너무 비틀대 넘어질 뻔”...‘마약 투약’ 000, CCTV까지 퍼졌는데 침묵 [종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명예훼손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 투약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고 마약 투약 혐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시점에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99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92호	스포츠동아	9월 13일	11면	배우 000, 마약 혐의 체포...“토한 채 취침”	중앙일간지
제2022-993호	스포티비뉴스	9월 12일	연예면	마약 투약 40대 남성 배우는 000...약 취해 엉망된 CCTV 영상 공개	인터넷신문
제2022-994호	옛스타일 (atstar1)	9월 12일	ENTERTAINMENT면	배우 000, 마약 투약 체포...병원 치료 후 경찰 조사	인터넷신문
제2022-995호	이투데이	9월 11일	문화·라이프면	‘마약 투약’ 40대 배우, SNS도 비공개 전환...피해 입은 배우들만 역울	인터넷신문
제2022-996호	인터넷 굿모닝경제	9월 13일	사회·문화면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000...CCTV 거리서 ‘취침취침’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997호	인터넷 금강일보	9월 13일	문화면	'40대 마약배우' 정체는... ○○○ 누구?	인터넷신문
제2022-998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2일	사회면	'마약 배우' ○○○로 밝혀져... '휘청' 활보 영상보니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999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9월 12일	뉴스면	'마약 40대 배우' ○○○는 누구?... 일일극 주연급 배우	인터넷신문
제2022-1000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9월 12일	연예면	'마약 활보' ○○○, 아침드라마 주연 꺾치고 잘 나가다 왜...	인터넷신문
제2022-1001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9월 12일	사회면	'40대 마약배우' 정체 밝혀졌다... 박해진·이무생 아닌 '○○○'	인터넷신문
제2022-1002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9월 12일	사회면	'40대 마약배우' 정체 밝혀졌다... 박해진·이무생 아닌 '○○○'	인터넷신문
제2022-1003호	인터넷 한국경제	9월 12일	사회면	40대 마약 배우는 ○○○... CCTV 모습 보니 "토한 채로 휘청"	인터넷신문
제2022-1004호	인터넷 헤럴드경제	9월 12일	사회 일반면	[영상] "휘청휘청 마약배우 ○○○였다" ... 누구길래	인터넷신문
제2022-1005호	일간스포츠	9월 13일	15면	40대 마약 배우 정체는 ○○○ 이무생 등 애꿎은 배우들 피해	중앙일간지
제2022-1006호	조이뉴스24 (joynews24)	9월 12일	연예면	마약투약 40대 배우=○○○였다... CCTV 보니 '휘청휘청'	인터넷신문
제2022-1007호	텐아시아	9월 11일	연예가 화제면	[단독] '마약 투약'한 40대 남자 배우, 박해진·이무생도 아닌 ○○○	인터넷신문
제2022-1008호	한국농업신문	9월 12일	종합면	○○○, 40대 배우 마약 당사자로 밝혀져	인터넷신문
제2022-1009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9월 11일	엔터테인먼트면	마약을 투약한 채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체포된 '40대 남자 배우'의 정체는 박해진·이무생이 아닌, ○○○로 밝혀졌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010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09월 15일 「역무원 살해범, 피해자에 먼저 성범죄 저질러...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0조 (보도 윤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 중이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위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협박의 수단인 촬영물 등의 구체적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공표된 바 없고 이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단정할 경우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 간 근거 없는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01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5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11호	뉴스21통신	9월 15일	정치면	신당역 화장실서 女역무원 피살	뉴스통신
제2022-1012호	뉴스플러스	9월 16일	뉴스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前 역무원 동료의 스토킹 신고 보복 살인	인터넷신문
제2022-1013호	더리포트	9월 15일	사회면	신당역 화장실 역무원 살인 용의자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	인터넷신문
제2022-1014호	디스패치뉴스	9월 15일	-	"피해자 개인정보, 기사화 원치 않는다" 신당역 살해 역무원 유족의 당부	인터넷신문
제2022-1015호	마이데일리	9월 15일	-	신당역 화장실서 女역무원 피살... 스토킹 신고 앞둔 前동료 짓이었다	인터넷신문
제2022-1016호	서울경제	9월 16일	사회24면	신당역 살해범, 징역 9년 구형 받은뒤 보복 범행	중앙일간지
제2022-1017호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5일	사회면	女동료 살해 30대男 '스토킹' 재판 받던중 범행	인터넷신문
제2022-1018호	서울와이어	9월 15일	정치/사회면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잔혹 살해 용의자, 범행 동기는 '보복'?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19호	시정일보	9월 22일	오피니언면	사설 /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전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터넷신문
제2022-1020호	주간 시정신문	9월 22일	오피니언20면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전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주간지
제2022-1021호	인터넷 이데일리	9월 17일	사회면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인터넷신문
제2022-1022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	경제면	女역무원 피살...한총리 “여성 대상 범죄 단호한 대응”	인터넷신문
제2022-1023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	경제면	女역무원 피살...한총리 “여성 대상 범죄 단호한 대응”	인터넷신문
제2022-1024호	한국일보	9월 16일	칼럼27면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시민들은 불안하다	중앙일간지
제2022-1025호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6일	-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시민들은 불안하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26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09월 20일 국제면 「女캐디 엉덩이 만지고 성인용품 건넸다...日남성에 들끓는 태국 [영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범행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SNS에 게재된 한 일본 남성에 의한 태국 여성 캐디 성추행 논란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여과 없이 노출해 범행 방법의 음란성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27호	데일리안	9월 21일	세계면	“엉덩이 만지고 중요부위에 손”...태국 캐디들 성추행한 日남성	인터넷신문
제2022-1028호	디스패치뉴스	9월 21일	ALL면	女캐디 엉덩이 만지고 성인용품 건넸다...日남성에 들끓는 태국 [영상]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29호	인터넷 국민일보	9월 21일	-	캐디 엉덩이 속속...남성 성추행 영상에 분노한 태국	인터넷신문
제2022-1030호	인사이트	9월 21일	하이슈먼	태국 골프장서 女캐디 성추행하는 영상 SNS에 올려 자랑한 남성 근황... "정의는 살아있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31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9월 19일 SNSPICK면 「보배드림 ‘외도 사건’ 아내가 상간남들에게 벗은 사진 보내며 한 발언 수준 (+포천 경찰서)」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폭로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상간자 간의 외도 관련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32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8월 25일 SNSPICK면 「요즘 SNS에 퍼지고 있다는 현남편 vs전남친 ‘맛’ 비교 논리 내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재의 배우자와 이전 연인을 비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성적(性的) 비교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33호	언론사명	(주)경인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경인일보 2022년 08월 28일 사회면 「다시 쓰는 ‘수원 세 모녀’ 사건·(1) 채권자들 피해 사각지대 남은 세 모녀」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 현장인 자택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주 공간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 내부 모습을 여과 없이 공표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034호	언론사명	(주)광주일보사	매체구분	지역일간지
대상보도	광주일보 2022년 08월 25일 06면 「삶이 너무 가혹_ 보육시설 퇴소 10대 여성 또 극단 선택」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자살자 또는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보육시설 출신의 1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위를 보도하면서, 친모의 자살 이력 및 동생의 보육시설 위탁 사실 등을 함께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당사자가 처해 있던 가혹한 상황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3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35호	인터넷 광주일보	8월 24일	사회종합면	“삶이 너무 가혹” 보육시설 퇴소 10대 여성 또 극단 선택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036호	언론사명	(주)한국금융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한국금융 2022년 09월 19일 금융면 「예금보험공사 20대 파견직 직원, 본점서 추락사…행인 부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가 자살 또는 사망에 이른 장소를 자세히 묘사한 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20대 남성의 추락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시 당사자가 추락한 지점의 현장 사진을 게재하여 사망에 이른 장소를 상세히 묘사하였다.</p> <p>비록 해당 보도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자칫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노출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정보나 암시를 줄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0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0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37호	JTBC	9월 19일	『JTBC뉴스룸』 프로그램	입사한지 닷새…광화문 예금보험공사서 20대 직원 추락사	방송
제2022-1038호	국제뉴스	9월 19일	사회면	[속보] 중구 한 건물에서 시민 극단선택, 경찰 조사중	뉴스통신
제2022-1039호	뉴스1코리아	9월 19일	사회면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男 투신…지나가던 30대 남성, 총돌로 병원행	뉴스통신
제2022-1040호	더데이즈	9월 19일	정치사회면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건물 20대 남성 투신 자살 극단적 선택 원인 무엇	인터넷신문
제2022-1041호	동아닷컴	9월 19일	-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男 투신…지나가던 30대 남성, 총돌로 병원행	인터넷신문
제2022-1042호	디스패치뉴스	9월 19일	-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男 투신..지나가던 30대 남성, 총돌로 병원행	인터넷신문
제2022-1043호	매경닷컴	9월 19일	사회면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추락사…지나가던 행인 부상	인터넷신문
제2022-1044호	인사이트	9월 19일	-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건물서 20대 남성 '추락해' 사망	인터넷신문
제2022-1045호	인터넷 세계일보	9월 19일	사회면	'예금보험공사 입사 3일차' 20대 男, 건물서 투신 사망…지나던 행인 부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46호	인터넷 한겨레	9월 19일	사회면	예금보험공사 신입 직원 추락 사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47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8월 29일 엔터면 「배우 유주는 사망 이유 유서에 마지막으로 쓴 글 보니... 충격이다 + 첨부 원문」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배우의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자칫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노출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정보나 암시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47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48호	sportschosun.com	8월 29일	연예면	배우 유주는 사망..유서에는 “울지 마. 몸 상해” 가족 걱정 뿐	인터넷신문
제2022-1049호	글로벌픽콘 (Global Pickcon)	8월 29일	-	배우 유주는 사망, 유서 공개...“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인터넷신문
제2022-1050호	뉴스엔	8월 29일	-	故 유주는, 마지막 부탁은 유서 공개였다...향년 27세	인터넷신문
제2022-1051호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8월 29일	문화면	배우 유주는, 극단적 선택...“연기 너무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인터넷신문
제2022-1052호	살구뉴스	8월 29일	연예면	“울지마, 몸 상해”...배우 유주는 사망, 친오빠가 공개한 유서에 모두 오열했다	인터넷신문
제2022-1053호	서울뉴스통신	8월 29일	문화면	배우 유주는 사망...극단적인 선택으로	뉴스통신
제2022-1054호	스포티비뉴스	8월 29일	-	유주는, 27세로 사망 ‘비보’...“연기 너무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55호	엣스타일 (atstar1)	8월 29일	-	故 유주은, 마지막 부탁은 유서 공개였다…향년 27세	인터넷신문
제2022-1056호	엑스포츠뉴스	8월 29일	연예면	배우 유주은, 유서 남기고 사망…향년 27세	인터넷신문
제2022-1057호	인사이트	9월 2일	-	배우 유주은 장례식장 찾은 동문들, 웃으며 ‘손하트’ 만든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2-1058호	조선비즈	8월 29일	-	배우 유주은 사망, 유서 공개…“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인터넷신문
제2022-1059호	직설	8월 29일	연예· 스포츠면	배우 유주은, 향년 27세로 사망 “연기 내 전부…그 삶 쉽지 않아”	인터넷신문
제2022-1060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8월 29일	SNSPICK면	[속보] 신인배우 유주은 사망 (+유서 발견)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61호	언론사명	(주)강원도민일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22년 09월 05일 「허리통증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 비수술 치료로 해결」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6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62호	강원도민일보	9월 5일	특집20면	허리통증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 비수술 치료로 해결	지역일간지
제2022-1063호	한국외정방송 TV뉴스	9월 10일	-	○○○ 박사 ○○○○○○○○ 개원, 바이러스 전문상담 한방진료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2-1064호	한국정보신문	9월 10일	동영상면	○○○ 박사 ○○○○○○○○ 개원, 바이러스 전문상담 한방진료 실시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65호	더뉴스라이프	9월 10일	동영상면	○○○ 박사 ○○○○○○○○ 개원, 바이러스 전문상담 한방진료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2-1066호	NewsRhyme (뉴스라임)	9월 10일	동영상면	○○○ 박사 ○○○○○○○○ 개원, 바이러스 전문상담 한방진료 실시	인터넷신문
제2022-1067호	부산닷컴	9월 5일	-	관절·척추 전문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068호	부산일보	9월 6일	건강17면	관절·척추 전문 ‘○○○○○○○’ 개원	지역일간지
제2022-1069호	인터넷 부산 제일경제신문	8월 31일	뉴스면	관절, 척추 중점진료 ○○○○○○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070호	국제뉴스	8월 31일	전국면	관절·척추 중점 진료 ‘○○○○○○○’ 개원...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	뉴스통신
제2022-1071호	기업정책 정보신문	9월 2일	기타면	비수면 대장내시경으로 안전성 확보하며 대장질한 검사	인터넷신문
제2022-1072호	메디컬투데이	9월 7일	의료면	○○○○○, 19일 개원	인터넷신문
제2022-1073호	헬스조선	9월 7일	-	○○○○○, 19일 개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74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8월 17일 엔터면 「차은우 김세정 열애설 나고 부인했지만 몰래 데이트 하다가 현장 딱 걸린 상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열애설에 휩싸인 두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075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09월 28일 SNSPICK면 「돈 스파이크 부인 성하윤 혼인신고 취소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인스타)」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배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과거 방송 출연으로 당사자(배우자)의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편에 관한 부정적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7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76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9월 28일	정치사회면	성하윤과 방송도 나왔는데... 돈스파이크 결혼 전후로도 마약	인터넷신문
제2022-1077호	YTN star	9월 28일	가요면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인터넷신문
제2022-1078호	경기연합신문	10월 18일	찾이슈면	"보도방 업주와" 마약범 돈스파이크의 아내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신문
제2022-1079호	국제뉴스	10월 1일	연예면	돈스파이크 마약, 와이프 성하윤 의처증·다중인격 고백 '필로폰 부작용'	뉴스통신
제2022-1080호	매일안전신문	10월 1일	종합뉴스면	돈스파이크, 이미 방송에서 마약 사실 예고했다...아내, 결국 SNS 비공개 전환	인터넷신문
제2022-1081호	살구뉴스	9월 29일	연예면	"결혼 3개월만에 도우미와 마약파티" ...돈스파이크 아내는 결국 '이런' 결정 내렸다	인터넷신문
제2022-1082호	인사이트	9월 28일	-	"말을 못되게 하고 상쳐줘" ...한달 전 돈스파이크 아내가 오은영 박사 만나 한 말	인터넷신문
제2022-1083호	인터넷 금강일보	10월 4일	문화면	돈스파이크 성하윤 직업부터 프로필까지 관심	인터넷신문
제2022-1084호	인터넷 스포츠경향	9월 28일	연예면	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비판 쏠리자 SNS 비공개 전환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85호	인터넷 일간스포츠	9월 28일	엔터면	돈스파이크, 아내와 생활패턴 달라 힘들다더니..결혼 전후로 집단 마약 '충격'	인터넷신문
제2022-1086호	인터넷	9월 28일	연예면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인터넷신문
제2022-1087호	일간지 매거진	9월 28일	엔터테인 먼트면	돈스파이크 아내 성하윤, 돌연 인스타 비공개... 나이·프로필 화제	인터넷신문
제2022-1088호	톱스타뉴스 (TopStarNews)	9월 29일	방송면	"집안이 보수적"...돈스파이크, 결혼 전 와이프 성하윤 의심한 이유?	인터넷신문
제2022-1089호	포인트데일리	9월 28일	핫이슈면	"신혼 2개월만에 위기" 돈스파이크 와이프, 지금 진짜 위기... 근황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90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0월 04일 엔터면 「박수홍 부인 아내 임신 관련 소식 뜨겁게 타고르고 있는 이유」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연예인을 둘러싼 가족 간 횡령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고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의 경우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고 관련 사건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배우자까지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초상 공표를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보도 전반의 주된 내용이 가족 간 횡령 사건임에도 마치 배우자에 관한 보도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 본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 표현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9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91호	경기연합신문	10월 20일	햇이슈면	“그 인간들이 왜” 박수홍♥김다예 결혼식 부모 참석 물어보자 충격적인 답변 전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92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09월 29일 정치사회면 「강종현 얼굴 실제 사진 올라오며 화제 되고 있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과 열애설이 불거진 한 인물에 대해 보도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해당 인물(당사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인용,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공적 인물로 볼 수가 있고 연예인의 열애설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연예인의 열애 상대인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 편취 및 편법대출 의혹 등 부정적 내용이 언급된 기사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092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93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9월 29일	-	박민영 빗썸 재력가 강종현 회장 연애설,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94호	언론사명	영남경제신문(주)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영남경제 2022년 10월 03일 사회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곡강파크골프장 일부 이용자들의 무모한 행태” 지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포항시 소재 공영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고 무단 진입을 시도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의 초상이 드러난 현장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지역사회 민원 관련 보도로서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진을 시설 운영주체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민들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09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95호	인터넷 대경일보	10월 3일	종합뉴스면	포항 곡강파크골프장 일부 이용자 특혜요구'생떼'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96호	언론사명	뉴스통신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통신 2022년 10월 14일 사회면 「산책 나간 후 실종된 여성 119 구조건이 발견」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실종자가 119 구조건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조 대상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통상의 실종보도에 있어 실종자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가족 등의 동의하에 초상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사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 일반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는 것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시정권고 사례집

제2022-109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097호	사회안전,학 교폭력예방신 문	10월 17일	사회안전면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구조건, 70대 여성 40여시간 만에 아산서 구조	인터넷신문
제2022-1098호	한국의정방송 TV뉴스	10월 17일	부동산면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구조건, 70대 여성 40여시간 만에 아산서 구조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099호	언론사명	(주)시민언론민들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시민언론민들레 2022년 11월 13일 사회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p> <p>개인의 성명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사자(망인의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없는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p> <p>살피건대, 비록 위 사안의 보도가 공중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이나 경위 및 전후 사정(사망자 수색이나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의 공표, 보도 후 일부 유족의 비공개요청 등)을 종합해 상호 비교 형량하여 보면 위 기본권의 보호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희생자들의 명단 공표는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09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00호	국민뉴스	11월 15일	뉴스종합면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전격 공개...용기있는 결단!	인터넷신문
제2022-1101호	더데이즈	11월 14일	정치사회면	이태원 참사 명단 155명 공개 중상자 중 숨지는 이들 계속 늘어 14일 현재 158명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02호	언론사명	(주)더팩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팩트 2022년 10월 18일 전국면 「[더팩트 창립 20주년 특집-사라지는 어른들]대한민국 법에는...성인 실종자가 없다」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를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갈수록 증가하는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로서, 최근 서울 기양역 인근에서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실종 당시 작성된 진단지상의 가족 연락처를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서 ‘성인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의 보도에서 유족의 전화번호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03호	언론사명	(주)매일신문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매일신문 2022년 10월 18일 사회면 「대구 북구 다가구주택서 화재...50대 여성 한 명 숨져(종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구 북구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주택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사적 공간인 주택의 내부 세간살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04호	언론사명	(주)국제뉴스	매체구분	뉴스통신
대상보도	국제뉴스 2022년 09월 30일 사회면 「수원 장안동 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개인의 사적 공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주택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사적 공간인 주택의 내부 세간살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05호	언론사명	(주)인사이트컴퍼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사이트 2022년 10월 15일 엔터면 「“술 먹고 성관계, 사귀니 바람 피워”...인기 아이돌 ‘양다리’ 폭로 나왔다 (+CCTV)」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폭로자의 상세한 주장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관계 등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폭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05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06호	1분뉴스	10월 15일	연예면	SNS 저격 누구? “억지로 술먹이고 관계”했다는 전 여친의 폭로... 설마??	인터넷신문
제2022-1107호	글로벌픽콘 (GlobalPickcon)	10월 15일	뉴스면	원어스 레이븐, 韓·日여친 양다리→가스라이팅? 충격적 사생활에 소속사 “사실 확인 중”	인터넷신문
제2022-1108호	위키트리 (Wikitree)	10월 15일	엔터면	“양다리+협박 전화...” 95년생 남자 아이돌, 전 여자친구가 다 터트렸다 (+공식 입장)	인터넷신문
제2022-1109호	조선비즈	10월 15일	연예면	원어스 레이븐, 韓·日여친 양다리→가스라이팅? 충격적 사생활에 소속사 “사실 확인 중”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10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10월 04일 연예면 「“경찰서에서”...박수홍 친아버지에 폭행당해 실신, 당시 상황 공개되자 모두 오열했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과 법적 분쟁 중인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의 수사 경위를 보도하면서, 형수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과거 방송 출연으로 당사자(형수)의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다루면서 본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11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0월 09일 정치사회면 「여의도 불꽃축제 논란 중국인 같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국적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여의도 불꽃축제 참가자들의 시민의식 부족을 비판하면서 “중국인 같다”, “중국인 못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에 시민의식의 결여 내지 그로 인한 폐해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민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1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12호	오투푸스트	10월 9일	이슈 플러스면	중국이란 다를 게 없어, 3년 만에 열린 불꽃축제에 한국인들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13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아주경제 2022년 11월 02일 「국가돈은 ‘눈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1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14호	인터넷 국민일보	11월 2일	-	위장이혼으로 소득 축소하고, 허위 공사사진 제출하고...눈먼 보조금 1144억원 줄줄 냈다	인터넷신문
제2022-1115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1월 2일	경제면	'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	인터넷신문
제2022-1116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11월 2일	경제면	'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	인터넷신문
제2022-1117호	전기신문	10월 31일	기획03면	'눈먼 돈' 전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요구 커진다	중앙일간지
제2022-1118호	인터넷 전기신문	10월 28일	에너지 Biz면	'눈먼 돈' 전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요구 커진다	인터넷신문
제2022-1119호	해럴드경제	10월 27일	정책19면	실업급여는 '눈먼 돈'? ... 난감한 고용부	중앙일간지
제2022-1120호	인터넷 해럴드경제	10월 27일	-	실업급여는 '눈먼 돈?' ... 난감한 고용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21호	언론사명	(주)한국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한국일보 2022년 11월 09일 「“우리보고 받으라고 할까 봐”...멜로니 이민자 거부에 유럽 ‘꿀 먹은 병어리’」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난민 관련 유럽 각국의 입장을 ‘꿀 먹은 병어리’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22호	매경닷컴	11월 9일	-	“그러길래 왜 건드렸나”...갈수록 커지는 한동훈 존재감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23호	언론사명	(주)조선일보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닷컴 2022년 10월 27일 사회면 「여교사들 “남학생이 성추행” vs 학부모 “자폐 앓고 있어 불가능”」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장애에 대하여 ‘앓다’는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를 질병과 같이 고치거나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케 하는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23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24호	인터넷 한국경제	10월 27일	사회면	여교사 “성추행 당했다” vs 학부모 “자폐증 앓아 의도적 행위 불가”	인터넷신문
제2022-1125호	팜뉴스	11월 7일	오피니언면	틱장애 앓는 아이, 두가지 중요한 양육법은?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26호	언론사명	(주)조선비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조선비즈 2022년 10월 02일 IT면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가격,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구입방법을 직접 거론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2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27호	천지일보	10월 27일	기획08면	영화표 한 장 값이면 구한다... SNS 마약 밀거래 현장 포착	중앙일간지
제2022-1128호	인터넷 천지일보	10월 20일	사회면	[단독] 영화표 한 장 값이면 구한다... '2030 파고든 마약' SNS 밀거래 현장 포착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29호	언론사명	(주)뉴스1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뉴스1코리아 2022년 10월 14일 지방면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및 환각상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2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4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30호	e머니투데이 (e money today)	10월 7일	뉴스면	7200만명분 대마가 자라고, 도심 원룸엔 '마약 공장'...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신문
제2022-1131호	뉴스톱	10월 24일	분석면	[분석] 최근 증가한 마약 유통, 텔레그램·구글·트위터가 온상	인터넷신문
제2022-1132호	동아닷컴	10월 14일	사회면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인터넷신문
제2022-1133호	디스패치뉴스	10월 14일	-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34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10월 18일 NEWSPICK면 「역대급 쓰레기 중고물품 판매업자에게 부모님이 걸리자 일어난 상황 (+문자)」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중고물품 구매문의자가 구매를 단념하자 판매업자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보도하면서, 해당 욕설을 여과 없이 공표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35호	언론사명	이학범(데일리벳)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데일리벳 2022년 09월 20일 뉴스면 「키우던 개에 불붙인 학대자 검찰 송치…치료한 수의사 “이런 학대는 처음 봐”」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키우던 진돗개에 불을 붙인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치료 중인 진돗개의 환부를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36호	언론사명	임동원(부동산금융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부동산금융신문 2022년 09월 10일 지역면 「○○○ 박사 ○○○○○○○○ 개원, 바이러스 전문상담 한방진료 실시」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3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2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37호	디지털 의사신문	9월 27일	의료뉴스	○○○○○, 개원 5주년 맞아 '제2의 도약' 선언	인터넷신문
제2022-1138호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9월 27일	-	“내원하는 모든 환자 행복해지는 병원 만들 것”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39호	언론사명	경기연합신문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2년 10월 17일 핫이슈면 「“○○ ○○○” 박원순 여비서 문자 공개되자 발칵 뒤집힌 상황」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간 메신저 대화내용 공개 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40호	언론사명	경기연합신문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2년 11월 09일 핫이슈면 「“클럽 죽순이” BJ 팔순의 전 남친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기막힌 폭로전」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관한 과거 논란들을 보도하면서, 해당 진행자의 전 연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한 게시글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인터넷방송 진행자로서 스스로 일반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관계 등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폭로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141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황악신문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황악신문 2022년 10월 21일 뉴스면 「김천 D초등학교 교내 교사간 불륜 사건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경북 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간 불륜사건을 보도하면서, 지역, 학교명 일부 및 입구 전경, 담당보직, 부임시기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상세히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사건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인(私人)인 사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표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1142호	언론사명	김지수(살구뉴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살구뉴스 2022년 11월 08일 연예면 「“스폰서와 외박때문에...” 유명 여배우가 결혼 1년만에 이혼한 충격적인 이유」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에 관한 과거 논란을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유명 연예인과 결혼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과거 유명인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초상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43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1월 12일 엔터면 「백지영 남편 나이차이 직업 결혼 자녀 화제 마약 사건까지 일으켰던 충격」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 부부에 관한 보도로서 배우자 일방의 과거 마약 투약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함께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연예인 부부를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 또한 공적 인물인 것은 아니며 마약 투약 등 부정적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p> <p>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의결번호	제2022-1144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11월 03일 NEWSPICK면 「이태원 참사 직전 골목 위에서 찍힌 동영상 최초 공개됐다 (+영상)」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에 관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참사 전 이태원 골목에 인파가 밀집한 현장 영상을 링크를 통해 게시하면서 주변 행인 다수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p> <p>비록 해당 사인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이를 다루는 보도 자체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날 같은 장소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사인(私人)인 행인 다수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목적을 넘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144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45호	위키트리 (Wikitree)	10월 31일	사회면	“사람이 죽고 있어요!!!” 목이 터져라 절규하는 이태원 경찰 (영상)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46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1월 15일 엔터면 「OOFC 축구선수 A씨 누구 OOO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현직 축구선수에 관한 전 연인의 폭로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들과 함께 당사자 간 사적인 대화메시지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두문자를 사용하고 초상 사진을 음영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구단은 물론 실명과 일치하는 두문자와 비식별조치가 불충분한 초상사진을 공개한 점,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할 만한 대화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표한 점 등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46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3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47호	경기연합신문	11월 16일	햇이슈면	“그는 99년생”.. 낙태시키고 잠수탄 OOFC 선수, 전여친이 폭로	인터넷신문
제2022-1148호	위키트리 (Wikitree)	11월 16일	엔터면	‘낙태 중용’ OOFC 선수, 실명 나온 카톡 추가 폭로...음주 운전까지?	인터넷신문
제2022-1149호	포스트웨어 (postshare)	11월 15일	-	실시간 OOFC OO년생 수비수 아이 임신 낙태 충격 폭로 터졌다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50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1월 14일 엔터면 「돌싱글즈 이소라 이혼사유 불륜 펜션에서 남자와 있다 딱 걸린 현장 + 영상」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최근 방송된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에 관하여 한 유튜브가 폭로한 과거 행적을 보도하면서, 해당 출연자의 불륜 관련 대화메시지나 현장사진, 이혼서류 등을 공표하였다.</p> <p>비록 당사자가 이혼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스스로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나 이혼에 관한 부부간 합의내용 등 사생활의 내밀 내지 사사적 영역에 속할 만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p> <p>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15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51호	경기연합신문	11월 18일	햇이슈면	“더 이상 그만좀 해”.. 돌싱글즈 이소라 사과했지만 ‘OO’은 삭제	인터넷신문
제2022-1152호	뉴스1코리아	11월 14일	연예면	“이소라 이혼 사유는 ‘상습 불륜’... 딸들도 증오” 구제역 폭로 ‘파문’	뉴스통신
제2022-1153호	디스패치뉴스	11월 14일	이슈면	최동환과 재혼 앞두고 터진 불륜설... 네티즌 해명 요구에 이소라 묵묵부답	인터넷신문
제2022-1154호	매일안전신문	11월 15일	종합뉴스면	‘돌싱글즈3’ 이소라, ‘불륜 의혹’ 논란에 전남편 현역친까지 등장	인터넷신문
제2022-1155호	스타뉴스 (star news)	11월 14일	엔터테인먼트면	이소라, ‘불륜 발각’ 사진 충격.. “진짜 이혼사유=상습 불륜”→해명 無[★NEWSing]	인터넷신문
제2022-1156호	엑스포츠뉴스	11월 15일	연예면	‘돌싱3’ 이소라, “외도로 이혼” 증거자료 공개→본인 해명	인터넷신문
제2022-1157호	위키트리 (Wikitree)	11월 14일	엔터면	“도저히 못 참겠다” 불륜 사진 터진 이소라, 전남편 여친까지 등판	인터넷신문
제2022-1158호	인터넷 내외일보	11월 14일	연예·스포츠면	“이소라 이혼 사유는 ‘상습 불륜’ 구제역 폭로 ‘파문’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59호	포스트쉐어 (postshare)	11월 15일	-	유명방송인 상습 불륜 사건 전 남편 여친까지 합세해 추가 사실 밝혔다	인터넷신문
제2022-1160호	한국미디어 뉴스통신	11월 16일	NC면	과거 불륜 무차별 폭로하는 유튜브에 '이소라' 지지해주는 '돌싱글즈 제작진'	뉴스통신
제2022-1161호	sportschos un.com	11월 17일	연예면	'최동환♥' 이소라, 이 풍파 이겨낼 수 있나...돌파구는 "일일이 반박할 증거" 뿐[SC이슈]	인터넷신문
제2022-1162호	국제뉴스	11월 16일	연예면	구제역, 이소라 불륜 의혹 2차 폭로 "유부녀가 펜션 예약한 이유"	뉴스통신
제2022-1163호	뉴스엔	11월 17일	-	"이소라, 전 남편에 용돈만 10억 받아" 거짓 방송 논란 재점화	인터넷신문
제2022-1164호	마이데일리	11월 17일	-	이소라 불륜의혹, 추가 폭로 나왔다 "외간남자와 펜션 예약" [MD이슈] (종합)	인터넷신문
제2022-1165호	인사이트	11월 17일	-	불륜 안했다는 '돌싱3' 이소라...구제역, 추가 증거 또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제2022-1166호	인터넷 금강일보	11월 18일	문화면	이소라, "2017년 불륜 현장 들켰다"	인터넷신문
제2022-1167호	일간 시사매거진	11월 16일	엔터테인먼트 면	유튜버 구제역, '돌싱글즈3' 이소라 2차 폭로... "상간남과 펜션갔다"	인터넷신문
제2022-1168호	톱스타뉴스 (TopStarNe ws)	11월 14일	-	'돌싱글즈3' 이소라, 이혼 사유 화제→구제역 "상습불륜과 음주가무 탓"	인터넷신문
제2022-1169호	티비리포트	11월 16일	-	이소라, 추가폭로 터졌다..."용돈 10억, 상간남과 펜션"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제2022-1170호	언론사명	(주)인터썬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AP신문 2022년 11월 20일 AP경제면 「U+tv, 'OTT TV'로 재탄생...“요금부담·결정장애 없앤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p>위 기사는 미디어플랫폼 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취사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결정장애'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p> <p>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p>				

제2022-117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8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71호	The Scoop	10월 24일	COLUMNS면	[직장인 용덕씨 창업하기❸] 당신의 결정 장애 없애주는 비법	인터넷신문
제2022-1172호	데일리안	10월 22일	생활문화면	[당안녕㉔] 선택 힘든 '결정 장애'...우리 아이 '자기결정' 능력 향상하려면?	인터넷신문
제2022-1173호	마이데일리	11월 28일	-	20대男 “결정장애 여친, 점점 귀찮은데 어떡하죠?” (물어보살)	인터넷신문
제2022-1174호	오에스이엔 (OSEN)	11월 28일	연예면	서장훈 “헤어질 때 된 것”...결정장애 여친 귀찮은 男에 ‘팩트폭행’ [Oh!썬 리뷰]	인터넷신문
제2022-1175호	인사이트	11월 29일	-	“오빠 나 밥먹을까, 말까”...사소한 것까지 전화해 물어보는 '결정장애' 여친이 귀찮다는 남친	인터넷신문
제2022-1176호	전자신문 인터넷	11월 28일	-	'물어보살' 심각 결정장애 여친 때문에...말 못할 남친의 고민은?	인터넷신문
제2022-1177호	텐아시아	11월 28일	드라마·예능면	“결정장애 여친 점점 귀찮아져”...얼마나 심각하면 서장훈도 '두손두발' ('물어보살')	인터넷신문
제2022-1178호	패션엔	11월 15일	Style면	티아라 효민, '퍼 VS 니트' 겨울 비니! '둘 다 예뻐서 결정 장애'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179호	언론사명	(주)미디어펜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미디어펜(Mediapen) 2022년 12월 02일 「[기자수첩] 보험금은 눈먼 돈? 보험사기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보험사기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보험금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179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80호	sportschosun.com	11월 30일	-	‘보조금은 눈먼 돈’...관객 없는 유명 전시에도 전복도는 모르쇠	인터넷신문
제2022-1181호	경기일보	11월 25일	종합03A면	노인 사회복지법인 업추비 ‘눈먼돈’	지역일간지
제2022-1182호	경남신문	11월 21일	오피니언 14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인식	지역일간지
제2022-1183호	남도방송	11월 7일	뉴스면	나랏돈은 눈먼 돈?...육아 휴직 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인터넷신문
제2022-1184호	뉴스프리존 (News Free Zone)	12월 2일	지역면	고창군체육회, 군 보조금은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2-1185호	뉴제주일보	12월 8일	종합12면	“지역혁신 벤처펀드 120억 ‘눈먼 돈’ 우려”	지역일간지
제2022-1186호	부산파이낸셜뉴스	11월 28일	기획06면	코로나도 못겪은 ‘법카’성장...눈먼 돈은 옛말, 클린카드로 사전단속	지역일간지
제2022-1187호	인터넷부천신문	12월 7일	-	[부천만평] 눈먼 돈	인터넷신문
제2022-1188호	연합뉴스	11월 30일	최신기사면	‘보조금은 눈먼 돈’...관객 없는 유명 전시에도 전복도는 모르쇠	뉴스통신
제2022-1189호	영남일보	12월 2일	사회06면	‘눈먼 돈’ 전략 달성군 보조금 관리 도마위	지역일간지
제2022-1190호	울산신문	12월 12일	사회07면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눈먼 돈 되나	지역일간지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191호	이데일리	11월 14일	01면	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	인터넷신문
제2022-1192호	인터넷 당진신문	11월 12일	뉴스면	‘눈먼 돈’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 적발	인터넷신문
제2022-1193호	인터넷 에너지타임즈	10월 27일	오피니언면	[사설] 방폐물 기금! 눈먼 돈 아니다	인터넷신문
제2022-1194호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11일	사회면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 눈먼 돈 되나	인터넷신문
제2022-1195호	인터넷 이데일리	11월 14일	-	[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	인터넷신문
제2022-1196호	인터넷 주간 동아경제신문	11월 14일	-	‘눈먼 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시급	인터넷신문
제2022-1197호	조선일보	11월 17일	오피니언 37면	눈먼 돈 당연시하는 나라	중앙일간지
제2022-1198호	파이낸셜뉴스	11월 28일	기획06면	코로나도 못겪은 ‘법카’ 성장… 눈먼 돈은 옛말, 클린카드로 사전단속	중앙일간지

의결번호	제2022-1199호	언론사명	경기연합신문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2년 11월 04일 핫이슈면 「“목화밭이나 가라” 손흥민 안면 골절에 노예로 전락한 흑인 선수」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 금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인종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대한민국 출신 유명 축구선수가 경기 중 충돌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그 충돌의 상대방 선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이 작성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인종차별적 게시글을 여과 없이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유명 축구선수의 부상 소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200호	언론사명	(주)굿메이커스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2년 10월 30일 SNSPICK면 「실시간 이태원 압사사고 더 심각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1조 (재난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참상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심폐소생 중인 압사피해자 등 생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가 드러난 현장 사진을 공표하였다. 비록 참사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일반 노상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던 희생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희생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목적을 넘어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200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9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01호	뉴스시스 (NEWSIS)	10월 29일	사회면	[속보]이태원 압사사고 발생...소방청, '대응 2단계' 발령	뉴스통신
제2022-1202호	더데이즈	10월 30일	정치사회면	이태원 압사 사진 현장 증언 이어지는 상황 끔찍하다 정말 + 사진 첨부	인터넷신문
제2022-1203호	데일리안	10월 30일	사회면	'할러윈 파티 악몽' 이태원 압사사고... "사상자 100여명 추정" [영상]	인터넷신문
제2022-1204호	여성경제신문	10월 30일	팩트& 탐사면	'할로윈 악몽' 이태원 압사 사고...소방 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인터넷신문
제2022-1205호	위키트리 (Wikitree)	10월 29일	사회면	"심정지 추정 환자 50명 발생..." 실시간 이태원 사고 영상, 급속 확산 중	인터넷신문
제2022-1206호	인터넷 대경일보	10월 30일	종합뉴스면	(속보)'악몽의 할러윈'...인파 몰리며 이태원 압사참사	인터넷신문
제2022-1207호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29일	사회면	[속보] 이태원서 할러윈 인파 '압사 참사'...59명 사망, 150여명 병원 이송	인터넷신문
제2022-1208호	인터넷 부산 파이낸셜뉴스	10월 30일	-	[속보]尹대통령, 이태원 할로윈 사고에 "신속 구급치료 만전"	인터넷신문
제2022-1209호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30일	사회면	[포토다이슈] '할러윈 참사' 아수라장이 된 이태원 현장	인터넷신문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10호	인터넷 세계일보	10월 30일	사회면	이태원 압사 현장 근처서 춤추며 노래? 공분한 여론 “또다른 비극” 입모아	인터넷신문
제2022-1211호	인터넷 에너지경제	10월 31일	정치사회면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미 예견된 사고·사건 전조현상 감지	인터넷신문
제2022-1212호	인터넷 이데일리	10월 30일	사회면	할로윈 앞, 이태원 압사사고 “21명 심폐소생술, 부상자 집계 아직”	인터넷신문
제2022-1213호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10월 29일	사회면	[속보] 소방당국 ‘인파 몰린’ 이태원에 소방대응 3단계 발령	인터넷신문
제2022-1214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30일	정치면	[속보]尹대통령, 이태원 할로윈 사고에 “신속 구급치료 만전”	인터넷신문
제2022-1215호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10월 30일	정치· 사회면	이렇게 심각했다..동해안 산불 이어 이태원 집단 심정지 사태도 소방대응 3단계 발령	인터넷신문
제2022-1216호	인터넷 한스경제	10월 30일	사회면	이태원서 수십 명 심정지... 윤 대통령 “신속한 안전조치” 지시	인터넷신문
제2022-1217호	인터넷 시민사회신문	10월 30일	시민사회면	이태원 ‘할러윈 압사’ 참사에 온 나라 충격에 빠져	인터넷신문
제2022-1218호	직설	10월 30일	정치· 사회면	[속보] 이태원 ‘할러윈 인파’ 몰려 심정지 50여명...‘소방대응 3단계’	인터넷신문
제2022-1219호	핀포인트뉴스	10월 30일	-	[속보] 할로윈 인파몰린 이태원서 최소 30명 이상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인터넷신문

의결번호	제2022-1220호	언론사명	조흥래(더데이즈)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2년 11월 04일 정치사회면 「인천 전 여친 고문 22살 살인자 신상 10시간 고문 후 살해 친언니가 올린 처참한 글」제 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범죄 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잔인한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일부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 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정서적인 충격 및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제2022-1221호	언론사명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인터넷 데일리한국 2022년 10월 26일 지역면 「경산에 암 환자 전문 ‘○○○○○○’ 개원」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022-1221호와 법익침해 유형이 동일한 관련 결정건 (17건)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22호	웹플러스뉴스	10월 25일	경상북도 23면	경산에 ‘암 환자 재활 중점치료’ ○○○○○○ 개원..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시스템’ 갖춰	인터넷 신문
제2022-1223호	인터넷 대한경제	11월 7일	-	‘암요양과 암재활 전문병원’ ○○○○○○ 개원	인터넷 신문
제2022-1224호	인터넷 수도권일보	10월 31일	지역면	경산시 ○○○○○○, 암 환자의 쾌유와 최고의 완치율 높인다	인터넷 신문
제2022-1225호	경기일보	11월 15일	12면 (수도권)	○○○○○○ ‘○○○○○○’ 새출발	지역 일간지
제2022-1226호	경인일보	11월 15일	수도권10면	새이름 ‘○○○○○○’ 확장이전 영유아~갱년기까지 ‘맞춤 진료’	지역 일간지
제2022-1227호	기호일보	11월 15일	13면 (건강)	○○○○○○ ‘○○’으로 새 간판 인천 시민공원역 인근서 진료 개시	지역 일간지
제2022-1228호	뉴스1코리아	11월 14일	지방면	‘여성 생애전주기 케어’...○○○○○○ ‘○○○○○○’으로 새출발	뉴스통신
제2022-1229호	뉴시스 (NEWSIS)	11월 14일	수도권면	○○○○○○ ‘○○○○○○’으로 새출발	뉴스통신
제2022-1230호	인천일보	11월 15일	인물 17면	인천 유일 전문여성병원 ‘새로운 출발’	지역 일간지

시정권고 사례집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보도위치	기사제목	매체구분
제2022-1231호	인터넷 경기신문	11월 14일	뉴스면	‘○○○○○○’으로 새출발하는 ○○○○○○…생애 전주기 케어 발 돋움	인터넷 신문
제2022-1232호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14일	인천면	○○○○○○ ‘○○○○○○’ 새출발, ‘여성 생애전주기 케어’ 발돋움	인터넷 신문
제2022-1233호	인터넷 경인일보	11월 14일	인천면	새이름 ‘○○○○○○’ 확장이전… 영유아~갱년기까지 ‘맞춤 진료’	인터넷 신문
제2022-1234호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15일	사회면	○○○○○○ ‘○○’으로 새 간판 인천 ○○○○역 인근서 진료 개시	인터넷 신문
제2022-1235호	인터넷 의학신문	11월 14일	의원· 병원면	○○○○○○ ‘○○○○○○’으로 확장 이전 새출발	인터넷 신문
제2022-1236호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14일	사람들면	인천 유일 전문여성병원 ‘○○○○○○’…새로운 출발	인터넷 신문
제2022-1237호	인터넷 중부일보	11월 14일	인천면	○○○○○○, ‘○○○○○○’으로 새출발…여성 생애전주기 케어 발돋움	인터넷 신문
제2022-1238호	헬스비즈	11월 14일	건강면	○○○○○○ ‘○○○○○○’ 새출발…‘여성 생애전주기 케어’	인터넷 신문

의결번호	제2022-1239호	언론사명	경기연합신문 주식회사	매체구분	인터넷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2년 10월 29일 핫이슈면 「“연예계 대표 인성 ○○○” 아무사람이나 다 패는 송강호 인성 수준」 제하의 기사				
법익침해 유형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영화배우의 음주폭행 관련 논란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